

2003 연구보고서 260-5

## 2003 유엔여성발전 주제 및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

연구책임자 : 방 혜 영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이 선 (전문연구원)

# 발 간 사

1946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설립된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는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발전 의제의 수립과 이의 이행을 위한 노력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2002~2006년간 다 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매년 두 가지씩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 결론 및 권고안을 채택하여 유엔 체제와 국제기구, 각 국의 여성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과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7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 이래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및 활동 역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성발전 전략과 밀접한 연관 하에서 수립, 실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선임되어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4-2005년 동안은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국제사회의 여성 이슈 형성에도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원은 2002년에 CSW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CSW 주제는 ‘여성인권 보장 및 폭력근절’과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이행평가, 향후전략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인신매매가 초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글로벌 정보사회의 대두와 함께 ICT 부문의 성관점 주류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시의적절하게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정보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관계자, 연구자, 활동가들에게 국제사회의 여성 이슈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서 이를 통해 국내 여성 이슈의 발굴과 여성정책의 발전, 여성관련 국제활동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성심껏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주신 원·내외 관계자 여러분과 보고서 향상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신 평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원 연구자들의 노고를 아울러 치하합니다.

2003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 연구요약

### 제 I 장 서론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설립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발전 의제의 수립과 이의 이행을 위한 노력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2002~2006년간 다 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매년 두 가지씩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결론 및 권고안을 채택하여 유엔 체제와 국제기구, 각 국의 여성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과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및 활동 역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성발전 전략과 밀접한 연관 하에서 수립, 실시되어 왔다.

2003년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는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과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이다. 여성정책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여성의제에 대한 연구는 정부관계자, 연구자, 활동가들에게 국제사회의 여성 이슈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서 이를 통해 국내 여성 이슈의 발굴과 여성정책의 발전, 여성관련 국제활동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 II 장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

#### 1. 유엔 인권의제의 발전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유엔의 역사는 인권의 보장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권은 인류사회의 근본적 지향으로서 유엔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간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인권의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의 개념과 접근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인권이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유엔 설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노예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 등 특정집단이 직면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중심으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유엔의 설립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되면서 노예제나 인신매매, 노동자권리 이외에 다양한 문제가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의 차별구조와 무력분쟁 등이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 2. 유엔의 여성인권의제와 주요성과

### 가. 인권의 보편성과 여성차별의제

각종 차별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여성인권에 특화된 기구로 설립된 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여성들이 성차별적 관습과 제도 하에서 각종 인권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결정적 여성인권침해로 규정되고 각종 차별 철폐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인권을 보장하려는 활동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광범위한 인권 가운데서도 정치참여와 국적, 결혼 및 가족형성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치권과 시민권이 보장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성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는 1960년대부터 개도국 여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세계 여성의 해를 통해 여성인권의제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유엔 여성 10년 기간 동안 여성인권활동은 이러한 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삶 차원에서의 여성인권을 보장하는데, 특히 개도국 경제개발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주력하였다.

#### 나. 폭력의제의 대두와 여성인권의제의 주류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부정하는 매우 심각하고 복합적인 인권침해로서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사였으며, 특히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폭력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적인 장에서 배제된 채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공적으로 가시화하는데 있는데, 최근의 여성인권활동은 이러한 도전적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며 이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되는 경향까지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적 관습이나 종교 전통 등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성인권활동은 피해자 구제나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여성인권 침해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관행과 의식을 문제 삼고 문화적 상대주의의 원칙 하에 국제사회의 개입이 제한되어 있던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다.

### 3. 주제 채택 배경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세계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음핵제거 등의 다양한 형태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대처방안이 강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폭력행위가 일종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구조의 일부로 통합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폭력의 증가와 구조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세계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초국가적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구축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인권은 쉽게 유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권침해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더해 경제구조의 세계화가 남성중심적으로 진행되면서 여성, 특히 빈곤지역의 빈곤층 여성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경제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위협에 처해있다. 그리고 세계화과정에서 양산되는 여성이주노동자나 무력분쟁으로 인한 여성난민들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낮은 환경에서 각종 착취와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세계화의 이면에서 전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4.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 준비 및 결과

#### 가.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지위향상국은 마약 및 범죄 사무국과 공동으로 2002년 11월 개최한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악화일로에 있는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본질과 근본원인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방향과 프로그램을 논의한 결과, 인신매매 방지(prevention)와 피해자 보호(protection), 가해자 처벌(prosecution)을 포괄한 소위 3P전략이라는 종합적인 반-인신매매전략을 제시하였다.

#### 나. 회의 결과

제 47차 여성지위위원회는 2003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기간 중에는 여성의 인권과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를 주제로 한 패넬토의가 열려 가정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반, 인신매매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전문가 그룹회의와 그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패넬토의, 그 외의 유엔 논의 등을 기초로 의장단에서는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여성인권에 관한 합의결론 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안협상과정에서 국가별, 그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결국 합의결론이 채택되지 못하는 여성지위위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제Ⅲ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

#### 1.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

##### 가. 개요

정보사회란 정보의 생산·저장·분배와 관련된 산업이나 활동이 경제의 중심 부문으로 등장하고, 그 결과 컴퓨터나 통신기술 등을 비롯한 정보기술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의 생활 영역을 지배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하부구조는 정보통신기술(ICT)로서 정보의 생산, 분배, 처리, 전환에 쓰이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요소로 구

성된다. ICT의 발달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결은 세계화의 진전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류적인 견해는 ICT 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를 인간개발의 제 부문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밝은 이면에는 국가간·국가내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와 불건전한 콘텐츠,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등 신뢰와 안정성의 문제와 같은 어두운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정보화가 시장경쟁체제에 기초하여 탈규제와 상업화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기술혁신이 가져다 준 기회와 혜택을 일부 국가와 계층에서 독점하는 정보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91%가 OECD 국가의 국민들로 나타나 세계는 결합과 고립이라는 양분된 체계를 드러낸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비전과 질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보통신기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이윤추구 경쟁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공적부문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 나.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정보격차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동등하지 못한 현상을 말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며, 정보격차의 주제, 대상, 심화정도, 활용도 등 여러 유형의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국제통신연맹(ITU)에서 발간한 통신개발보고서는 경제적 격차가 곧 정보격차임을 인터넷 활용과 경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밝히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심해 2002년 월드 타임즈와 IDS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150개 국가 중 55개국 ICT 부문에서 세

계지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2%만이 인터넷, 이메일 등에 접근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격차나 정보소외는 정보통신기술에의 불평등한 접근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접근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컴퓨터와 기본적인 통신망 등 기술관련 인프라와 고비용의 접속료, 컴퓨터 문맹, 언론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이러한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문제는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경쟁을 넘어 협력의 논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 다. 개발도구로서 ICT의 활용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인간개발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개발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인 접근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도전인 세계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세계화의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비전이다.

국제사회에서 ICT가 강력한 개발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이 직업기회 창출, 교육·보건·상거래 활동 증진 등 개발을 위한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체제 전환, 인권 등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며 서비스 전달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사회개발의 추동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ICT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과 인류 모두에게 신기술에의 접근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 라. 전략적 파트너십

국제사회는 정보통신기술에의 보편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공영역과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기구들 간에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능력과 자원

을 모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윈윈상황을 창출하자는 것으로 공동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정보사회의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화, 세계화의 논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적절한 규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 준 혜택을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차원적 노력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정부와 민간영역의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로서 단지 ICT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에 까지 참여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해당사자간의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교환, ICT 인프라 및 시설의 다양한 활용, 가용 자원의 재설정 등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마. ICT 분야에 성 통합을 위한 논거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젠더의 개념이 도입되고 성 관점의 주류화가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환적 전략으로 채택,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보통신 관련 논의에서는 젠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 여성기구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기술을 사회·정치·문화적 가치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결정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이 성 중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서 생산, 활용됨으로써 성(gender)에 의한 불평등과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CT가 성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은 ICT의 젠더 측면을 규명하고 권력관계의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개입과 정치적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 유용한 전략이다. 이들의 목표는 디지털 혁명의 부정적 측면인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고, ICT를 실질적 도구로 환원시켜 여성의 권한 증진과 성평등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성 편견에 의한 불이익이 지속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국내

적·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이해 주체들의 참여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ICT 부문은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영역도 기  
반 시설부터, 정보기술, 보안문제, 보편적 접근,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적 영역에 이르기 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ICT의 젠더 측면을 강조하는 견  
해는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여성  
들의 활동에서도 주요 관점으로 채택되고 있다.

## 2. 유엔의 여성과 ICT관련 활동

### 가. 북경회의와 정보네트워크의 부상

유엔의 여성 발전전략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  
한 것은 1995년 북경 세계 여성회의부터이며, 그 전까지 여성과 정보관련  
주제는 미디어 부문에 포함되어 다루어졌다. 따라서 다른 주제에 비해 여  
성과 ICT 관련 논의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북경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최초로 여성들의 ‘권한 증진’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정보통신을 언급하고, 신기술 영역에의 접근기회 증진과 정책결  
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여성의 권한 증진을 위해 필수적임을 명시하였다.

### 나. 북경회의 이후의 국제동향

북경회의를 통해 확인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효과를 여성발전에 지속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3월 WomenWatch가 개설되었  
다. 유엔의 공식사이트로서 WomenWatch는 북경행동강령에서 수립된  
모든 우선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1999년에는 모범사례와 교훈에 관한 온  
라인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북경 5개년 검토에 통합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엔은 현재 유엔체제 및 국제기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방식을 확대하여 유엔체제 밖의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

고, 각국의 여성담당국가기구 및 NGO 사이트와의 연결망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최소한 유엔 공식 언어 등 다중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0년 유엔 여성지위향상국이 작성한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검토와 평가」 보고서는 정보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전통적으로 남성주도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역시 IT와 관련한 기술과 지식, 접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제23차 유엔여성특별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문서」는 ICT관련 성과로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활성화, 미디어 조직에의 여성참여 증가, 성 정형적·남녀차별적 묘사를 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들고 있다. 장애요인으로는 통신기술을 통한 여성상의 훼손 증가, 정보격차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디어 분야의 분야의 향후 전략으로서 ① 남녀동등한 ICT 접근기회 제공, ②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③ 글로벌 차원에서 여성의 경험교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 3.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와 성관점 통합 노력

#### 가. WSIS 회의

2003년 12월 10-12일간 스위스 제네바와 2005년 11월 16-18일간 튀니지에서 2단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는 전 세계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글로벌 정보사회에 관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국제적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회의의 준비와 조직은 ITU가 주도하며, 개방적 형태의 정부간 준비위원회(PrepCom)를 개최함으로써 각국 정부, 유엔 관련기구, 정부간 기구, 국제 및 지역 기구, 시민사회,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정상회

의의 의제 선정 및 선언문과 행동계획 초안 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 나. WSIS에의 젠더 통합을 위한 노력

WSIS 회의 결과가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정책과 국제관계 및 협력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성의 관점을 정책협상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목적은 정상회의를 젠더와 ICT 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WSIS 과정에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다자의 이해 주체들이 참여하는 'WSIS 젠더 코커스(WSIS Gender Caucus)'와 비정부 주체들의 모임인 'NGO 젠더전략 실무그룹(NGO Gender Strategies Working Group)'이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통신연맹에서 주도하는 '젠더 이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Gender Issues, WGGI)'과 GKP(Global Knowledge Partnership)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다. WSIS 의제 및 성 관점 반영

3차 준비회의 결과까지 반영하여 작성된 「원칙선언 초안」과 「행동계획 초안」을 중심으로 성 관점 반영에 관해 살펴보면, 「원칙선언 초안」 A.2 항에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증진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A.10항에 “정보사회가 여성의 권한증진, 사회 제 영역 및 정책결정 과정에의 평등하고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공언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성 평등 관점을 주류화시키고 ICT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원칙선언」을 바탕으로 마련된 「행동계획 초안」에서 여성이 특별히 명시된 항은 여성의 능력배양, 여성의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ICT 정책 수립, 건강증진, 남녀평등 고용 및 여성의 ICT 분야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여성관련 콘텐츠 개발, 균형있고 다양한 여성상 묘사, 성 특화된 지표 개발 등이다.

#### 라. 성과와 한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각계 여성들의 연대활동의 결과, 원칙선언 A.10 항에 현재의 문구가 삽입되었으며 여성들이 중시한 개념인 'ICT의 젠더 측면'과 '도구로서의 활용'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행동계획 초안에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은 교육, 보건, 고용, 문화적 다양성과 콘텐츠 개발, 미디어, 성 특화된 지표개발에 한정되어 있으며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우선주제 분야 중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무력분쟁, 환경,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증대 등 여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WSIS의 「원칙선언」과 「행동계획」에 제시된 기본적 이념과 전략이 남녀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여성에 대해 특별한 언급과 고려를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생산·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모든 부문에서 양적, 질적 차원의 정보격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의 격차를 유발하는 ICT의 젠더 측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통해 성에 의한 양적, 질적 측면의 디지털 격차의 극복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제 1단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상된 ICT와 여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여성들의 요구를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4.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 가. 주제채택 배경

제 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그동안 미디어 분야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던 ICT 분야를 별도로 독립시켜 ICT와 성 평등 및 여성의 권한증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첫 번째 유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 SIS)를 2003년과 2005년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젠더와 ICT와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W SIS 회의 과정 및 결과에 성 관점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 나. 전문가 그룹회의

유엔 여성지위향상국이 조직한 'ICT에의 여성참여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활용과 영향력'을 주제로 한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① ICT에 관한 국가 정책과 성 평등, ② 참여의 도구로서 ICT의 활용, ③ 여성의 능력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ICT의 활용, ④여성의 경제력 증진 도구로서 ICT 활용 등 네 가지 의제를 다루었으며, 회의 결과로서 최종보고서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였다.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ICT활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가 수행할 역할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였다.

##### 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유엔사무국은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에의 여성참여와 접근 및 여성지위향상 과 권한 증진 도구로서 ICT의 영향과 활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전문가 회의의 결과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는 미디어와 ICT의 발전이 여성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 유엔 체제의 노

력 등에 관해 언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권한이 증진되도록 하기 위한 건의안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지위위원회 회의 결과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전문가 그룹회의 보고서, 사무총장 보고서, 패널 등 일련의 회의 준비과정 및 토론을 거쳐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을 도출하였다. 합의결론은 ICT의 젠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를 여성의 권한 증진과 성 평등 향상의 도구로 활용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2003년과 2005년에 예정된 WSIS에 여성대표가 다수 참가하여 성 관점을 통합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ICT 관련 국가정책에의 성 관점 통합, 여성의 ICT 접근도 제고, ICT 부문의 성 특화된 지표 개발을 포함한 여성관련 연구지원, ICT 관련 교육, ICT 기반 경제활동에의 여성 참여 증진, 이해 주체간의 파트너십,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지, 자원배정, 국제협력, 국가 여성담당기구의 역할 강화 등을 촉구하였다.

### 제IV장 정책제언

#### 1.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발달시켜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발생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 여성인권침해에 관한 근본적 접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도입,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기존 정책이 즉각적인 차원의 사후 조치에 초점을 둔 채 근본원인 차원에서 문제를 예방하는데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인 성 불평등과 빈곤의 여성화 등 여성을 인권유린 상황으로 내모는 배출요인(push factor)과 성 상품화를 비롯한 유인요인(pull factor)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재생산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광범위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 각종 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인권 관점 강화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폭력은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흔히 주변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심지어 무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희생자인 여성 자신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들이 인권 유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려 문제의 본질이 오도되는 경향이 현저하다.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 준비과정과 회의진행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여성인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대한 장애물로 지적하고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 문제의 원인 분석과 현황 파악, 피해여성의 인지와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성인지적 인권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인권문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피해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 문제, 피해 여성이 오히려 범법자로 취급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문제를 파악하여 여성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 성매매 이외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수립

여성단체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성매매 문제 이외의 인신매매, 예를 들어 신부 매매(bride trade)성 국제결혼이나 노동자 인신매매 등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여성단체와 정부에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활동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는 인신매매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 국제 인신매매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인신매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국제 인신매매 구조상 경유국, 수입국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국제인신매매 현황과 피해 실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신매매는 국경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확대·재생산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제적, 전 지구적 차원의 반-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네트워크의 강화 및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인신매매의 원인을 해결하고 또 피해자들의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주요 피해자 집단 내지 잠재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신매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당사국간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정보통신기술

### □ 정보통신 관련 정책에의 성 관점 통합

우리나라는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를 비롯한 여성정보화 정책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 ICT의 활용도 측면에서 아직까지 남녀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ICT 분야는 남성이 주도하는 기술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분야와 정부의 정책 결정직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참여에서 남녀간의 격차가 심각함을 감안할 때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ICT 관련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책전반에 성 관점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보화 정책은 여성들의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여 질적 차원의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여성의 정보화 통계 및 지표 생산

ICT 관련 정책에 성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한 정보격차 통계가 유용할 수 있으나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ICT가 정치·사회·경제·문화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영역에서 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 국제사회에의 참여 확대

2003년과 2005년 2단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WSIS를 ICT 부문의 성  
관점 통합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WSIS 국가대표단에 여성문제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② 여성부  
는 WSIS를 준비하는 관련 부처의 활동에 참여와 협력을 통해 회의 준비  
과정과 결과문서에 성 관점을 포함시켜야 하며, ③ 정상회의와 여성과의  
관련성에 관해 웹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 홍보하고, WSIS 개최 후 결정  
사항에서 여성관련 부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을 주시하여 2005년 예정된 WSIS에 대비해야 한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3. 제한점 .....	7
II.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 .....	9
1. 유엔 인권의제의 발전 .....	11
가. 초기의 국제인권의제 .....	11
나. 유엔 창설과 인권의제의 전환 .....	12
다. 세계 인권의 해와 70-80년대의 주요 인권의제 .....	16
2. 유엔의 여성인권의제와 주요성과 .....	19
가. 인권의 보편성과 여성차별의제 .....	19
나. 폭력의제의 대두와 여성인권의제의 주류화 .....	32
다. 유엔 여성인권의제의 방향 .....	40
3. 주제 채택 배경 .....	42
가.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 .....	43
나. 세계화와 여성인권 .....	48
다. 북경여성회의와 이후 동향 .....	52
4.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 준비 및 결과 .....	63
가.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	63
나.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	71
다. 회의 결과 .....	73

III.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 .....	77
1.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 .....	79
가. 개요 .....	79
나.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	83
다. 개발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	88
라. 전략적 파트너십 .....	92
마. ICT 분야에 성 통합을 위한 논거 .....	94
2. 유엔의 여성과 ICT관련 활동 .....	100
가. 북경 세계여성회의와 신기술 정보네트워크의 부상 .....	100
나. 북경회의 이후의 국제동향 .....	103
3.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와 성 관점 통합 노력 .....	108
가. WSIS 회의 .....	108
나. WSIS 에의 성 통합을 위한 노력 .....	112
다. WSIS 의제 및 성 관점 반영 .....	122
라. 성과와 한계 .....	130
4.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	131
가. 주제채택 배경 .....	131
나. 전문가 그룹회의 .....	132
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	140
라. 지위위원회 회의 결과 .....	142
IV. 정책제언 .....	147
1.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 .....	149
가. 기존의 성과 .....	150
나. 향후 방향 .....	153
2. 정보통신기술 .....	158
가. 정보통신 관련 정책에의 성 관점 통합 .....	158
나. 여성의 정보화 통계 및 지표 생산 .....	162
다. 국제사회에의 참여 확대 .....	164

참고문헌 .....	167
부    록 .....	175

## 표 목 차

<표 1>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연도별 우선주제 .....	4
<표 2>	유엔창설 이전 국제사회의 인권의제와 주요성과 .....	11
<표 3>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내용 .....	13
<표 4>	유엔 인권의제와 주요성과(1): 유엔창설~세계인권의 해 .....	15
<표 5>	유엔 인권의제와 주요성과(2): 70~80년대 .....	18
<표 6>	국제 사회의 여성인권의제와 주요성과: 유엔창설이전~유엔 여성 10년 · 22	
<표 7>	제42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우선주제별 합의 결론 개요 .....	54
<표 8>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도(2001년) .....	84
<표 9>	ISI 지표 구성항목 .....	85
<표 10>	2002년 국가별 정보사회 순위 .....	86
<표 11>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ICT의 역할 .....	90
<표 12>	ICT 정책이슈의 젠더 측면 .....	96
<표 13>	WSIS 준비회의 및 비공식회의 .....	110
<표 14>	WSIS 지역회의 .....	111
<표 15>	WSIS에의 통합 요구항목 .....	118
<표 16>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을 위한 유엔과 국내 정책의 주요 성과 .....	151

## 그 림 목 차

<그림 1>	세계화와 인신매매 구조 .....	51
<그림 2>	성인지적 인권접근에 따른 반-인신매매 전략 .....	70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3. 제한점	7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1946년 6월 21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치·경제·시민·사회·교육 등 제 분야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의문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1975년 제 1차 세계여성회의(멕시코)를 조직하여 성차별 문제와 발전에 있어 여성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래, 1980년 코펜하겐, 1985년 나이로비,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까지 4차에 걸쳐 세계여성회의를 조직하였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발전의제의 수립과 이의 이행을 위한 노력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5년 북경 세계회의 이후, 위원회는 유엔 총회로부터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이관 받았으며, 북경회의 개최 5년 후인 2000년에는 제23차 유엔 특별총회를 주관하여 북경행동강령의 목표를 강화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결과문서(Outcome Document)』를 작성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이 두 문서의 이행을 위한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결의안(2001/4)에 따라 2002~2006년간 다 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매년 두 가지씩 주제를 선정하여 다루고 있다.

<표 1>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연도별 우선주제

연도	우선 주제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 맥락에서 여성의 권한증진을 통한 빈곤근절 (Eradicating poverty, including through the empowerment of women throughout their life cycle in a globalizing world)</li> <li>▶ 성 관점에서 본 환경관리와 자연재해의 예방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itigation of natural disasters: a gender perspective)</li> </ul>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에의 여성참여와 접근, 권한증진 도구로서의 활용 (Participation and access of women to the media,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and use as an instrument for the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li> <li>▶ 여성의 인권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근절 (Women's human rights and elimina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s defined in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entitled "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li> </ul>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평등에 있어 남성의 역할 (The role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li> <li>▶ 분쟁방지와 관리 및 평화수립에 있어 여성의 역할 (Women's equal participation in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and in post-conflict peace-building)</li> </ul>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행동강령 및 결과문서의 이행점검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li> <li>▶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한 증진을 위한 도전 및 향후 전략 (Current challenges and forward 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li> </ul>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에의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여건조성 (Enhanced participation of women and development: an enabling environment of women, taking into account, inter alia, the fields of education, health and work)</li> <li>▶ 정책결정에의 남녀 동등한 참여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t all levels)</li> </ul>

(UN ECOSOC resolution 2001/4)

2003년에 개최된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과 ‘여성인권 보장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등 두 주제를 다루었다. 매년 3월 중 회기에만 소집되는 지위위원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유엔 사무국 내 여성지위향상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으로서 위원회 개최 전에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원회를 지원한다. 여성과 IT를 주제로 한 회의는 2002년 11월 11-14일간 서울에서,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를 주제로는 11월 18-22일간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이행상황 보고와 패널토의, 전문가그룹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데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은 유엔 체제와 국제기구, 각 국의 여성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과정에 반영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여성의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및 활동은 유엔의 행동계획 및 전략과 밀접한 연관 하에서 수립·실시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1993년 까지 지위 위원회에 옵저버로 참가해 오다가 1994년부터 4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선임되었으며<sup>1)</sup>, 이후 3차례 연임되어 2006년 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46차(2002년)와 제47차(2003년)에는 부의장국으로 활동하였으며 48-49차(2004-2005년) 동안은 의장국으로 선임<sup>2)</sup>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본 연구는 위원회의 2003년 우선 주제의 등장배경, 국제사회의 관점,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두 주제에 관한 여성지위위원회의 전략과 활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정책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여성의제에 대한 연구는 정부관계자, 연구자, 활동가들에게 국제사회의 여성 이슈에 관한 체계적이고

1)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선출하는 45명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지역별 회원 배분은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11개국, 동유럽 4개국,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9개국, 서구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2003년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강경화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심도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서 이를 통해 국내 여성 이슈의 발굴과 여성정책의 발전, 여성관련 국제활동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 (1) 2003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본 연구는 제 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우선주제인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과 ‘여성의 인권 보장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의제의 등장배경과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개념, 논의의 전개·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 (2) 각 주제별 유엔활동 및 성 관점 통합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유엔 체제 및 국제기구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들 주제에 대한 성 관점, 접근법, 국제사회의 이행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 주제의 경우 글로벌 정보사회의 비전과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SIS)’를 2003년 12월과 2005년 11월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회의의 다루어질 주요 의제와 성 관점 통합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 성과, 한계를 다루었다. 또한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인신매매가 초국가적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인신매매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전문가 회의결과, 패널토의 및 합의문서

각 주제별로 개최된 전문가그룹회의의 결과보고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무총장 보고서,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의 패널토의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채택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여성의 인권 보장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근절’에 관해서는 『합의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다루었다.

(4) 정책제언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준비과정과 회의 결과 채택된 합의문서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주요 논점을 한국의 정책현황과 관련시켜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주제와 관련한 유엔문서와 국제기구의 발간 문서,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헌장 및 건의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종합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주제와 관련한 최근의 국제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유엔여성지위향상국에서 개최한 ICT관련 전문가 그룹회의와 국내에서 개최된 인신매매 관련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고, 주요 회의 참가자 면담 등을 통해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책현황과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부처, 국내 관련기관, 여성단체 등의 실무자와 면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유관 정부 부처 및 NGO, 연구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3. 제한점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다룬 두 가지 주제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여

성의 권한증진'과 '여성인권 보장 및 폭력근절'에 관한 논의는 유엔의 설립, 특히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여성의 인권보장, 성차별의 철폐, 여성의 발전, 성 주류화의 달성이라는 기본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주제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서 별도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행전략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도 두 주제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성 이슈 형성과 이론 및 전략의 전개, 수립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보 확산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 주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태를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제언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행동전략과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및 인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태와 정책 현황은 그 자체가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를 계기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성전략을 국가정책과 여성활동, 국제협력사업 등에 연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여성전략의 국가적 이행체계에 대한 연구가 차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

#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

---

1. 유엔 인권의제의 발전	11
2. 유엔의 여성인권의제와 주요성과	19
3. 주제 채택 배경	42
4.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 준비 및 결과	63

---



## 1. 유엔 인권의제의 발전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유엔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권은 인류사회의 근본적 지향으로서 유엔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그간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인권의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의 개념과 접근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 가. 초기의 국제인권의제

근대 유럽의 천부인권사상을 배경으로 기본적 자유와 인권 개념이 성립되면서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 받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졌으며, 국제적 차원의 노예제 및 노예매매 폐지운동이나 1차대전 중 부상전투원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요구하는 국제적 움직임 등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표 2> 유엔창설 이전 국제사회의 인권의제와 주요성과

의제	주요성과
노예제, 인신매매	-1904년 5월 17일 백인노예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1910년 5월 4일 백인노예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1926 제네바 노예제 금지협약* -1921년 9월 30일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1933년 10월 11일 성인 여성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노동자권리	-농업노동자의 결사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21체결)**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30) -야간노동(여성) 협약(1919) -납종독에 대한 여성과 어린이 보호에 관한 권고(1919) -여성 농업노동자의 야간노동에 관한 권고(1921) -광산 지하노동에 대한 여성고용에 관한 협약(1935)

\*유엔 설립 이후 총회 의정서에 의해 협약이 개정, 수용되었음.

\*\*이후 괄호 안에 기록된 연도는 협약 내지 권고의 체결연도임.

특히,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과 1920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 등을 통해 노동자 인권문제, 소수자와 위임통치령 주민의 보호 등은 그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노동자 보호와 노예제 및 인신매매 금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연맹에서는 1937년 기존의 협약을 발전시켜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대한 착취 금지협약(안)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당시의 인권개념은 노예나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 소수자나 보상 전투원 등 특정집단에 한정된 문제로 규정되었고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 집중되었을 뿐이며, 인권을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차원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근대 인권사상의 성립 이후 인권보장은 주권국가의 관할로 가정되어 온 만큼, 국제적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았으며 국제연맹이나 국제노동기구 등은 인권보장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며 제2차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소수민족 학살과 정치적 반대자 학대에 대해 국제사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 나. 유엔 창설과 인권의제의 전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되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대서양 헌장(1941)』과 『연합국 공동선언(1942)』등에서는 인권을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명시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2차대전 직후 유엔 형성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유엔 헌장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제1조 3항)을 국제사회의 기본정신으로 천명하고 국제적 평화 구축과 함께 인간의 동등권과 자결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도모를 유엔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로 하여금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인권보장의 임무를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세계 각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도모를 목표로 하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두고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하고,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선언을 기초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면서 유엔 인권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 종교, 문화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58개 회원국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에 관한 공통의 가치의 추구를 선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적 공동선언문으로서 인권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규정하고 인권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천부인권 사상의 성립 이후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인권에 대한 명시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은데 대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을 명시하였다.

<표 3>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내용

<p>◆시민적·정치적 권리</p>	<p>생명권, 신체적 자유와 안전권,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모욕적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권, 임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상의 권리, 국적권, 자유로운 가족형성권, 재산소유권, 사상과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투표권 및 공직 취임권 등</p>
<p>◆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p>	<p>사회보장권, 노동권,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권리, 단체행동권, 휴식·여가권, 생활환경권, 생계권, 교육권, 문화생활권 등</p>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계기로 인권 보장을 위한 유엔의 활동은 한층 활기를 띠었다. 국제연맹 산하에서부터 준비되어온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관한 착취 금지협약』이 1949년 체결된 것을 비롯해 노예문제나 인신매매, 노동자권리 등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차원의 공식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2차 세계대전 동안 자행된 대량학살과 난민과 무국적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량학살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4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을 체결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권선언을 계기로 인권이 소수집단이나 취약집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됨으로써 노예문제, 인신매매, 노동자권리에 제한되어 있던 인권의제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50년대 말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탄생하면서 정치적 자결권과 독립 국가 국민으로서 지니는 시민권과 정치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1966년 『세계인권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법화한 『국제인권규약』이 체결되면서(76년 발효) 인권에 대한 관심의 범위는 한층 넓어졌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과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이 체결되면서 각국은 정치적·시민적 권리 이외에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권, 교육권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이행상황을 유엔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표 4> 유엔 인권의제와 주요성과(1): 유엔창설~세계인권의 해

의제		주요 성과
인권 일반		- 세계인권선언(1946)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자결권		- 식민국가와 국민의 독립 인정에 관한 선언(1960)
노예제, 강제노동		- 1926년 제네바 노예제금지협약에 관한 개정의정서(1953) - 노예제,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1956) -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57)
인신매매, 매춘		-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관한 착취 금지협약(1949) - 노예제, 노예무역 및 유사제도와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1956)
차별	차별	-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58) - 교육차별 금지에 관한 유네스코조약(1960) - 사회보장상의 취급의 평등에 관한 조약(1962)
	인종차별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1963) -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6)
	여성인권, 성차별	- 남녀의 동일노동·동일보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1951) - 모성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52) -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1952)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7) -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노동자권리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48) - 단체협상 및 단결권의 원칙적용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1949) - 고용정책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64)
결혼권, 문화향수권		- 결혼허가, 결혼최저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1962) - 국제 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1966)
난민, 무국적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6)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4)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1961)
대량학살, 전쟁범죄, 잔학행위		- 대량학살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48)
무력분쟁시 인권보호		- 아전군에 있어서 병상자의 상황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1949) - 해군내 부상자와 포류자의 상황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1949) -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1949) -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1949)

## 다. 세계 인권의 해와 70~80년대의 주요 인권의제

### (1) 세계 인권의 해(1968)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인권의 가치와 개념을 공유하고 인권 향유의 기준을 마련한 이래 유엔은 인권 증진을 위한 조치 마련에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이 되는 1968년을 맞아 유엔은 “세계인권의 해”를 지정하고 그간 인권분야의 성과를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권의제를 채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테헤란에서 국제인권회의가 개최하였는데, 회의에서는 20년간 다양한 인권의제가 토의되고 그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는 등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폭력과 부정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식민지배도 종식되지 않았고, 무력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는 빈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와 불충분한 교육 등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각종 조치를 강화하고 이행 촉진을 위한 기제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 (2) 무력분쟁과 인권문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도 세계 각지에서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특히 무력분쟁 하에서 자행되는 극단적인 폭력과 인권침해사태는 끊이지 않았다.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분쟁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악화일로에 있었으며 베트남전쟁(1960-1975)이 발발하고 남미 각국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문과 탄압이 자행되고 캄보디아내전에서는 대량학살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국제분쟁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유엔에서는 무력분쟁시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의 국제협약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선언이나 협약을 채택하는 등의 대처방

안을 찾는 한편, 총회와 관련위원회를 통해 분쟁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3) 차별문제

무력 분쟁 이외에도 인권 침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각종 차별은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유엔 창설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세계대전 중의 대량학살 역시 인종 차별, 민족차별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유엔헌장』에서도 ‘모든 인간이 민족, 성, 종교적 차별 없이 보편적 인권 향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선언에서 제시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고 명시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47년에는 인권 위원회 산하에 개인자격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p>3)</sup>(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를 설치하여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양한 불평등 구조가 존재되는 현실에서 보편적 인권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으며, 보편적 인권과 평등이 재차 강조된 것 역시 현실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종 차별 가운데에서도 특히 유엔의 주된 관심은 인종차별문제에 집중되어 1973년에는 『아파트라이트 범죄 억압 및 징벌에 관한 국제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제1차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10년(First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1973-1982)이 선포되기도 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제1차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외에 빈부격차 증가에 따른 빈곤층의 소외문제와 남녀차별문제 역시 인권 향유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어 그에 대한 세계회의가 조직되고 각종 협약이 체결되는 등 유엔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3) 1999년 인권 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로 개칭하였다.

<표 5> 유엔 인권의제와 주요성과(2): 70~80년대

의제		주요성과
차별	인종차별	- 아파르트하이트 범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1973) - 인종 및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1978, UNESCO) - 평화 및 국제적 이해의 증진, 인권증진과 인종주의 및 아파르트하이트, 전쟁의 철폐를 위한 대중매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1981, UNESCO) - 스포츠에 있어서 아파르트하이트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85)
	여성 인권, 성차별	- 멕시코 선언 및 세계여성행동계획(1975) -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 제2차 세계여성회의(코펜하겐) 결의문 및 행동계획(1980) - 제3차 세계여성회의(나이로비)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1985)
	기타	- 종교 내지 신앙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1981)
아동 인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아동복지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1986)
노동자권리		- 사업체 내 노동자대표에 대한 보호와 시설제공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71) - 농업노동자의 조직과 경제,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의 그 역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75) -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조약(1978) - 단체 교섭권 증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81) - 취업 증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1988) - 독립국가의 토착·부족민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8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발전권, 사회복지권, 문화향수권)		- 정신지체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1971) - 기아 및 영양결핍 철폐에 관한 세계 선언(1973) -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한 과학적, 기술적 진보의 사용에 관한 선언(1975)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1975) - 인간의 평화권에 관한 선언(1984) - 발전권에 관한 선언(1986)
난민, 무국적자		- 거주국가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1985)
무력분쟁시 인권 보호		- 비상사태 및 무력분쟁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1974) - 국제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1977) -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1977)
고문 금지 등		- 고문 및 기타 잔악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1975) - 고문 및 기타 잔악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금지 협약(1984) - 범죄 및 권한 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 원칙 선언(1985)

## 2. 유엔의 여성인권의제와 주요성과

### 가. 인권의 보편성과 여성차별의제

각종 차별 가운데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성차별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보편적 인권이란 남성의 전유물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는 보편적 인권 보장의 핵심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각종 권리를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서 여성차별문제를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특히, 여성지위위원회가 인권위원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여성인권을 담당한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각종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 (1) 유엔 창설 이전의 여성인권의제

인권 향유에 있어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 성립 이전부터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찌기 19세기부터 여성의 교육권 보장운동이 전개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여성운동(Symonides and Volodin 1999)이 조직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인권이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여성인권 역시 인권의제에 포함되었다. 노예무역과 인신매매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주요 피해자인 여성들의 인권침해 역시 문제의 일부로 지적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의 일부로 여성을 인신매매와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1921년 최초의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30 September 1921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체결을 필두로 1933년에는 『성인 여성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11 October 1933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of Full Age)』이 체결되었으며, 1937년 국제연맹에서는『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 착취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안』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ILO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야간노동, 지하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성인권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유엔창설 이전부터 이미 여성은 형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여성이 인신매매나 노동재해의 피해자가 되기 쉬우며 그 만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 침해는 노예나 노동자 등 특정한 계층에 한정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여성들이 놓여있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여성을 유약한 피해자 내지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성을 독자적 인권을 지닌 주체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현실을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2) 여성차별의제의 형성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인권을 다룰 유엔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세계 여성들의 보편적인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그 현황을 조사하며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 (가) 여성지위위원회 설치

1945년 6월 26일 서명한 유엔헌장에서는 “유엔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 “전 회원국으로 하여금 첫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방지하고 둘째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며, 셋째 인종·성·언어·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인권 증진의 임무는 경제사회이사회에 귀속되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46년 2월에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여성의 권리를 비롯한 인권문제 전반을 다루도록 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인권문제와 함께 여성의 권리를 다루는 만큼, 여성인권은 주변적으로만 고려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인권위원회 내에 여성지위에 관한 인권 결의안과 건의문, 보고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임무를 띠는 여성지위 관련 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소위원회에서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조사하고 여성관련 기록을 통해 자료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견해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고 여성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런데, 소위원회 내에서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와 동등하면서도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지닌 여성인권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1946년 6월 경제사회 이사회는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 여성인권을 다룰 별도의 기구로서 여성지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정치, 경제, 시민, 사회, 교육 등의 제반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 보고서와 권고문을 작성하고,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긴박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적,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된 국제적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발전을 검토,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변화순·김은경 1997: 12-13).

<표 6> 국제 사회의 여성인권의제와 주요성과: 유엔창설이전~유엔 여성 10년

주요의제	유엔창설이전~	~유엔창설~	~유엔 여성10년
여성 인신매매, 매춘	-1921년 8월 30일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1933년 10월 11일 성인여성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대한 착취금지협약(1949) -노예제 및 노예무역, 유사제도와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1956)	
여성노동자보호	-야간노동 협약(1919) -납중독에 대한 여성과 어린이 보호에 관한 권고(1919) -여성 농업노동자의 야간 노동에 관한 권고(1921) -광산 지하노동에 대한 여성고용에 관한 협약(1935)		
여성차별철폐, 평등권보장		-남녀의 동일노동·동일보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51) -모성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52)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1952)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7) -여성 차별 철폐 선언(1967)	-제1차 세계여성회의 세계행동계획(1975) -여성 차별 철폐 협약(1979) -제2차 세계여성회의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행동계획(1980) -제3차 세계여성회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1985)
기타		-비상사태 및 무력분쟁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1974)	

## (나)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인권 보장

여성지위위원회의 주된 관심은 유엔의 인권논의가 남성중심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여성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데 있었으며, 특히 『세계인권선언』의 결정과정에서 남성중심적 인권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지닌 주체임을 명시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여성지위위원회와 여성운동가들은 인권선언이 성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남성 중심적인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할 것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언문 채택과정에서도 참가국 대표들을 설득해 이러한 내용이 선언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강조하고 이어 제2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선언에서 제시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운동가와 여성지위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초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모든 인간”과 같은 구절이 제반 권리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역설하지 못하며, 여성이라는 명백한 언급이 빠진 것은 남성지배문화에서 성장한 지도자들이 권리란 오직 남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곡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권선언이 여성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1995: 59).

## (다) 성차별과 여성인권 실태파악

『세계인권선언』공표 이후 유엔의 여성인권 활동은 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언이 제시한 포괄적인 기본 인권을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데 그 초점이 두어졌다. 그 준비작업은 『세계인권선언』이 공표되기 전해인 1947년 제1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 여성의 인권 보

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 여성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제 측면에서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74개국 가운데 25개국에서 여성들이 선거권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습과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여성에게는 교육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있었다. 이외에 1949년과 1959년 전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국적권을 조사한 결과 많은 국가에서 남녀의 평등한 국적권을 인정하지 않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국적에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의 자유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근로권과 동등한 보수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여성의 신체 보전권을 유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는 관습까지 자행되고 있었다(변화순·김은경 1997: 14-15).

### (3)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심적 접근

이처럼 여성들이 각종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대해 여성지위위원회와 관련기구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는데, 관심의 초점은 여성의 생명권과 신체적 안전권, 노예상태나 비인도적 취급으로부터의 자유, 국적권, 가족형성권, 투표권, 공직 취임권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데 있었다.

우선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가 성행하는데 대해 국제연맹 하에서 채택된 일련의 노예제 및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을 총회에서 수정, 채택하는 한편, 1949년에는 인신매매 및 매춘 관련자들의 처벌을 통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여아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를 목표로 한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관한 금지협약』을 채택했으며, 이어 1956년에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노예제, 노예 무역 및 유사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을 채택했다.

1952년에는 여성지위위원회는 신탁 및 비자치지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여성이 자기 신체를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관습,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관습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경제사회이사회에 건의하였으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각국으로 하여금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E/RES/445C (XIV)). 물론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음핵제거, 조혼, 지참금, 과부순장 및 기타 비인간적 관행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직접 거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국제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1955년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이 원하면 남편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신의 국적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안을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결혼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비준서 작성을 촉구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그 결과 1962년 『결혼에 대한 동의와 결혼 최소연령 및 결혼신고에 관한 권고문과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1952년 UNESCO총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여 비준국으로 하여금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직 취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지위위원회의 구성과 『세계인권선언』채택을 계기로 여성노예나 여성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보호하는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여성인권의제는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여성인권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보편적 현실을 문제 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성과를 쌓아 가는 동안, 유엔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여성의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결과 법제도적인 차원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차별에 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1963년 총회는 여성지위위원회로 하여금 여성인권보장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성차별철폐선언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A/RES/1921(XVIII)) 드디어 1967년 총회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인권 보장과 인신매매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되었다. 여성인권에 관한 기존의 선언 및 결의문을 종합한 『여성차별철폐선언』의 탄생은 계기로 유약한 피해자이자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여성은 남성에 대한 동등한 인권을 지니는 주체라는 점이 보다 명백해졌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선언』의 채택으로 유엔의 인권 논의에서 성차별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1968년 세계 인권의 해를 맞아 개최된 테헤란 인권회의에서는 『여성차별철폐선언』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권리를 제한하고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여성발전을 위한 유엔의 종합적인 장기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A/CONF.32/41). 회의 결과 채택된 『테헤란 선언』에서는 “여성의 낮은 지위는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은 물론 유엔헌장의 목적에도 위배되며” 따라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여성차별철폐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달성할 것을 강조하였다(테헤란선언 15).

#### (4) 경제적 권리 중심적 접근

##### (가) 제3세계의 등장과 인권의제의 전환

유엔 성립을 계기로 여성인권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조명되기 시작했으며 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여성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수준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세계여성들이 각종 인권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와 관습이야말로 여성의 인권 향유를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여성인권활동의 중심적 과제로 떠올랐으

며 광범위한 인권 가운데서도 정치참여와 국적, 결혼 및 가족형성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지닌 존재라는 기본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치권과 시민권이 보장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성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빈곤에 시달리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있으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과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성인권의 보장은 요원했다.

실질적인 삶 차원의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구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규정되어 왔는데, 흔히 각각의 범주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면 강제가 가능하고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데 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은 ‘강령적’ 권리로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능한 최대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양자를 별도의 인권 개념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sup>4)</sup> (반보벤 1986: 80-87).

물론 개념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리보장의 측면에서는 양자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은 허상에 불과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실현될 수 없다. 여성인권의제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8년 경제사회이사회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적, 인종, 언어 및 종교, 성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공히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으며(E/RES/121(VI)) 이를 위해 ILO와 여성지위위원회가 협력하도록 하였다(E/RES/196(VIII)). 1951년에는 이러한 결의를 발전시켜 『남녀의 동일노동·동일보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4)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이라는 별도의 하위 규약으로 구성되었다.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UNESCO는 1950년 여성지위위원회에 여성이 교육기회에서부터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E/CN.6/146) 상호 협력하여 성, 인종 혹은 사상에 관계없이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인권의제의 핵심이었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과 비교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주변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고 가시적 성과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들어 전면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적 권리가 일반적인 인권의제와 여성인권의제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

인권의제의 전환은 당시의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잇따라 독립하여 유엔에 진출하면서 국제사회의 의제는 이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신생 독립국들의 일차적 과제는 경제발전이 있었으며, 유엔에서도 유엔발전 10년<sup>5)</sup>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발전이 인류사회의 기본 지향임을 천명하고 대대적인 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했다.

유엔의 관심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집중되는 가운데 인권 논의 역시 경제개발과 인권의 관계를 규명하고 경제발전과 인권 보장을 동시에 이루는 길을 찾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테헤란회의에서도 인권보장은 경제·사회적 발전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해 건전하고 효과적인 발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천명하였고, 특히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가장 긴급한 인권의제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적 격차가 인권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데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모든 국가가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데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테헤란 선언 12, 13조).

5) 1961년 16차 총회에서 이후 10년을 유엔발전 10년으로 선언하여 이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 전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민소득의 약 1%를 원조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기간동안 세계경제는 커다란 성장을 거두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에 70년 유엔 25주년 기념총회에서 71년부터 10년간을 제2차 유엔발전 10년으로 정하였다.

## (나) 유엔 여성 10년과 발전과 여성(Women in Development)에 대한 관심

유엔의 인권의제가 경제개발과 인정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 역시 경제개발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집중되었다. 남성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각종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여성들이 직면한 보편적 문제이며 유엔의 여성인권의제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발전정도나 사회상황에 따라 인권문제도 상이하게 전개되며 인권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사도 차이가 있는데, 서구의 여성인권운동은 태동기부터 시민적·정치적 인권 보장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온데 비해 개도국 여성들의 일차적 관심은 다른 부분에 있었다.

개도국 여성들은 저개발이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제기하고 따라서 경제개발을 통해서만 여성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각국에서 추진되는 경제발전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여성의 인권과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한 만큼, 경제발전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키는 것을 여성인권의제의 핵심 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 ① 세계 여성의 해와 멕시코 세계여성회의

개도국 여성들의 관심은 1970년대 중반 유엔 여성인권활동의 핵심주제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여성인권의제는 정치권과 국적권, 가족권의 보장 뿐 아니라 발전과정에 여성을 통합하고 여성의 경제권을 보장하는 차원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는 여성인권의제의 전환을 가져온 주요한 계기로서 세계 여성의 해를 통해 “농촌지역 여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경제발전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여성운동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세계 여성의 해를 맞아 멕시코시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평등, 발전, 평화의제를 논의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발전을 평등의 촉진과 평화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자, 최우선의 과제로 인정하였다. 특히, 여성들이 발전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노동권과 동일임금의 권리 등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그 결과, 선언문에서는 세계 여성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도 저개발상태를 특별히 지적하면서 "저개발이 여성에게서 급속히 철폐되어야 할 차취라는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멕시코 선언문 12)"고 진단하였고 여성은 전반적인 개발 노력에 참여하고 공헌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는 여성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제사회정책의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행동계획에서는 경제발전에 여성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확대, 이를 위한 각종 지원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 ▶ 여성 특히 농촌지역 여성의 문자해독을 증가
- ▶ 공업·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술 및 직업훈련 확대
- ▶ 각급학교, 특히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동등한 입학기회 보장 및 학교 중퇴 예방
- ▶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 증대 및 실업 감소, 그리고 고용조건의 성차별 폐지
- ▶ 도시와 농촌에서 요구되는 하부구조 서비스 확립
- ▶ 여성의 부담, 특히 농촌여성이나 도시 빈민지역 여성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 아동보호서 설치 및 시간절약 기구 개발 (멕시코 세계여성 행동계획 46).

## ②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이후 경제개발과정에 여성을 통합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멕시코 회의를 계기로 여성을 발전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가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당시의 경제 불황 속에서 여성들의 취업환경이 악화되고 특히 개도국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전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키는 문제는 더욱 긴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198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2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고용과 건강, 교육 분

야를 중심으로 여성을 경제발전에 통합시키기 위한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사업계획에서는 여성들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산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증대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발전에 있어 여성들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는 탁아시설을 포함한 사회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이중부담을 줄일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거시적인 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과정에 여성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였다.

### ③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 여성 10년 및 두 차례의 세계여성회의와 함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활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은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채택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작업에 착수했으며<sup>6)</sup>, 드디어 1979년 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협약에서는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인권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구별과 배제, 억압의 철폐 의무를 각국에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의 여성차별, 국제기구 참여에 있어서의 차별, 국적 취득 및 변경에 있어서의 차별,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차별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차별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취업기회의 차별, 건강과 사회경제적 혜택에 있어서의 차별, 금융대부 등에 관한 차별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특히 경제적 권리

6) 원래는 세계 여성의 해에 맞춰 협약을 체결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수정작업이 지연되어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했다. 대신 멕시코 회의에서는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을 마련하도록 추구하고 여성차별철폐선언을 협약화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약 체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의 차별을 여성인권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온 여성인권의제를 종합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 여성인권장전의 성격을 지닌다.

## 나. 폭력의제의 대두와 여성인권의제의 주류화

### (1)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세계에는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특히 여성, 소수민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적인 인권침해요인이다.

각종 폭력 가운데에서도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면서 있다. 남편에 의한 폭력을 포함한 가족 내 폭력, 성폭력, 성추행, 강간(미수) 등이 대표적인 폭력의 형태이며, 무력분쟁 상황에서는 이러한 폭력이 보다 심각한 형태를 띤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참금과 관련된 폭력, 신부화형, 여아살해, 태아성감별에 따른 유산, 음핵제거 등의 폭력이 사회 관습의 형태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복합적인 인권침해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폭력은 여성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인 동시에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로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유와 안전권,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도 복합적인 위협요인으로 규정될 수 있다.

### (2)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와 폭력의제의 부상

인권 개념의 확립 이후 인간에 대한 각종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로 지적되어 왔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폭력 철폐는 인권보장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인권의제는 인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성차별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찾는 데 집중되어 왔으며 유엔 여성 10년 기간 중에도 남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향유해야 한다는 평등의제가 인권활동의 핵심을 구성했다. 평등의제와 비교하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결국 여성인권은 일반적 인권의제에 통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유엔 여성 1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 검토하고 향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평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물론 인신매매 등의 문제는 유엔 창설 이전부터 국제적 관심사였으며 유엔 창설을 계기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꾸준히 강구되어 왔다. 유엔 여성 10년 기간 중에도 이 문제가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멕시코 세계여성회의에서도 교육과 훈련, 고용과 경제활동, 건강과 영양,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 인구, 주택 및 관련시설, 정치참여 등의 주요주제 이외에 인신매매와 매춘 등도 세계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논의하였으며, 희생자 구제 사업 등의 조치가 행동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sup>7)</sup> 그리고 태국의 제안에 따라 매춘과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착취를 제거하고 피해여성들의 사회 재통합을 도모하도록 각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어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멕시코 회의에서 지적된 인신매매와 매춘 이외에도 가정 폭력과 성폭력, 성착취, 음핵제거를 비롯해 여성의 신체와

7) 멕시코 행동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59>매춘 및 여성 관련 범법행위의 특히 젊은 여성의 매매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특수 입법 및 기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매춘과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희생자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한 각종 특수계획이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협조 하에 개발되어야 한다.

<160>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대한 착취 금지 협약을 비준,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정부는 협약을 비준 또는 승인해야 한다.

건강에 손상을 일으키는 관습 등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하이트) 하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강간, 억압문제, 팔레스타인과 남미 등의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여성피난민에 대한 착취 등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논의를 집중시켰다. 회의에서는 폭력이 여성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에 접근했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8)</sup>

또한『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 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제6조)”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협약에 따라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서는 협약에서 특화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의 여성차별 철폐 방안에 대한 권고권을 발휘하여 HIV/AIDS 문제와 함께 여성폭력문제를 차별로 규정하고 협약 비준국들이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신혜수 1999: 473-474, UN 2000: 151-152).

그런데, 폭력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속에서도 여성인권의제의 핵심은 차별에 있었으며, 특히 유엔 여성 10년의 활동은 발전과정에 여성을 통합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폭력의제는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부수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일반이 직면해 있는 보편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매매춘여성이나 무력분쟁지역의 여성이나 난민, 이주노동자와 같은 특정 집단의 여성에 한정된 문제로 접근되었으며 여전히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8) 코펜하겐 행동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41>⑥ 여성과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정의 폭력, 강간, 성착취, 기타 형태의 학대로부터 초래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모든 연령대의 여성 보호.

<162> 여성의 신체와 건강을 해치는 음핵제거 관습을 금지한다.

<163> 가정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그 정도와 원인에 대한 연구를 증진한다; 대중매체, 문학, 광고 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적 착취를 미화시키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진료센터 및 보호처를 설립하고 폭력과 성적 학대의 희생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과 자녀들에게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현저히 변화였다. 회의에서는 폭력을 특정집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처해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는 단지 피해자 여성 개인의 건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남녀간의 완전한 평등을 저해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 번영까지 위협하는 주요요인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세계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 이외에 문제의 원인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우선 무력분쟁지역의 여성과 인종분리정책하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구타나 부상, 화상, 성적 학대, 강간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회적 문제임을 일반대중에게 알리고, 희생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을 일종의 노예제도로 규정하고 문제의 요인을 사회 전반적인 여성차별과 성상품화 경향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 ▶ 인신매매 및 매춘 금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
- ▶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금지를 위한 국제적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
- ▶ 직업훈련과 고용기회 제공 등을 통해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의 사회재통합을 지원할 것
- ▶ 매춘과 관련된 폭력, 마약복용, 범죄 등에 강력히 대처할 것
- ▶ 매춘과 관련된 여성의 착취와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 (3)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여성인권의제의 주류화

인권증진이 유엔의 주요 목표로 설정된 이후 여성이 보편적 인권을 인정받고 그 권한을 향유하는 것은 모든 인권논의의 기본적 목표로 선언되었다. 『세

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한 주요협약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시하였으며 테헤란 국제인권회의,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언은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렀을 뿐 실제 인권논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 세계여성들이 직면한 인권문제는 주요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채 주변적으로만 취급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인권의제 전반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여성인권은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 일반적인 인권논의와 여성인권의제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전기가 마련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로 당시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인권이 인권의제 전반에서 주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세계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하여 여성인권을 주요 인권의제로 통합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유엔 인권기구로 하여금 여성인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촉구하였다. 특히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여성인권을 고려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해 1991년부터 세계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신혜수 1999: 477-481).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권회의 사상 처음으로 비엔나인권회의에서는 여성인권문제가 핵심의제로 채택되었다.

냉전 종식과 공산주의 국가의 자유화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45주년을 맞아 1993년 개최된 비엔나 인권회의는 세계 170여 개국이 참가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권 논의의 장이었다. 회의에서는 그간 이룩된 인권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인권의제 가운데에서도 인종차별과 여성, 원주민, 아동, 장애인, 취약집단 등이 직면한 인권침해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특히 여성인권과 이를 침해하는 성차별과 폭력문제는 특별주제로 채택되어 회의기간 중 각국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 협약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자들의 토의가 이어졌으며, 세계 도처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직면해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부분이며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측면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모든 형태의 성차별 근절이 국제사회의 우선적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그간 유엔에서 제기되어 온 각종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엔나 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 등을 포함해 성별에 기초한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 착취로 규정하고 이는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보편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며 공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원인에 대해 회의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특히 여성의 권리와 상충되는 전통적 관행, 문화적, 편견, 종교적 극단성 등으로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바를 문제 삼았다. 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 요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해졌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국제인신매매와 무력분쟁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도, 강제임신 등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졌다.

비엔나회의를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한층 높아졌으며 그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책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회의 직후 소집된 유엔 총회에서는 비엔나 회의의 결의를 기초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폭력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1994년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비엔나 회의 이후 유엔의 인권 논의에서는 여성인권의 주요의제로 통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카이로 세계인구개발회의(1994),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1995), 이스탄불 인간 주거회의(1996) 등에서는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해당 의제를 조명하면서 여성의 인권 보장과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철폐가 인간 사회의 주요목표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2001년 더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에서는 동유럽의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이주민과 난민문제, 인신매매 등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야기되는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성인권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4)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의 채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인권침해문제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1986년 개최된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가족과 사회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선포하였으며, 1990년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경제적 수준이나 계급, 문화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야기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이로비 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미래전략』은 법적 효력을 결여하고 있는 결의안으로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공식규범과 제재조치로는 기능할 수 없었다.

이에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성에 기초한 폭력문제에 특화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자, 1991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여성지위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화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드디어 1992년 8월 여성폭력에 관한 선언문 초안이 완성되었다. 때마침 전 유고슬라비아 집단강간사태가 발발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

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비엔나 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유엔의 각종 결의를 공식화하고 향후 대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결국 회의 직후 개최된 1993년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건강 침해문제 차원을 넘어 평등과 발전, 평화라는 유엔 기본정신에 위배하며 모든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선언문에서는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두 가지 요소, 즉 차별과 폭력 문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여성인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폭력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있으며 폭력의 결과 성차별적 구조는 한층 강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을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선언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적, 사적 생활을 막론하고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손상 내지 고통을 야기하는 또는 야기할 수 있는 성에 기초한 폭력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위협과 강제 또는 자유의 임의적 박탈”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가족 내에서 야기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구타, 가구내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부부간, 음핵 제거, 기타 여성에게 손상을 입히는 전통적 관습, 남편 이외의 가구원에 의한 폭력, 착취와 관련된 폭력.

▷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자행되는 폭력**

직장과 교육기관에서의 강간, 성추행, 성적 학대, 여성인신매매 및 강제매춘 등.

▷ **국가에 의해 묵인 내지 방조되는 폭력**

그리고 선언에서는 이러한 제반 폭력에 대처하는 무조건적인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양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는 점이 공식화되었으며 폭력 철폐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관습이나 전통, 종교적 요인을 들어 회피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었다. 물론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은 결여하고 있지만, 여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국제적 문서로 공식화하였으며, 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다. 유엔 여성인권의제의 방향

인간의 자유와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은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서 이미 유엔창설 이전부터 식민지 주민들의 인권침해, 노예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인권침해의 주요 피해자이자 인권침해의 영향이 보다 심각한 집단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따라서 여성인권 보호의 핵심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여성을 극단적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두어졌다.

유엔 창설을 계기로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제도적 차원에서 정착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 창설과 함께 기존의 인권개념과 여성인권에 대한 접근 방향은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유엔의 인권의제는 특수한 집단이 직면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열악한 환경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즉, 극단적 인권침해에 처해있는 집단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과제일 뿐이며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이 인권을 보장받지 않는 보편적 현실을 문제 삼고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서 인권활동의 범

위는 피해자의 즉각적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후 교정 차원을 넘어 인권 침해 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다양한 인권침해요인 가운데 민족, 종교, 성 등의 이 유로 특정 집단을 완전한 인권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구조는 인권침해의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접근 역시 특정 집단의 여성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고 그 피해도 남성보다 심각한 현실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요인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여성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여성을 보편적 인권을 지닌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제도와 뿌리 깊은 관습에서 유래 한 결과이며, 따라서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인권 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여성들이 직면해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문제도 꾸준한 관심사였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부정하는 심각하고도 복 합적인 인권침해로서 유엔 형성 이전부터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폭력문제를 특정집단의 여성에 한정된 문제로 보는 경향이 농후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 차원에서 인권침해문제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도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폭력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공적인 장에서 배제된 채 사적인 영 역에 제한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공적으로 가시화하는 데 있었다. 흔히 여 성들의 삶은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공적인 개입과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 왔으며, 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경우에도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다. 심지어 폭력을 야기하는 구조가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되어 피해 여성 자신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에 자연스러운 질서로 내면화되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1990년대 유엔인권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공적인 의제로 채택하는 도전적 과 제에 집중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으며, 『여성에 대한 폭

력 철폐 선언』 채택 당시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 본연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권의 의미를 희석시킨다는 이유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인권 의제로 채택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운동계와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적 관습이나 종교 전통 등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제 여성인권활동은 피해자 구제나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여성인권 침해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관행과 의식을 문제 삼고 문화적 상대주의의 원칙 하에 국제사회의 개입이 제한되어 있던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다.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와 함께 여성인권의 중요한 의제는 여성의 특수한 권리를 기본인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되어 왔지만, 특정 집단은 그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해 특수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인권에 있어 특별히 취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이나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재생산역할과 관련된 여성의 특수한 권리, 즉 임신·출산을 선택할 권리, 성·출산·모성 관련 건강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은 여성의 삶과 복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생활권, 건강권, 노동권, 사회참여권 등 여타의 여성인권 역시 확보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재생산건강권을 여성의 기본 인권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카이로 인구개발회의를 계기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3. 주제 채택 배경

인권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에서 출발한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 차별문제와 폭력문제를 유엔의 의제로 제기해왔는데, 구체적인 여

성인권의제는 당시의 국제적 상황과 세계여성들의 관심에 따라 재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면에서 1990년대 이후 세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성인권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지위위원회의 인권의제의 초점도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세계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성인권 문제는 인신매매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이다. 물론 인신매매를 비롯한 폭력에 따른 여성인권의 침해문제는 19세기 말 국제사회가 형성될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나이로비 회의 이후로 특히 비엔나 세계회의와 뒤이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의 채택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NGO 차원에서도 1988년 여성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제1차 세계회의(Global Confere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여성인신매매 철폐 연합(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ATW)이 형성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문제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 가.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

이처럼 인신매매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보고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조사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조사방법론을 개발하고 통계자료를 수집,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 (1) 가정폭력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다. 세계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8%에 이르는 여성들이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특정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58%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여성 살해범죄의 경우 배우자가 살인자인 사례가 많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브라질에서는 살해된 여성의 60%가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으며, 캐나다의 어느 주에서는 여성을 살인한 자의 61-68%가 현재의 배우자나 이전 배우자이며, 여성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N 2000:154).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여성을 남성가족원의 소유물이며 따라서 그 생명까지 남성이 좌우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인식과 관습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점은 남아시아에서 여성 살해가 지참금과 관련해 나타나는 경향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이유로 남성 가족원들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기도 하는데, 요르단에서는 1998년 1년 동안 22명의 여성이 가족명예의 이름으로 살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UNDP 2000:114).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 폭력을 가족 내의 문제이며 관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더욱이 살해한 남성에게 형벌 경감조치를 두는 국가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 살해 행위를 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권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법적 권리를 행사한 여성이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혼 직후에 여성이 전배우자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혼을 시도하다 실패한 경우에 살해될 위험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UN 2000: 153-155).

## (2) 성폭력

강간, 강간미수, 성희롱 등의 성폭력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나마 1996-1997년 전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국제 범죄 피해자 조사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의 6개 도시에서는 1-8%, 아프리카의 6개 도시에서는 1-5%, 아시아의 4개 도시에서는 1-3%의 여성이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엔 지역간 범죄 및 형사 연구소(UN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에서는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강간미수의 경우 약 1/4, 강간의 약 1/3만이 경찰에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신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는 국가별로 7-29%에 이를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대한 성폭력은 특히 무력분쟁 시에 빈발할 뿐 아니라, 공격을 위한 일종의 무기로 조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예는 2차대전 중 일본이 우리나라 여성을 군위안부로 차출해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무력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국가 재구성 과정에서 일어난 민족분쟁에서도 극도로 심각한 양상의 성폭력 사태가 야기되었다. 1991년 발발한 전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는 집단강간이 자행되었고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임신부에게까지 강간이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역시 강간이 체계적으로 자행되었고 학살의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 보고관은 1998년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 보안군에 의해 성폭력, 강간, 강제 매춘, 강제 결혼 등이 자행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도 강간 등의 성폭력이 전쟁 무기로, 체계적 “인종청소”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UN 2000: 155-158).

### (3) 인신매매

노예제 폐지 이후 인간 또는 인간에 대한 권리를 사고파는 인신매매는 범법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되어왔지만,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가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

2000년 채택된 『초국가적 조직범죄 철폐 유엔 협약을 보충하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금지,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의하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강제, 사기, 기만, 권력 남용,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의 이용, (피해자를) 통제하는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금품이나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해 인간을 모집, 이송, 은닉, 수취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타인의 매춘 착취,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제 및 이와 유사한 행위, 예속, 장기 제거 등이 포함된다(제3조).”

이러한 의미의 인신매매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자행될 수 있지만, 주요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로 이들을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멀리 데려가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거나 단순 노동력으로 이용하거나 강제로 결혼하거나 입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신매매는 은밀히 이루어지거나 합법적인 형태로 가장해 이루어지는 만큼 믿을만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미국 국무성에 의하면 매년 적어도 700,000명의 인간이 인신매매 되고 있으며 많게는 2,00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그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9)</sup>.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으로 유입된 국제 인신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매년 45,000-50,000명의 여성이 미국으로 인신매매되어와 성적 착취 상태에 놓인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 50,000명 정도가 유럽과 남미로 팔려

9) UNIFEM and UN Inter-Agency Project on Human Trafficking in the Mekong Region, [Trafficking in Persons: A Gender and Rights Perspective].

갔으며, 사회주의 경제 붕괴 이후에 중부유럽과 동부유럽 여성 상당수가 서부 유럽으로 매매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아태지역 여성인신매매 철폐 연합(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Asia Pacific)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200,000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여성이 파키스탄으로 팔려갔으며 20,000명에서 30,000명가량의 미얀마 여성이 태국으로 팔려갔다. 또한 태국 여성들은 주로 호주나 일본으로, 필리핀 여성은 미국, 호주, 유럽, 일본, 한국 등지로 팔려가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 중 일부는 저임금 기피업종 노동자나 가사노동자로 동원되기도 하고 플랜테이션의 노예노동자가 되기도 하며, 대다수는 매춘이나 기타 성산업에 동원되거나 강제결혼의 대상이 된다. 불법 인신매매를 통해 고향으로부터 이주한 이들은 낮은 환경에서 흔히 모든 인권을 박탈당한 채 착취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인신매매를 통해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이들은 체류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며 그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오히려 범법자로 취급되어 추방조치를 당하게 되고, 고향에 돌아간 뒤에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힌 채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다중적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UN 2000: 158-159).

#### (4) 음핵제거(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여성에 대한 폭력 가운데에는 그 사회의 관습으로 굳어져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고 심지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까지 있는데, 여성의 음핵제거 관습은 그 대표적 예이다.

제한된 자료로나마 추산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1억에서 1억 3천만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이 여성할례를 거쳤으며 매년 2백만 명 이상의 소녀들이 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습은 아프리카의 27개 국가와 몇몇 서아시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소수민족,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의 토착민들 사회에서도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음핵제거는 여성에게 의학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음핵제거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러한 관습을 중단할 것을 계속 권고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국가에서 계층이나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이러한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사회에서 이 관습을 통해 여성의 명예가 보호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UN 2000: 159-161).

#### 나. 세계화와 여성인권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종 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가 일종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구조의 일부로 통합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화는 폭력의 증가와 구조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1)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20세기 말부터 세계는 지구화 또는 세계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세계시장의 형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과 재화, 정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세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는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문제 역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세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권 기준이 마련되고 특정 국가 내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국제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상당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제기되기도 했다. 음핵제거 등 지역의 관습으로 뿌리내린 행위가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무역자유화를 통해 경제성장은 이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실현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세계화과정에서 초국가 거대기업과 선진국들은 더욱 부유해졌으며 개도국의 일부 부유층들은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된 반면,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은 무시, 유린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인권 보호 의무를 쉽게 포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인권 유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빈곤지역 빈곤층의 수입은 오히려 저하되고 복지수준은 낮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해고와 착취가 빈발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인종·민족적 폭력, 인신매매 등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등 세계화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주변집단의 인권 침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UNDP 1997; UNDP 2000; Chunakara 2000).

## (2) 빈곤의 여성화

세계화를 계기로 인권문제 역시 국경을 벗어나 국가간의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인권 침해의 주요 피해자는 거대 자본을 위해 열악한 상황에서 비인간적인 조건을 감내하는 빈곤한 노동자나 농민층과 보다 잘 사는 지역으로 옮겨간 개도국 출신자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취업 가능성도 낮은 여성들은 가장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화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과 복지 수준이 낮아질 위협에 처한 가운데 특히 여성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경제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이들은 문제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거나 대안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Matsui 2000).

### (3) 여성이주노동자 및 난민의 증가

세계경제체제는 선진국 중심의 거대 자본과 첨단 기술, 마케팅 전략과 저임금 노동력의 결합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체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거지를 떠나 일하게 된다. 특히, 이주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단순 노동력으로서 주로 여성이 동원된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민족, 인종, 종교적 분쟁이 빈발하면서 많은 이들이 혼란과 불안, 경제의 피폐와 굶주림 등을 피해 낯선 곳으로 이주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난민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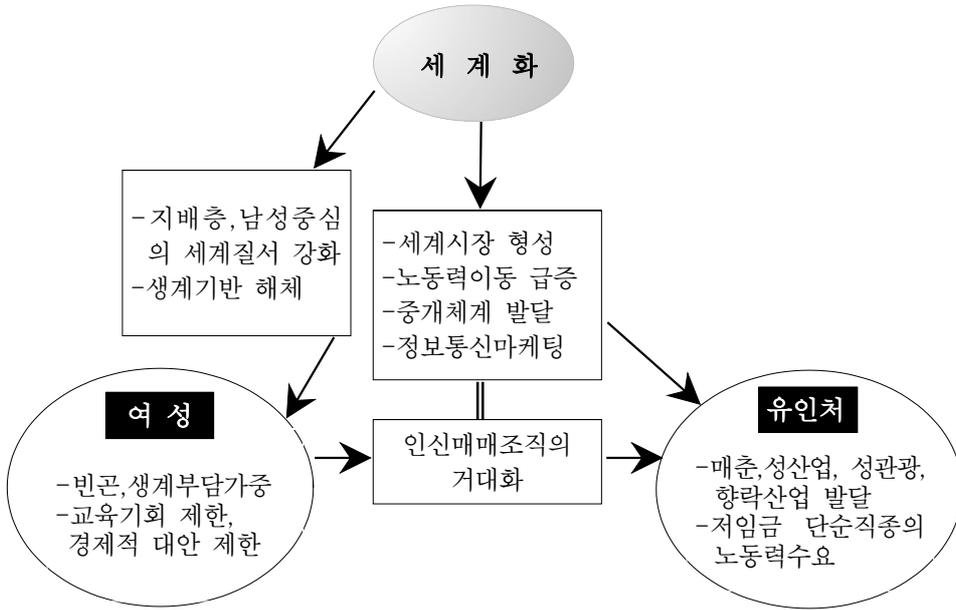
여성이주노동자나 난민들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낯선 환경에서 각종 착취와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신체적,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흔하다.

### (4) 인신매매의 초국가적 조직범죄화

이처럼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인권 침해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신매매는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되어온 문제이지만, 최근 들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가운데 인간, 특히 여성의 신체와 성 역시 주요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주로 제3세계 빈곤층에서 딸이나 친척 여아를 팔아넘기는가 하면 여성 스스로 경제적 대안이 부재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휩싸인 고향을 떠나 경제적 부와 신체적 자유를 꿈꾸며 선진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구소비에트 연방과 동구 여성들도 이 대열에 합세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 사이에서 또는 특정 국가 내에서도 주변화 된 민족, 계층, 지역에서 중심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 걸쳐 인신매매의 연쇄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인신매매를 거래는 조직적 형태로 발전하여 마약밀매, 무기밀매와 함께 가장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는 면모까지 보이고 있다.

인신매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데에 있다. 인신매매에는 사기, 협박, 감금, 부채 등 각종 불법적 강제 수단이 동원될 뿐 아니라, 계약위반, 임금체불 등의 피해도 빈발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신매매되어간 여성들은 극단적인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처음부터 성산업으로 팔려가기도 하지만, 다른 직종에 일하기로 한 경우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또는 무지와 고립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공적으로 제기되지 못하며 체류국 정부에서도 이들을 범죄의 피해자로 보기 보다는 불법 이민, 불법 체류를 범한 범죄로 인식하여 추방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극도의 폭력과 성적 착취, 구금 등에 시달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심지어 HIV/AIDS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그림 1> 세계화와 인신매매 구조

## 다. 북경여성회의와 이후 동향

### (1) 북경여성회의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자행되고 여성인권 침해가 빈발하는데 대해 국제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95년 북경에서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었다. 북경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유엔의 기본적 지향과 모순되며 여성의 인권 향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이나 인권증진과 관련된 유엔의 논의에서 폭력 철폐와 여성인권 보호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북경회의에서는 총 12개 핵심주제를<sup>10)</sup> 선정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인권, 여아 분야 등 총 4개 분야에서 여성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반 분야에서도 여성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먼저 회의에서는 세계여성들이 가정폭력과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인신매매와 강제 매춘 등 다양한 폭력에 희생되고 있으며, 특히 무력분쟁상황에서는 여성에 대한 살상,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화와 강제임신 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긴급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외에 적지 않은 지역에서 여성할례, 강제 불임과 강제낙태, 피임제의 강압적, 강제적 사용, 여아살해, 태아 성감별 등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것 역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와 인권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여 북경회의에서는 법의 제정 및 시행과 사회적 관행과 의식 등 사회 전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의 근본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 방법에 관해 연구하며,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철폐하고 매춘과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회

10) 북경회의에서는 다음의 총 12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A.여성과 빈곤, B.여성과 교육·훈련, C.여성과 건강, D.여성에 대한 폭력, E.여성과 무력분쟁, F.여성과 경제, G.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H.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I.여성과 인권, J. 여성과 미디어, K.여성과 환경, L.여아.

생자를 지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특히, 각국 정부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채택, 실행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검토와 분석을 계속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성 관점을 유지하고, 폭력의 원인과 결과, 기제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정책 실행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권고하였다.

## (2) 제4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1996년부터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주요 관심분야별로 북경회의 행동강령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2개 관심분야 가운데 여성의 인권과 여아,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에 대한 폭력 등 폭력의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인권문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1998년 제42차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다. 참가국 대표단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 실태를 언급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각국에서 채택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한 유엔의 활동이 여성인권에 중심으로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인권을 증진, 보호하기 위한 인권관련기구들의 협력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별 패널토의에서는 여성인권을 제한된 측면의 문제로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차별을 여성인권 침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아와 관련해서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아들이 흔히 강간과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이 강화되어야 하고 협약 내용이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데 대해 이러한 반인류적 범죄로 규정하고 재판권 행사를 통해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령과 협약,

의정서를 개정하여 전쟁 중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며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데, 관련 자료를 광범위한 차원에서 수집하고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폭력 방지를 위한 남녀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법집행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토론을 기초로 제42차 위원회에서는 회원국 정부에게 여성인권과 관련된 각종 협약을 비준할 것과 협약과 각종 권고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심을 적용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NGO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며 무력분쟁 하에서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여성과 난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폭력에 관한 연구를 지원할 것 등을 결의했다(여성특별위원회 1998;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8a).

<표 7> 제42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우선주제별 합의 결론 개요

우선주제	합의결론 개요
여성에 대한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li> <li>▷ NGO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 제공</li> <li>▷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및 매춘 등 특정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연계 및 협력 구축</li> <li>▷ 법적 조치 강화</li> <li>▷ 폭력과 인신매매의 근본원인과 본질,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성 분리된 자료 수집</li> <li>▷ 교육, 훈련을 통한 태도 변화 유도</li> </ul>
여성과 무력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적 사법 보장</li> <li>▷ 무력분쟁시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 조사, 이들의 특수한 요구 인식</li> <li>▷ 평화유지 및 구축, 분쟁 전후의 의사결정, 분쟁방지, 분쟁 이후 결의 및 재건 과정에 여성 참여 증진</li> <li>▷ 분쟁 방지 및 평화문화 증진</li> <li>▷ 불법적 무기밀매, 지뢰를 포함한 무장 해제조치</li> </ul>

우선주제	합의결론 개요
여성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인권 향유를 위한 환경 조성 및 발전, 의식 증진</li> <li>▷ 성평등과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li> <li>▷ 국가적, 국제적 관련 정책, 기제, 기구 강화</li> </ul>
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아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여아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증진</li> <li>▷ 여아의 교육 및 세력 증진</li> <li>▷ 여아의 건강 보호</li> <li>▷ 무력분쟁시 자행되는 여아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강구</li> <li>▷ 매춘 및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조치</li> <li>▷ 여아노동자에 관한 관심 증진, 여아의 교육, 노동, 건강, 식량, 주거권 보호, 일터에서의 경제적 착취와 성희롱, 성적학대로부터 보호</li> </ul>

(3) 제23차 특별총회(Beijing+5)

북경회의 이후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한층 고조되었으며 관련 기구들에서는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르완다와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강간 사태를 인권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리할 것을 결정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범죄에 대응하는 보호책을 내놓았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세계 각지의 여성인권침해 문제를 보고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지위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의 인권과 성 관점의 통합을 정식의제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다른 모든 의제에도 성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외에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는 잘 보고 되지 않는 여성과 여아들의 음핵제거와 인신매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김양희 외 2000).

2000년 제23차 특별총회는 북경여성회의 개최 5주년을 기념해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회의 이후 세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도전적 요소를 분석하여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

였다. 먼저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서는 북경 회의 이후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공적, 사적인 장에서 야기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인식 증가
-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손상시키며 무효화하는 문제라는 인식 확산
- ▷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법, 정책, 프로그램의 발달
- ▷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인식 증가
- ▷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 증가
- ▷ 법, 의료,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촉진
- ▷ 희생자들을 위한 법, 경찰, 의료, 상담, 보호 등의 광범위한 서비스
- ▷ 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 진척
- ▷ 대중교육 및 캠페인 교육 발달
- ▷ 성역할, 특히 남성과 소년의 성역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증가
- ▷ 정부와 비정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 ▷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 ▷ 캠페인, 희생자를 위한 서비스 등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 제고
- ▷ 음핵제거를 포함한 전통적 악습 근절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정책지원
- ▷ 이러한 관습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국제인구기금의 음핵제거 근절을 위한 특별대사 임명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양상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특별총회에서는 폭력문제의 해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다.

- ▷ 폭력의 근원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 ▷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의 부족
- ▷ 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
- ▷ 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체계 제한

- ▷ 가정 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지속
- ▷ 법적 조치 미흡
- ▷ 예방 전략의 한계

이에 특별총회에서는 성에 바탕을 둔 폭력,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성적학대, 성적 노예화, 착취, 국제 인신매매, 강제매춘, 성희롱 등과 문화적 편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포르노그래피, 인종청소, 무력분쟁, 타국의 점령, 종교적, 반종교적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기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여성폭력에 대한 “Zero Tolerance”, 즉 무관용주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방지조치를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할 것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법 제정 및 개정
- ▷ 모든 형태의 폭력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
- ▷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다루는 절차 강화 및 입법화
- ▷ 음핵제거, 조흔, 순장과 같이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기본적 자유와 인권 향유를 가로막는 전통적 관습 근절
- ▷ 전통적 관습의 여성인권 유린문제에 대항하기 위한 지역 여성그룹과의 협력 촉진. 법,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조치 개발·채택·적용.
- ▷ 폭력의 근본원인에 대한 연구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근절 조치 강구
- ▷ 인종주의나 인종적 동기에서 야기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 그 영향을 홍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 실시.
- ▷ 여성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일차 의료보호체계에 통합,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 제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훈련 실시
- ▷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과 소녀를 포함해 여성과 소녀의 삶과 그 환경에 있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 채택
- ▷ 매춘과 여성 인신매매, 성산업, 강제결혼을 조장하는 근본적 요인 제거.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 강화, 권리침해자 처벌, 포괄적인 반-인신매매 전략(입법조치, 예방캠페인, 정보 교환, 희생자 보호, 위반자 처벌 등) 동원

- ▷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매춘행위나 불법 거주 등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을 착취의 희생자로 인정. 인신매매의 원인, 경향 등을 보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가적 차원의 기관 설립 내지 강화
- ▷ 여성과 그들의 가족 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강화

#### (4) 최근의 성과와 쟁점

##### (가)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와 인권 증진 측면에서 제23차 특별총회는 비엔나 행동계획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 북경행동강령을 계승하는 한편,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계기였다. 특별총회를 통해 명예살인과 강제결혼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언급된 것을 비롯해, 지참금 내지 혼수 관련 폭력과 부부간격을 처벌하는 강력한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가정폭력을 다루는 기제의 강화를 공식화한 것 역시 큰 성과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총회를 계기로 인신매매에 대한 유엔차원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면서 총회와 관련기구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별총회 직전 개최된 54차 유엔총회에서는 『아동 인신매매와 매춘, 포르노그래피 등에 관해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2년 발효)를 채택하여 어린이 매춘, 매매, 성관공 관련자에 대한 금지와 조사, 체포와 처벌 등을 위한 양국간, 지역간,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어 55차 총회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철폐 유엔협약을 보충하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금지,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여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권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해 입법조치, 방지 캠페인, 정보교환, 희생자 지원 및 보호, 재활, 중개자를 포함한 범죄자에 대한 사법집행 등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반-인신매매 전략을 고안, 실행, 강화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1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더반 세계회의에서도 인신매매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그 철폐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와 금지캠페인, 정보교환 등의 종합적인 반-인신매매 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총회로 하여금 인권보호를 위해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유엔의 해 또는 10년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02년 57차 유엔 총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맞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행동강령을 채택하면서 유아의 성적 착취와 매매 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결의안(57/176)을 채택하기도 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2001년 57차 회의와 2002년 58차 회의에서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에 대한 결의안을 계속 채택하는 등 인신매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산하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서도 2001년 53차 회의 의제로 인신매매와 인권보호를 채택하였으며 각국으로 하여금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을 인권관련 활동에 포함시키고, 희생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이외에, 소위원회 산하의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실행위원회(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에서도 인신매매 문제를 2001년 26차 회의의 안건으로 다루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은 여성과 아동, 이주자의 인신매매 문제를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신매매문제가 국제 인권 의제에서 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같은 회의에 인신매매와 관련된 부패에 대항해야 할 필요성과 그러한 불법행위를 처벌할 법적 조치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사법정의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서도 2002년 제 10회 회의에서 인신매매문제를 논의하고 인신매매와 부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여성인권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외에 인권관련조약 기구(부록 참조)에서도 회원국들의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다루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02년 각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아동인권위원회에서도 2001년 27차, 28차 회의에서 아동 인신매매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Human Right Committee)는 2001년 71차, 72차 회의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26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밖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2002년 5월 여성과 아동에게 초점을 두어 인권과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인신매매를 인권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E/2002/68/Add.1).

나아가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세계 여성들이 직면해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안보개념의 형성과 정착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전통적으로 안보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영토의 보존, 외교무대에 있어 국가적 이해의 보호, 핵무기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위협의 제거 등과 같이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집단 특히 국가의 존립과 이해를 보호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온데 대해, 1990년대 중반부터 UNDP와 UNESCO 등에서는 기존의 개념이 보통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직면해있는 안전 문제는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개념을 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 사회의 안전에 대한 비군사적 위협, 특히 환경파괴, 빈곤과 질병, 억압 등의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위협요인들이 안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는 여성인권의제로 꾸준히 다루어져왔던 구조적 인권침해문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성인권의 현실과 그 구조적 요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는 대안적 안보 개념,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이 형성되어 안보에 대한 광범위하고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인권이 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제임이 재차 강조되면서 인간안보 역시 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성이 직면해있는 인간안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Chun 2003).

## (나) 쟁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나이로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해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북경여성회의, 제23차 특별총회를 거쳐 오면서 중심적인 인권의제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전 세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행위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폭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 ①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의 보편성은 불변의 가치로 인정되어 왔으며, 보편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권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 중 상당부분은 즉각적인 차원에서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법제도적 차원의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제도적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의 요소, 특히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폭력과 차별 등의 인권침해문제는 계속 재생산될 수 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핵제거, 순장, 여아 살해, 성감별 등 특정 문화의 일부로서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관습이다. 1990년대 이후, 특히 비엔나 회의를 계기로 여성인권활동을 이러한 행위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구국가에서는 개인적 인권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개인적 인권에 앞서 가족제도의 안정성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카톨릭 국가와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흔히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

으로 지목되어온 관습은 오랫동안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소중한 문화적 전통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고 제약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원칙인 자율성과 문화적 상대주의를 위배되는 것이며, 서구중심의 세계화로 인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반박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측과 문화적 상대성을 내세우는 그룹이 대치하는 복잡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적 권리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특히 여성의 재생산과 성적 행위가 과연 개인적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뜨거운 쟁점의 대상이다. 이러한 점은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에서부터 드러났으며, 특별총회기간에서도 가장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인 사안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한편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리, 나아가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문제 등을 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데 대해,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표시했다. 또한 선진국이 안전한 낙태 보장을 주장한데 대해, 교황청이나 이슬람국가들은 낙태는 그 자체가 인권의 유린이며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서구 선진국들이 포함시키고자 했던 성적 권리는 특별총회 문서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 ③ 부부간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와 관련된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있다. 나이로비 회의와 비엔나 회의, 북경회의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가정 내에서의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다루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물론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에서는 구타, 가구내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부부간, 음핵제거, 기타 여성에게 손상을 입히는 전통적 관습, 남편 이외의 가구원에 의한 폭력, 착취와 관련된 폭력 등 가족 내에

서 야기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특히 부부간을 폭력으로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경행동강령에서도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명시하면서도 이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제23차 특별총회에서는 부부간역시 폭력이며 범죄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서구 선진국들이 부부간을 개인간의 문제로 보고 범죄로 규정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부부문제를 개인간의 문제로 보는 데 대해 이슬람 국가 뿐 아니라 로마 교황청과 카톨릭 국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며 범죄로 규정하는데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인권을 규정하는데 있어 전통적 규범과 종교적 관습이 인권 침해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국가간에 이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특히 서구선진국과 이슬람국가 사이에 논쟁이 뜨거운데, 여기에 세계화논쟁, 서구와 이슬람의 정치적 충돌까지 맞물리면서 그 양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 4.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 준비 및 결과

##### 가.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2001년 제45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우선주제 검토를 위한 2002-2006년간 사업계획을 채택하여 여성 인권 보장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력 철폐를 2003년 제47차 회의에서 검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지위향상국은 마약 및 범죄 사무국과 공동으로 2002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가운데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본질과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방향과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 (1) 인신매매의 개념

지난 1세기 이상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비정형적이고 지극히 다양한 형태를 띠는 인신매매의 개념은 명백히 정의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이에 전문가 그룹회의에서는 인신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유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2000년 체결된 『초국가적 조직범죄 철폐 유엔협약을 보충하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금지,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일명 팔러모 인신매매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강제, 사기, 기만, 권력 남용,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의 이용, (피해자를) 통제하는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금품이나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해 인간을 모집, 이송, 은닉,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취에는 최소한 타인의 매춘 착취,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제 및 이와 유사한 행위, 예속, 장기 제거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된 경우에는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 (제3조).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신매매는 인간의 이동과 관련된 동원, 운송, 이동, 은닉, 수취행위이다. 둘째 인신매매에는 위협이나 강제, 사기, 기만, 피해자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자의 권용 등의 수단이 개입되어 있다. 셋째 인신매매는 성적 착취, 강제노동, 강제서비스, 노예제, 이와 유사한 형태 등의 형태를 띤다.

즉, 인신매매는 기만과 착취의 의도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 범죄로서, 인간의 이동과 관련된 제반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총괄하며, 노골적인 강제에서부터 교묘한 유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Manohar 2002; UNDAW and UNODC 2002).

## (2) 인신매매의 본질

인신매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성적 착취가 주요 목적 인만큼 여성과 여아가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재확인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인권침해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인신매매된 여성과 여아는 인간적 정체성이 파괴되고 인간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박탈당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인신매매 과정에서 그리고 기착지에서 폭력과 굴욕적 대우를 당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하며, 일생동안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시달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HIV/AIDS, STDs, 약물중독, 정신 질환 등에 시달려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인신매매는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고문과 폭력, 모욕적 처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과 가족에 대한 권리, 교육과 취업의 권리, 건강의 권리 등 광범위한 인권을 침해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협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형태의 하나로서,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될 수 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문제가 인권침해 차원에서 접근되지 않는 현실 역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문제에 직면한 사실 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이민과 취업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피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며, 따라서 이들의 인권보호 조치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크다(Manohar 2002; UNDAW and UNODC 2002).

## (3) 인신매매의 원인과 추세

전문가 그룹회의에서는 인신매매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로서, 마약거래나 무기밀매와 맞먹을 정도로 수익율이 높고 위험부담은 낮은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신매매 번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화 추세와 함께 많은 이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 쉬운 상

황에 놓여있으며 이에 더해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법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가 번성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즉, 인간과 상품,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이면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은밀한 행위 역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가 인신매매 번성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희생자들이 직면한 빈곤과 불평등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빈곤에 직면한 이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감언이설에 넘어가기 쉬운데, 특히 토지소유권, 상속권 등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은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다. 게다가 교육기회도 제한되고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여성들은 본거지를 떠나갔을 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인신매매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이 심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주위사람들이 입양, 결혼, 직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통제권 하에 있는 여성이나 여아를 팔아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의 판매를 합리화하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의 판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또한 고향에서는 미래를 찾을 수 없는 여성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또는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때로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꿈꾸며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는 흔하다. 이에 더해 가족과 지역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과 여아는 인신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무력분쟁과 각종 사회정치적 불안, 각종 재해로 인한 혼란 속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처럼 타의에 의해 또는 자의에 의해 고국을 떠난 여성들을 요구하고 있다. 값싼 여성 노동력에 기초한 산업부문이 발달하고 성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부문에 투여될 여성들, 빈곤과 성차별, 각종 폭력에 직면한 여성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정책의 모순까지 더해지면서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되고 부패한 관료들의 비호 하에서 성장하게 된다(Manohar 2002; Taylor 2002; Zapata 2002; D’Cunha 2002; Giammarinaro 2002; UNDAW and UNODC 2002).

공급 측과 수요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가난한 지역의 빈곤층 여성들이 대거 보다 부유한 국가로 이동해 성산업이나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000명 이상이 매매되어 성착취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절반가량이 동남아시아에서, 1/4 정도가 중앙 및 동부유럽과 구소련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라티바,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국적자들이 인신매매의 주요 피해자들로 주로 오스트리아, 벨지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소련방의 해체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고통에 직면한 동유럽 출신들이 서부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인신매매되는 경향이 현저하다.

남아시아에서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보내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인도에 남아있기도 하고 일부는 다시 중동지역 및 그 밖의 국가로 보내진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주요 목적지는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과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지이다.

아프리카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서아프리카에서는 내전으로 인한 경제 황폐화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여아를 매매하고, 전투를 목적으로 남아를 매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앙고라, 콩고, 나이지리아에서는 대규모 조직이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남아프리카에서는 예전 노예매매의 변형된 형태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Manohar 2002; Taylor 2002; Shahinian 2002; UNDAW and UNODC 2002).

#### (4) 반-인신매매 전략

이처럼 인신매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진 조직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도 상이하다. 이러한 복잡성과 공간적 광범위함 때문에 인신매매는 국제인권문제 가운데 가장 어렵고 긴급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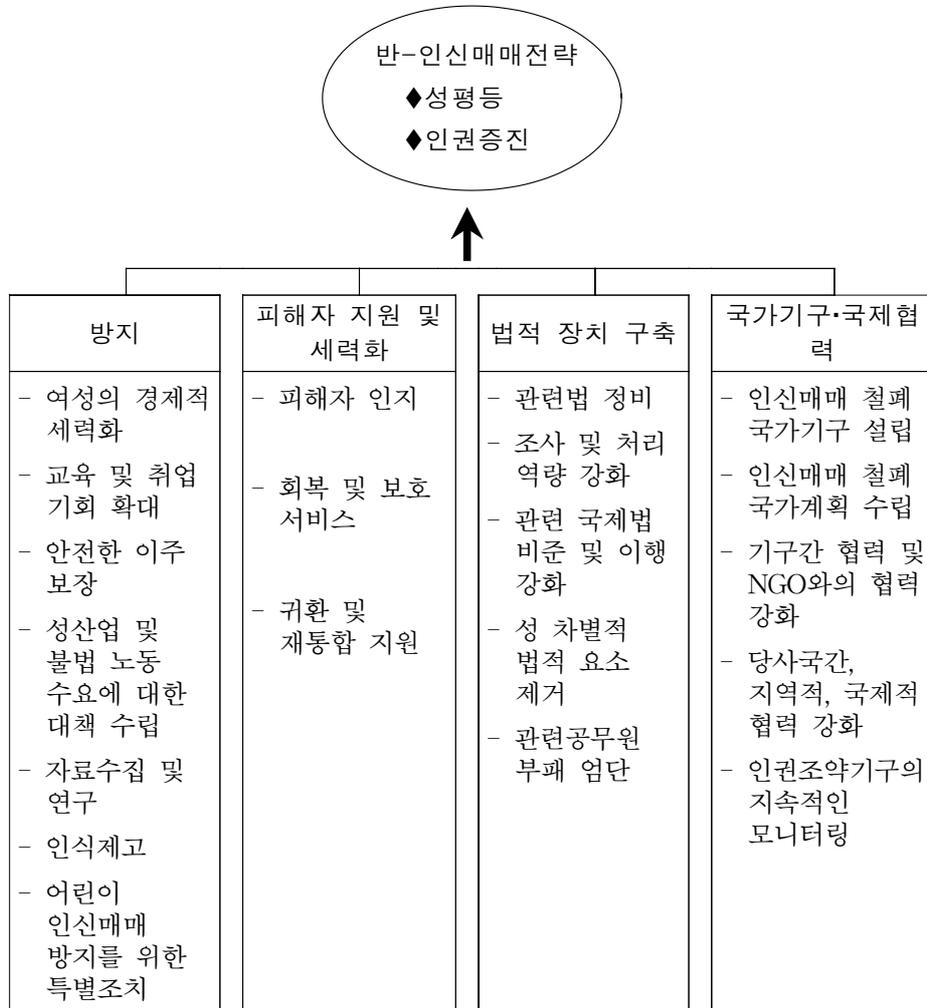
전문가 그룹회의에서는 그 동안 인신매매에 따른 여성인권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신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지 않는 데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원인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인신매매의 사후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즉, 많은 이들을 인신매매로 내모는 경제적 빈곤과 성차별 구조를 문제 삼고 이들의 유입처가 되는 성산업을 뿌리 뽑아야만 인신매매와 성차별, 인권침해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인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에서 인신매매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여성을 인신매매로 내모는 배출요인(push factor)과 이들을 인신매매로 불러들이는 유입요인(pull factor)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인권침해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D'Cunha 2002; Giammarinaro 2002; UNDAW and UNODC 2002).



출처 : UNIFEM and UN Inter-Agency Project on Human Trafficking in the Mekong Region, [Trafficking in Persons: A Gender and Rights Perspective]

이러한 견지에서 전문가 그룹회의에서는 인신매매 방지(prevention)와 피해자 보호(protection), 가해자 처벌(prosecution)을 포괄한 소위 3P전략이라고 할 만한 종합적인 반-인신매매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인신매매를 인권문제인 동시에 성차별 문제, 발전문제로 접근하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인권과 성차별, 발전 논의의 주요의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성인지적 인권 관점에서 인신매매 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보호, 지원하며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후적 조치와 함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인신매매로 내모는 배출요인과 이들을 요구하는 유입요인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림 2> 성인지적 인권접근에 따른 반-인신매매 전략

인신매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빈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취약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회의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며, 인적 자원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남녀 공히 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인신매매의 수요처가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성산업과 불법노동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

다. 또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인신매매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인신매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증진 프로그램도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 당사자를 불법이민, 불법취업자가 아닌 인권침해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귀환 후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도록 촉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범죄 및 인권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관료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며,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는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였다(Manohar 2002; D'Cunha 2002; Giammarinaro 2002; UNDAW and UNODC 2002).

#### 나.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전문가 그룹회의 결과와 유엔차원의 기존 논의를 종합해 여성인권과 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E/CN.6/2003/7). 이 보고서에서는 인신매매가 고수익, 저위험의 성격을 지니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이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그 주요요인으로 인신매매의 현상과 본질, 원인에 대한 시각의 한계와 법·제도적 장치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등을 지적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인신매매에 관련된 각종 요인을 성인지적 인권 관점에 기초해 접근·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자의 인권 측면에서 모든 조치를 고안, 실행하는 방향으로 반-인신매매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지적 인권 접근

성인지적 인권접근은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성에 기초한 폭력, 여성과 어린이의 몸을 상품화하고 수요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구조, 여성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착취하는 문화적 행태와 사회 구조, 여성의 경제적 독립 확보와 재산권, 평등한 사회적 지위의 부정; 빈곤의 여성화와 같이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 반-인신매매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법적 장치의 강화

초국가적 조직범죄 철폐 유엔협약과 이를 보충하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금지,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직범죄 차원에서 조사,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체계의 한계로 인해 인신매매범들은 여전히 고수익, 저위험의 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체포와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개선,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후속 지원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 절차의 한계로 피해자가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등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해 또 다른 인권침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인신매매범의 복수를 우려하여 또는 자신의 불법적 거주 사실 때문에 범죄자를 신고할 경우 곧 바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모든 조치는 인권 기준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피해 여성과 여아를 소외시키거나 낙인찍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명문화된 법체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 없이 추방된 피해자가 다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성인지적 인권관점과 법적 조치 강화,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후속 지원 등의 기본적 방향 하에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여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의안 채택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다. 회의 결과

이상과 같은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1) 패넬토의

회의기간 중인 3월 4일에는 여성의 인권과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를 주제로 한 패넬토의가 열려 가정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반, 인신매매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차별문제이자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라는 점을 재천명하고 이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인신매매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최근 들어 인신매매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신매매 현상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패넬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요인을 지적하였다.

- ▷ 인권 접근 보다 법 집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
- ▷ 인권원칙을 기초로 피해자를 인지,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기제 부재
- ▷ 시민사회의 역할 불충분
- ▷ 총괄적인 정부 구조 미발달

인신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요인을 극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송출국의 빈곤과 정치 불안정, 목적국의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수요 등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여성부 2003;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3).

## (2) 합의결론 채택과정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 의장단에서는 전문가 그룹회의와 사무총장 보고서, 패널토의, 그 외의 유엔논의 등을 기초로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여성인권에 관한 합의결론 초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채택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의장단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국가별, 그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문안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특히, 관습이나 전통, 종교적 행위 등의 형태로 자행되는 폭력과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조항에서 이슬람 국가의 반대가 심했으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남미 카톨릭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심각한 반대가 제기되었다.

결국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위원회에서는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14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합의결론 최종안을 제출하였다.

- ▷ 경제, 사회, 정치적 평등권의 확보와 여성의 세력화를 보장할 것. 특히,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류화 전략을 채택할 것
- ▷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여 철저히 대처할 것. 특히, 관습이나 전통, 종교적 고려를 이유로 폭력 철폐의무를 회피하지 말 것
- ▷ 가족폭력을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 인신매매를 인권침해문제이자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을 총괄한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할 것. 이와 관련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화할 것

- ▷ 빈곤과 저개발, 동등한 기회의 부재와 같이 여성과 어린이를 인신매매로 내모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 ▷ 인신매매의 주요 수요처가 되는 상업적 성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이행할 것
- ▷ 조직범죄망을 철폐할 것
- ▷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권을 보호할 것
- ▷ 재생산권을 기본 인권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재생산권 향유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것

그러나, 회의 마지막 날에도 문안 초안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이에 문안협상을 주재한 부의장은 논란이 된 문안을 북경행동강령과 제23차 특별총회 결과문서 등 기존에 합의된 문서의 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직권결정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도 문안에 대해 이란 등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의장이 채택과 불채택 등 상호 모순적인 직권조정을 반복한 끝에 결국 회의를 종료하고 적절한 시점에 속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모순된 결정을 무효화하고 회의진행과정을 문안제출 직후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최종적으로 제출된 문안에 대한 전원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여성인권과 폭력에 대한 합의 결론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다(여성부 2003).

### Ⅲ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

---

1.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	79
2. 유엔의 여성과 ICT관련 활동	100
3.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와 성 관점 통합 노력	108
4.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131

---

Two decorative horizontal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is thin with a light gray stippled pattern. The bottom bar is thicker with a darker gray stippled pattern.

## 1.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

### 가. 개요

정보는 현대사회를 규정짓는 특징이 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나 정보와 관련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선진산업사회를 후기산업사회로 명명하고 정보와 지식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정보를 후기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추동력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하였다. 그의 관점에 의하면 후기 산업화 정보사회는 (1) 물품경제로부터 서비스 경제로의 이동, (2)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에의 의존증가 - 즉, 연구와 개발로부터 파생되는 지식의 중요성 (3) 컴퓨터 등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Bell 1976; 웹스터 1995, 조동기 역 1997: 63-96).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경제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지식은 정보의 원료가 된다. 즉, 선택과 분석, 가공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이 정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란 정보의 생산·저장·분배에 관련된 산업이나 활동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등장하고, 그 결과 컴퓨터나 통신기술 등을 비롯한 정보기술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의 생활 영역을 지배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강정인 1998: 118).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하부구조는 정보통신기술(ICT)로서 정보의 생산, 분배, 처리, 전환에 쓰이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의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정보사회로의 전환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1950년 초 상업용으로 등장한 이래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 시장에 나타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며 그 후 급속히 확산되어 선진국의 경우 일반화되기 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또한, 1979년 군사통신 시스템으로 구축된 인터넷이 학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월드 와이드 웹’이 일반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990년대 중반 경부터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류적인 견해는 ICT 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 누구나 점차 값싸고 손쉽게 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를 인간개발의 제 부문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통신망을 통한 정보공유와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성장은 지식기반 경제와 사회의 성장과 인류의 진보를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범위는 전자상거래, 금융시장에의 접근, 고용창출, 투자기회 제공,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 사회 제 분야의 참여 증대, 원격 교육 및 의료, 환경관리와 재해방지 감시 등 매우 광범위하다(UN ECOSOC E/CN.6/2003/6: paragraph 9-11).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결은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를 탄생시키며 세계화의 진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대 재집중화(recentralization) -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경제활동의 중심이 민간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확산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세계의 틈새시장에서 경쟁하고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분열(fragmentation) 대 통합(integration) - 국가공동체라는 과거의 전통을 넘어 정치조직, 인종, 이익단체, 성(gender), 사회적 이해 등에 의해서 결합된 온라인 공동체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침묵하고 있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온 라인 상에서 단결력을 확보하여 압력단체로 작용하고 밀접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③ 동질화(homogenization) 대 다양성(diversity) - 세계적 차원의 몇몇 대 규모 거대 기업들이 오락과 방송 산업을 지배하고 있어 전 세계에 전달되는 뉴스와 영화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제한다. 동시에 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감소는 세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가 방송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개발을 위한 거대한 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다 (UNDP 1999: 58).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속화 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밝은 이면에는 국가간·국가내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와 불건전한 콘텐츠,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등 신뢰와 안정성의 문제와 같은 어두운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정보화가 시장경쟁체제에 기초하여 탈규제와 상업화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기술혁신이 가져다 준 기회와 혜택을 일부 국가와 계층에서 독점하는 정보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91%가 OECD 국가의 국민들로 나타나 세계는 결합과 고립이라는 양분된 체계를 드러낸다 (UNDP 1999: 3).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사회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비전과 질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 7월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8개 선진국 정상회의(Okinawa G8 Summit)는 『글로벌 정보사회에 관한 오키나와 헌장(Okinawa Charter on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을 채택, 글로벌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19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 헌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비전과 기회, 참여의 원칙과 파트너십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오키나와 헌장 2000).

1. 정보통신기술(IT)은 21세기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IT는 인간의 생활과 학습, 일하는 양식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혁신적인 효과를 미친다. IT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인, 회사, 공동체 등으로 하여금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도록 한다. 이러한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고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2. 정보사회의 비전은 인간의 잠재력과 역원을 더 잘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창출, 공공복지의 확대, 사회적 결집력의 조성, 민주주의의 강화, 투명성 및 신뢰성 증진, 인권 증진, 문화적 다양성 확대, 세계적 평화와 안정 등을 위해 IT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전략이 요구된다.

3. 여기에는 포함의 원칙, 즉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글로벌 정보사회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 상호관용, 다양성 존중과 같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4. 우리의 리더십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금융적 안정을 보장하며,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네트워크의 통합을 저해하는 남용에 대응하고, 정보격차를 줄이며, 인간에 투자하고, 글로벌 차원의 접근성과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규제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될 것이다.

5.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보와 지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정책협력을 통한 이해 주체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글로벌정보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범죄 없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의 확보와 관련한 것이다. OECD는 2002년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 Towards a Culture of Security)』을 마련하여 국가경제와 국제무역, 사회·문화·정치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프라이버시 보호, 안정성 확보, 이를 위한 이해 주체간의 협력 등에 관해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OECD 2002).

글로벌 정보사회 수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정보통신기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이윤추구 경쟁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공적부문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글

로벌 정보사회의 틀과 질서 등 글로벌 정보사회 체제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10-12일간 스위스 제네바와 2005년 11월 16-18일간 튀니지에서 2단계에 걸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를 개최, 전 세계 국가의 정상들과 각국 정부, 유엔 체제, 국제기구, NGO, 시민단체, 기업 등 모든 이해 주체들이 함께 정보사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 나.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기반 경제의 성장과 인간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혁명의 수혜자와 패자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양극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동등하지 못한 현상을 말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며, 여러 유형의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즉 정보격차의 주체(성별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국가간 등), 정보격차의 대상물(일상생활 정보 격차와 업무관련 정보격차), 심화정도(정보취약, 정보단절, 정보계층화, 정보계급화), 정보격차의 메카니즘(정보접근격차, 정보활용격차, 정보생산격차) 등에 따라 정보격차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조정문 2001: 76).

통신과 정보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정보 불평등의 문제는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적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야기된다. 즉, 정보발달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업 자본주의의 우선순위가 정보영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 정보기술 개발 시 공적 목적보다 사적 목적이 우선시되어 정보의 생산능력, 분배, 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야기된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은 지불능력이기 때문에 정보의 증가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계층에 따라 정보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 영역을 시장 메카니즘에만 맡겨 놓는다면 사회적·공적영역의 점진적 궁핍화를 초래하게 된다(웹스터 1995, 조동기 역: 129-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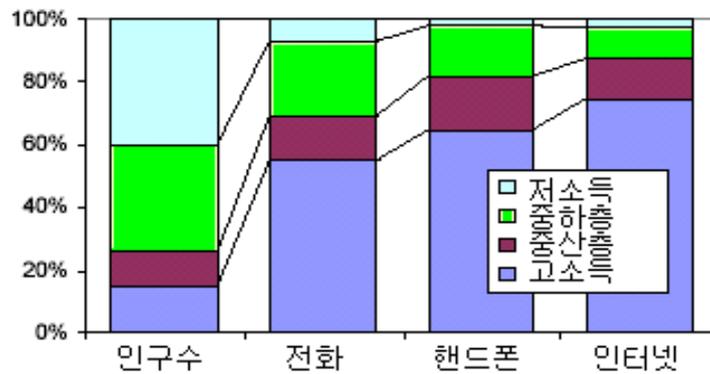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드러나, 유엔개발계획이 1998-1999년에 실시한 국가별 인터넷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UNDP 1999: 62-63),

-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
-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율이 높다.
- 셋째, 남성사용자가 여성사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 넷째, 젊은 층의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 다섯째, 인종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 여섯째, 인터넷 언어의 80% 이상이 영어로 개설되어 있다.

이처럼 통신의 지리적 장벽은 무너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벽이 나타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은 35세 미만의 대학 교육을 받은 고소득자 남성으로서 도시에 거주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UNDP 1999: 63).

국제통신연맹(ITU)에서 발간한 통신개발보고서에서도 경제적 격차가 곧 정보격차임을 인터넷 활용과 경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밝히고 있다 (ITU 2003).

<표 8>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도(2001년)



(ITU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Database:: [www.itu.int/ict](http://www.itu.int/ict))

국가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심하다. 월드 타임즈(World Times)와 IDS (International Data Cooperation)는 1995년부터 정보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 55개국을 대상으로 정보사회지수(Information socie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ISI는 국내 외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국가 시민의 능력을 23개 지표,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세계 150개 국가 중 55개국이 ICT 부문에서 세계지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2%만이 인터넷, 이메일 등에 접근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ISI 지표 구성항목

영역 (4개)	지표 (23개)
컴퓨터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PC 보유</li> <li>▶ 가구당 PC 보유</li> <li>▶ 정부와 상업용 PC 보유</li> <li>▶ 학생당 교육용 PC 보유</li> <li>▶ 네트워크에 연결된 PC 비율</li> <li>▶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지출</li> </ul>
인터넷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규모</li> <li>▶ 가정의 인터넷 이용자 수</li> <li>▶ 업무상 인터넷 이용자 수</li> <li>▶ 교육상 인터넷 이용자 수</li> </ul>
정보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당 전화선</li> <li>▶ 전화연결 불량율</li> <li>▶ 국내전화사용료</li> <li>▶ 1인당 TV 보유</li> <li>▶ 1인당 라디오 보유</li> <li>▶ 1인당 팩스 보유</li> <li>▶ 이동전화 보유</li> <li>▶ 케이블 가입</li> </ul>
사회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학교 등록</li> <li>▶ 대학교 등록</li> <li>▶ 신문 구독자</li> <li>▶ 언론의 자유</li> <li>▶ 시민의 자유</li> </ul>

(World Times and IDC, 2002 Information Society Index)

&lt;표 10&gt; 2002년 국가별 정보사회 순위

순위	국가	컴퓨터	인터넷	정보	사회
1	스웨덴	6	1	8	4
2	노르웨이	7	4	7	1
3	스위스	4	3	11	12
4	미국	1	10	14	17
5	덴마크	13	7	3	10
6	네덜란드	12	12	2	7
7	영국	10	6	5	11
8	핀란드	14	9	6	6
9	오스트레일리아	9	5	22	5
10	타이완	19	14	1	9
11	홍콩	3	16	10	3
12	일본	5	17	12	2
13	싱가포르	8	2	21	33
14	캐나다	2	8	25	18
15	독일	17	11	9	13
16	오스트리아	15	13	13	15
17	뉴질랜드	11	15	20	14
18	한국	22	18	16	8
19	벨기에	20	19	15	16
20	프랑스	16	20	23	20
21	아일랜드	18	21	19	22
22	이스라엘	21	26	4	19
23	이탈리아	24	22	18	29
24	스페인	29	24	17	24
25	그리스	25	23	26	27
26	포르투갈	26	27	24	26
27	아랍에미리트	23	28	28	42
28	체코	32	34	27	21
29	헝가리	30	29	31	25
30	말레이시아	28	25	36	48
32	아르헨티나	31	33	33	31
36	남아프리카공화국	34	30	42	37
44	러시아	45	54	38	46
52	중국	52	51	47	53

(World Times and IDC, 2002 Information Society Index)

55개국의 대부분이 북미, 유럽, 아·태지역의 선진국가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 정보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영역 중 컴퓨터와 이동전화 보유율과 같은 기술관련 변수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반면, 사회 인프라의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 점수가 높은 국가들(루마니아, 필리핀, 일본, 한국, 홍콩, 에쿠아도르, 체코, 불가리아, 태국, 코스타리카 등 10개국)이 가장 빠르게 정보사회로 진전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Gantz 2002).

정보격차나 정보소외는 정보통신기술에의 불평등한 접근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접근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컴퓨터와 기본적인 통신망 등 기술관련 인프라와 고비용의 접속료, 컴퓨터 문맹, 언론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이러한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문제는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경쟁을 넘어 협력의 논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유엔개발계획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성장하는 정보산업에 정보격차의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정보세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능동적 정책(pro-active)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엔디피가 글로벌 정보사회로 가기위해 제시한 일곱 가지 정책영역은 다음과 같다 (UNDP 1999: 64-66).

-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통신망 구축 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민간 영역에 그 역할을 맡기게 되는데, 이때 정책적 개입을 통해 국민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공동체의 이용: 멀티미디어 센터나 통신센터 등을 시골지역이나 빈민 지역에 설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센터로 기능하도록 한다.
- 능력의 신장: 각급 학교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들에게도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의 내용: 지역적 요구에 맞게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지역적 요구를 수용한 웹사이트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제도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창의성: 지역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정된 컴퓨터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 공동협력: 인터넷 도메인 명, 사생활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칙 등 조직적인 관리는 미국, 유럽연합, OECD 국가들에 의해 주로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수립되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중요하므로 인터넷과 통신은 세계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자원: 비트세(bit tax) -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자료의 양에 따라서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통신혁명의 혜택이 세계 각국에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 개발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기술을 인간의 목적에 어떻게 연관짓는가에 따라 기술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를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도구론적 입장, 사회적 결정론적 입장, 자율적 기술론이 그것이다 (Vig 1988, 강정인 재인용: 168). 도구론적 입장은 기술을 일정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간주하며 기술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문제는 기술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두 번째, 사회적 결정론은 기술을 사회·정치·문화적 가치의 표현으로 본다. 즉 기술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입장이다. 사회결정론적 입장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은 그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한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 또는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세력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기술론

에 따르면 기술은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하여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며 권력에의 의지, 절대적 효율성의 추구 및 이윤 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Vig 1988, 강정인 재인용: 163-169).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인간개발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세계화의 중요한 추동력으로서 인류에게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도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빈곤과 소외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세계화의 양면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IC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류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과 세계화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적 차원의 개발정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즉 개발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인 접근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도전인 세계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세계화의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비전이다.

국제사회에서 ICT가 강력한 개발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이 직업기회 창출, 교육·보건·상거래 활동 증진 등 개발을 위한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체제 전환, 인권 등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며 서비스 전달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사회개발의 추동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ICT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과 인류 모두에게 신기술에의 접근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OECD도 밀레니엄 정상회의<sup>11)</sup>에서 채택된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OECD 2002: *How ICTs can help achieve the MDGs*).

11) 2000년에 9월 6-8일간 미국 뉴욕에서 “21세기 유엔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어 빈곤, 개발 분쟁, 환경문제, 유엔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189개국이 ‘밀레니엄 선언’과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였다. MDGs는 빈곤의 근절과 인간존엄의 증진, 평등과 평화, 민주주의,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인류가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1>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ICT의 역할

목표 (Goals)	ICT의 역할
<p><b>목표 1. 극심한 빈곤 및 기아의 근절</b> (1일 수입 1달러 이하 생활자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층 농민과 상인의 시장정보 접근기회 증진 및 거래비용 완화</li> <li>• 개도국 기업의 효율성, 경쟁력, 시장접근기회 증진</li> <li>• 개도국의 세계경제에의 참가 및 비교우위분야 발굴 능력 강화</li> </ul>
<p><b>목표 2. 초등교육의무화 달성</b> (2015년까지 초등교육 전 과정 이수 보장) <b>목표 3. 성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힘의 증진</b>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의 성별 차이를 모든 교육과정에서 2015년까지 근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를 통한 교사공급 증대 및 원격교육</li> <li>• ICT 활용을 통한 교육부의 효율성 향상</li> <li>• 교육자료 및 자원의 활용성 증대</li> <li>• 여성 등 특별대상 그룹에 대한 문해교육 제공</li> <li>• ICT를 통한 일반인의 성평등 의식 확산</li> </ul>
<p><b>목표 4. 아동 사망률의 감소</b>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1990-2015년 까지 2/3로 감소) <b>목표 5. 모성건강 증진</b> <b>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요원의 기초 및 현장훈련 강화</li> <li>• 질병과 기아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향상</li> <li>• 농촌 보건요원에게 원격진단 기회 제공</li> <li>• 출산보건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li> </ul>
<p><b>목표 7 :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b> (환경자원의 보존, 안전한 식수 제공, 위생환경의 개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자원관리 등을 위한 원격감지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활용</li> <li>•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에 대한 인식 및 접근기회 증진</li> <li>• 환경오염 및 환경규정 강제에 관한 투명성과 감시강화</li> <li>• 정책입안자와 운동가 간의 지식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li> </ul>

목표 (Goals)	ICT의 역할
<p><b>목표 8. 발전을 위한 범세계적 파트너십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 제기</li> <li>•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청년층의 생산적 노동 전략 개발 및 이행</li> <li>•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이 부담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 제공</li> <li>•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빈국 등을 세계시장과 연결시켜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li> <li>• 개도국에 ICT를 통한 원격근로 기회 제공:</li> <li>• 데이터 입력,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li> <li>• 지식기반 글로벌 경제에 부합하는 기술 및 취업교육 제공</li> <li>• 온라인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제공</li> <li>• 정보통신기술에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li> <li>• e-learning을 통해 디지털 문해 증진</li> <li>• ICT 인프라 제공 및 유지 기술능력을 지닌 대량의 지식노동자 배출</li> </ul>

국제사회는 최근 ICT를 활용한 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G8 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DOT Force)’와 ‘유엔 ICT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각 국 정부, 민간영역, 비영리 단체들 간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 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DOT Force)

DOT Force는 2000년 7월 G8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오키나와 세계정보현장’에 의거하여 출범하였다. DOT Force는 9개항으로 이루어진 제노아 행동계획(Genora Plan of Action)의 우선순위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수립, 인간능력 개발, 국가 및 지역적 차원의 e-전략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 ■ 유엔 ICT 태스크 포스 (United Nations ICT Task Force)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1년 11월 20일 발족된 'ICT 태스크포스'는 각국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비영리 단체 등을 동등한 회원으로 참여시켜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가 부합되는 가운데 ICT를 개발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각 회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의견 표명과 전문성 제공이라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우선순위와 업무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해 나간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정보통신기술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며 아울러 ICT를 활용해서 개발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야기되는데, 첫째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개발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에의 투자가 기존의 개발을 위한 자원을 가져간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경제·사회개발의 다양한 요소를 인정하고 경제적 안정, 정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법 원칙의 준수, 사회적 인프라, 문자해독 등이 주요 경제·사회개발 목표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이 이러한 요인의 대체물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다만 국가발전전략에 ICT를 통합·활용해서 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고, 효과를 확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han 2003).

### 라. 전략적 파트너십

국제사회는 정보통신기술에의 보편적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공영역과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기구들 간에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략적 파트너십이란 능력과 자원을 모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윈윈상황을 창출하자는 것으로 공동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파트너십의 문제는 1997년에 세계은행과 캐나다 정부가 주최한 ‘글로벌지식 회의(Global Knowledge Conference)’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44개국의 관계자가 참가한 동 회의에서 ‘지식에 관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Knowledge Partnership)’이 탄생하였는데 여기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공, 민간, 비영리 기구 등이 참가하고 있다. GKP가 추구하는 파트너십의 원칙은 가치의 공유, 상호 존중, 투명성과 신뢰이며 이와 함께 각 회원의 정체성과 자율성 유지도 중시한다. GKP의 활동 분야는 ① ICT와 관련한 글로벌 정책수립 시 개발도상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② 지식, 서비스, 자원의 증대 등 회원 서비스 제공; ③ 개발 및 권한강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정보·지식제공 및 지역적 교류 증진 등이다 (GKP Recommendations 2002). 현재 GKP의 의장국은 스위스, 사무국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맡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파트너십의 문제는 오키나와 8개 선진국 정상회의(Okinawa G8 Summit)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8개국 정상들은 정보통신기술이 21세기를 형성하는 잠재력이 가장 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점점 커지는 정보격차가 개발과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오키나와 헌장은 민간부문이 정보와 통신네트워크의 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보사회에 필요한 규제환경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IT 친화적 환경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생산적 이니셔티브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 IT 관련 법규와 시행은 경제적 차원의 혁신적인 변화에 부응해야 하며 효과적인 공·사 부문간의 파트너십, 투명성,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7항)

오키나와 헌장은 정보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칙으로서 정보통신기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시장개방, IT 관련기술에 관한 지적소유권 보호, WTO 체제하에서 자유화 증진을 통한 국가간 전자상거래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정보사회의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화, 세계화의 논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적절한 규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 준 혜택을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차원적 노력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정부와 민간영역의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로서 단지 ICT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에 까지 참여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해당사자간의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교환, ICT 인프라 및 시설의 다양한 활용, 가용 자원의 재설정 등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마. ICT 분야에 성 통합을 위한 논거

### (1) ICT의 젠더 측면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젠더<sup>12)</sup>의 개념이 도입되고 성 관점의 주류화<sup>13)</sup>가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환적 전략으로 유엔에서 공식화됨에 따라 이를 모든 정책 및 사업영역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독 정보통신 관련 논의에서는 젠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 여성기구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Hafkin 2002; Gillian 2002; INSTRAW 2003; UNDAW 2002).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경제성장과 인간개발의 도구로 인식하고, 모든 인류가 이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사회에 남성과 여성이

12)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젠더는 생물학적 성(섹스)에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요인에 의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부여된 것으로서 남녀의 권력 관계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13) 모든 정책과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내포하는 의미와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정책입안, 실시, 모니터링, 평가 등의 통합적 차원에서 성에 의한 불평등이 지속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서,

첫째, 최대 다수의 최대의 선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을 인식해야 하며

둘째, 인권적 차원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통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넷째, 빈곤근절 측면에서 빈곤층의 능력과 선택권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들고 있다 (UNDAW 2002: 19).

이들은 기술을 사회·정치·문화적 가치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결정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이 성 중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서 생산, 활용됨으로써 성에 의한 불평등과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활용, 생산에 있어 남녀 간의 격차는 성에 기반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유발되며, ICT와 관련한 중요 정책의 개발도 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주요 젠더 이슈로는 정보 접근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① 도시 중심으로 구축된 ICT 기반시설, ② 기술을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③ 여성의 높은 문맹률 및 컴맹율, ④ 자원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보활용 및 생산 등 질적인 차원의 정보 격차, 믿을만한 통계 및 지표의 부족<sup>14)</sup>으로 인한 성분석의 어려움, ICT 부문 정책결정 지위에의 낮은 대표성, ICT 산업과 고용분야에의 낮은 참여율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으로 중립적이며 개발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범주와 무관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국제사회의 주류적인 관점과는 대립된다(INSTRAW 2003: 7-10).

14) ICT와 관련된 주요 통계의 수집과 생산은 ITU가 담당하고 있으나, ITU는 아직까지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국가별로 작성되는 ICT 통계도 주로 여성의 인터넷 접속도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ICT가 성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은 ICT의 젠더 측면을 규명하고 권력관계의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개입과 정치적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 유용한 전략이다. 이들의 목표는 디지털 혁명의 부정적 측면인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고, ICT를 실질적 도구로 환원시켜 여성의 권한 증진과 성 평등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성 편견에 의한 불이익이 지속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이해 주체들의 참여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ICT 부문은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영역도 기반 시설부터, 정보기술, 보안문제, 보편적 접근,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적 영역에 이르기 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낸시 하프킨은 ICT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영역을 젠더 측면에서 검토하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Hafkin 2002).

<표 12> ICT 정책이슈의 젠더 측면

ICT 이슈	젠더측면
네트워크 현대화	▶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용을 부담할만한 인프라를 제공하는가?
네트워크 구조	▶ 장비와 서비스 제공자가 다수의 여성에게 효율적인 비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네트워크의 배치	▶ 네트워크 인프라가 ICT에의 보편적 접근성을 중시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 무선장비와 같은 미래 기술개발 시 저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가? ▶ 신기술 도입 시 여성을 훈련에 참여시키는가? ▶ 여성의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인프라	▶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프라를 설치하였는가? ▶ 인프라가 설치되어도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접근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프라 설치 계획 및 도입 시 성에 대해 고려하는가?

ICT 이슈	젠더측면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분야의 연구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장려하는가?</li> <li>▶ 지역 언어, 문맹자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는가?</li> <li>▶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을 위한 장학금과 보조금이 있는가?</li> <li>▶ 여대생과 연구자를 위한 기술지원이 있는가?</li> </ul>
학습·훈련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 기술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는가?</li> <li>▶ ICT 기술 및 관리 프로그램에 여성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li> </ul>
소프트웨어·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 소프트웨어와 리눅스 시스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li> </ul>
기술적 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과 동등한 기술적 능력배양의 기회가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기술전문직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들의 ICT 활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젊은 여성을 위한 역할모델을 개발한다.</li> </ul>
ICT 산업개발과 노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분야의 ICT 산업에 여성의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li> </ul>
ICT 사업개발과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 ICT관련 사업을 장려한다.</li> <li>▶ ICT 관련 사업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한다.</li> </ul>
전자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이 전자정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충분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li> </ul>

ICT의 젠더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는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에서도 주요 관점으로 채택되고 있다.

### (2) 여성의 권한증진 도구로서 ICT의 활용

권한 증진(empowerment)은 자기결정권과 자치권,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사회제도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는 과정이자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sup>15)</sup>, 권한증진 접근법은 1990년대 이래 국제기구를 중

심으로 빈곤퇴치 등을 포함한 개발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 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권한증진 접근법이 확산된 것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부터 이다. 특히, ICT와 관련해서는 200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한 『지식기반 경제의 범주에서 정보기술의 역할에 관한 장관급 선언』 제3장 새천년 선언 (Millennium Declaration(resolution 55/2)에서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증진이 빈곤과 기아,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fifth Session, Supplement No.c3 A/55/3/Rev).

ICT와 여성의 권한증진 문제는 INSTRAW<sup>16)</sup>와 세계개발은행<sup>17)</sup>, 국제전기통신연맹(ITU)<sup>18)</sup>, UNDP, UNIFEM 등에서 다루어져왔으며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주제 선정을 계기로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sup>19)</sup> 국제사회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ICT를 활용한 여성의 권한증진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경제는 산업 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ICT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 ICT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는 ICT 분야에 종사하는 것부터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또한 ICT는 시공간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15) 유엔, 세계개발은행 등에서 내린 개념 정의이다. 『2002 유엔여성발전 주제 및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pp.96-109 참조.

16) INSTRAW(국제여성연구·훈련원)는 젠더와 ICT에 관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6-9월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50개국으로부터 325명이 참가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주제는 ICT와 성 평등의 문제, 사이버 여권운동, 여성의 ICT 관리 및 규제능력 강화, 젠더 격차 등임. 자료는 [www.uninstraw.org/en/research/gender\\_and\\_ict/virtual\\_seminars.html](http://www.uninstraw.org/en/research/gender_and_ict/virtual_seminars.html)에 수록되어 있다.

17) 세계은행은 2000년부터 '젠더와 디지털 격차 연속 세미나'를 개최, 정보통신 정책의 성 주류화, 정보격차 완화, ICT 활용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자료는 <http://www.worldbank.org/gender/digitaldivide>에 수록되어 있다.

18) ITU와 젠더관련 활동은 <http://www.itu.int/ITU-D/gender> 참고.

19)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ICT관련 전문가 그룹회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3장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정보경제에서 여성들 대다수는 정보의 사용자이며 정보생산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대개 자료 입력, 처리와 같은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직, 네트워크 구성 및 유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ICT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일은 정보 처리, 은행 및 보험업무 등이 주종을 이룬다. 웹 개발과 디자인 분야의 참여도 늘고 있다. 그러나 ICT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기업인은 극소수이며, 관리직이나 정책결정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사회로의 진전은 기회와 함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 여성들 역시 정보사회에서 경제적 권한증진과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ICT를 경제적 권한증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시 당면하는 사회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ICT 활용이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ICT를 활용한 여성의 사회적 권한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인권 영역의 활용이며, 둘째는 통신매체 활용을 통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정책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 e-거버넌스: 정부서비스와 정치적 과정 등 공공분야에의 참여의 도구로서 ICT의 활용
- HIV/AIDS 및 보건: ICT를 활용한 문해 교육, 지원체제 수립, 온라인 상담 및 정보확산 등
- 온라인 공간: 인터넷의 민주화 효과로서 여성만의 온라인 공간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대화의 창구로서 활용. 민주 사회 발전, 성자별·억압·착취 극복을 위한 연대활동 공간으로 활용 등

특히 e-거버넌스를 통한 여성의 권한증진은 단순히 정보접근성과 정부의 정책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부정책의 명확성, 투명성, 공개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inez 2002).

여성 권한증진의 도구로서 ICT를 활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술부문: 여성은 높은 문맹율과 정보통신기술 훈련부족, 영어 위주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 여성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개발도상국 ICT 산업분야 근로여성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여건, 포르노그래피 등 ICT 경제의 부정적 이면 등.
- 인프라 접근: 개발도상국, 도시빈민 지역 및 농촌지역의 낮은 인프라 보급율, 고비용의 ICT 이용료 등
- 파트너십: 여성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계, 민간부문, 벤처 자본 등과 새로운 파트너십 개발이 필요함.

## 2. 유엔의 여성과 ICT관련 활동

### 가. 북경 세계여성회의와 신기술 정보네트워크의 부상

유엔의 여성 발전전략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북경 세계 여성회의부터이며, 그 전까지 여성과 정보관련 주제는 미디어 부문에 포함되어 다루어졌다. 따라서 다른 주제에 비해 여성과 ICT 관련 논의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발전에 있어 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은 1975년에 개최된 제1차 유엔 세계여성회의부터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온 의제이다.

1975년 회의에서 채택된『멕시코 세계여성 행동계획』은 대중매체가 대중의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 고정 관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하고 미디어를 여성발전의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함께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중시하였다 (멕시코 세계여성행동계획: 174-181항).

유엔여성10년(1976-1985)의 종료 시점에서 개최된 제 3차 세계여성회의(나이로비, 1985)에서는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여성과 대중매체에 관한 전략을 구체화시켜 ①대중매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②여성들의 대안적 매체개발, ③ 여성들 간의 정보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 206-208항).

미디어 분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신기술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회의이다. 여성회의 역사상 최대의 인원인 40,000여명이 세계 각 국에서 참석한 이 회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회의정보에 대한 확산과 회의조직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로 기록되며 정보기술이 여성지위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UNDAW 1996).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사무국 역할을 담당했던 유엔 여성지위향상국은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회의정보를 확산하고 참가자 등록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한 달간 68개국으로부터 158,722건의 요청이 이루어져 정보통신 매체가 여성의 동원과 정보교환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정부간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 NGO 포럼도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해서 관심분야끼리 소그룹 회의를 조직하고 온라인 토론, 전자회의, 전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이 새로운 대중매체로 부상함에 따라 여성들은 혜택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디어에서 경험해 온 소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새로운 매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북경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각국 정부와 국제적 차원에서 특별히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12개 주요 분야<sup>20)</sup>를 선정하고 각 부문별 현황,

20) 12개 분야는 빈곤, 교육·훈련,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이다.

정책, 주요성과, 향후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분야인 ‘여성과 미디어’에서 정보통신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미디어와 정보통신 분야에 여성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여성발전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미디어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비하여 사이버스페이스의 활용에 있어 여성의 활동적인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즉, 북경행동강령은 최초로 여성들의 ‘권한 증진’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정보통신을 언급하고, 신기술 영역에의 접근기회 증진과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여성의 권한 증진을 위해 필수적임을 명시하였다.

<237> 여성은 IT 기술과 지식, 접근성 향상을 통해 권한이 증진되어야 한다...대다수의 여성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확장일로에 있는 전자정보통신망에 접근성이 부재하며 따라서 대안적인 정보자료를 제공해 줄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신기술의 성장과 그의 영향에 동참하기 위해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북경행동강령 1995).

『북경행동강령』은 이와 관련한 전략목표로서 다음의 2개항을 제시하였다.

- J.1.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신기술에서의 표현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 증진
- J.2. 미디어의 균형적, 비정형적 여성묘사 증진

이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기구,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미디어 시스템, 비정부 기구와 미디어 전문기구 등이 수행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J.1. 전략목표는 전자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신기술을 수단으로 여성들 간의 정보 확산과 교류를 장려하고, IT 활용 기술을 교육시키며, 여성들 간의 정보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 349-245).

그러나 미디어 부문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전략 조치들은 기존의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미디어 부문의 여성의 대표성 부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이

러한 현상은 1995년만 해도 ICT의 활용이 그리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미흡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정보 확산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힘을 인식함에 따라, 이후 유엔 여성지위향상국은 『여성, 정보혁명과 북경회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ICT와 여성발전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여성의 정보통신망 활용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메일 등이 여성의 일상적인 통신활동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부족, 고가의 장비비용, 인터넷 접속비용과 같은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상의 성폭력 등 여성들이 맞닥뜨리게 될 위험요소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ICT관련 의사결정에 참여와 성인지적 정보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DAW 1996).

#### 나. 북경회의 이후의 국제동향

##### (1) 유엔 WomenWatch 웹사이트 개설

북경 세계여성회의가 끝난 다음 해인 1996년 유엔은 북경회의를 통해 확인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효과를 여성발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엔 차원의 여성 사이트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유엔여성지위향상국,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유엔여성훈련연구원(INSTRAW)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동 프로젝트의 결과로 1997년 3월 유엔의 공식 여성사이트로서 WomenWatch (<http://www.un.org/womenwatch>) 가 개설되었다. WomenWatch는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공간의 제공과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WomenWatch의 개설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1996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4차 세계여성회의 후속 조치로서 컴퓨터 네트워킹 테크놀로지를 통한 글로벌 정보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의 권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WomenWatch

의 개선을 위한 사전 논의 과정으로서 마련된 이 회의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44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정보의 이용자와 생산자로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관해 논의하였다. 회의 의제로는 ① 북경회의 결과 이행을 위한 도구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활용 모범사례, ② 접근성, 훈련, 관련 사이트와의 연결성 증진, ③ WomenWatch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UN 기구 및 NGO 간의 협력원리의 개발 등이 다루어졌으며 WomenWatch의 역할로는 중요 정보제공, 여성 조직화 도구로서의 활용, 복지활동의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WomenWatch는 개설된 이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UN의 인터넷 창구로서 북경행동강령에서 수립된 모든 우선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1999년에는 모범사례와 교훈에 관한 온라인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북경 5개년 검토에 통합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운영 주체는 '여성과 성평등에 관한 기구간 네트워크 (Interagency Network on Women and Gender Equality)'가 맡고 있으며, 프로젝트 위원회<sup>21)</sup>가 활동을 감독하고 있다. 파트너로서 UNICEF, ILO, UNESCO, 세계은행, 지속가능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램, UNDP 등이 기여하고 있다.

유엔은 현재 유엔체제 및 국제기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방식을 확대하여 유엔체제 밖의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각국의 여성담당국가기구 및 NGO 사이트와의 연결망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최소한 유엔 공식 언어 등 다중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http://www.un.org/womenwatch/about>).

## (2) 북경행동강령 이행 조사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여성과 미디어'를 특별 주제로 다룬 여성지위위원회 제 40차 회의(1996년 3월)에서 참가자들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여성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확인하고,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여성의

21) 위원은 DPI 젠더 거점기구, FAO, ILO, ITU, 유엔 지역위원회 사무소, UNDP, UNFPA, UNIFEM, INSTRAW, DAW로 구성된다.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보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 1996/2)에는 자문, 규칙제정, 모니터 등 모든 단계의 미디어 관련 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세계적 차원의 통신 네트워크 활동에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며; 정보기술개발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낮출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여성지위향상국은 1998년부터 2000년 초 까지 회원국과 옵저버 국가를 대상으로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40여 개국으로부터 입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검토와 평가 (E/CN.6/2000/PC/2: 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보고서를 작성, 이를 2000년에 개최된 제 44차 여성지위위원회와 제23차 유엔 특별총회에 배경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12개 특별 관심 분야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여성과 미디어’ 분야에서 ICT와 관련한 실태, 장애요인, 향후 전략 등을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 비해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어 1995년 북경회의 이후 급속히 부상한 신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정보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전통적으로 남성주도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역시 IT와 관련한 기술과 지식, 접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온라인 접속자 수가 1995년 810만 명에서 1998년 3,010만, 2000년에는 4,3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고서는 ICT분야의 장애요인으로서 IT 접근성이 도시지역 여성들에게 제한되었다는 점, 여성상 왜곡, 남성중심의 서구문화 지향적 사이버 환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576> 정보혁명으로 인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이며 고정화된 이미지는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와 통신 산업에 여성의 고용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지위나 미디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위원회나 조직에의 참여는 충분치 못하다.

<585> ICT분야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남성위주의 서구문화 지향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언어장벽은 여성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많은 여성들은 기술적인 문맹이다. 농촌여성은 문맹과 빈곤으로 인해 컴퓨터를 접하지 못한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정치와 정부의 의지, 예산 배정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고서는 향후 행동조치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586> 정보정책과 전략개발에 있어 성인지적인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587> 정보의 소비자이자 인터넷 콘텐츠 생산자로서 여성을 인정하고 정보접근과 확산 측면에서 여성을 공공정책의 우선순위에 둔다.

<590> 통신기술 분야의 발전과 자원을 여성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정책과 개인의 태도, 행동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제23차 유엔특별총회

2000년 6월 5일부터 10일 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여성특별총회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래 5년 만에 열린 회의로서 '북경이후 5년(Beijing+5)'으로도 불린다. '여성 2000: 21세기 성 평등, 발전과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를 주제로 한 특별총회의 목적은 북경행동강령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목표를 수립하는데 있다.

세계 180개국에서 정부대표와 비정부 읍저버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과 『결과문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추가행동 및 조치(Outcome Document: Further Actions and Initiatives to Implement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를 채택하였다. 결과문서(A/RES/S-23/3)는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관심분야별 이행성과와 장애요인, 전반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과제, 그리고 북경행동강령 이행의 가속화 및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행동과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총에서 논의된 ICT관련 성과로는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활성화, 미디어 조직에의 여성참여 증가, 성 정체적·남녀차별적 묘사를 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들고 있다.

<28> 성과: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미디어 네트워크가 수립되어 글로벌 차원의 정보 확산과 여성들 간의 의견교환, 미디어 분야 여성단체 간의 활동지원에 기여하였다. ICT, 특히 인터넷의 발전은 여성의 힘을 증진을 위한 향상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져다주었으며 더 많은 여성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성 미디어 기관과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미디어에 있어 여성의 긍정적 묘사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자발적 규칙이 제정되어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공정한 묘사와 비 성차별적 언어 활용에 진전이 이루어졌다.

장애요인으로는 통신기술을 통한 여성상의 훼손 증가, 정보격차 등이 지적되고 있다.

<29> 장애요인: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정적, 폭력적이며 여성상을 훼손시키는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 등이 증가하고 있다. 빈곤, ICT에의 미비한 접근성, 문맹, 컴맹, 언어적 장애요인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ICT 기술을 활용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이 개발도상국, 특히 여성들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특층에서는 미디어 분야의 향후 전략으로서,

- 남녀동등한 ICT 접근기회 제공
-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글로벌 차원에서 여성의 경험교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특별관심 분야와 비교해 볼 때 ICT는 미디어 부분의 일부로 여전히 미흡하게 다루어졌다.

### 3.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와 성 관점 통합 노력

#### 가. WSIS 회의

##### (1) 개최 배경 및 목적

2003년 12월 10-12일간 스위스 제네바와 2005년 11월 16-18일간 튀니지에서 2단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는 전 세계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정보사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WSIS 회의의 필요성은 199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sup>22)</sup> 전권위원회(Plenipotentiary Conference)에서 제기되었으며, 2001년 ITU 이사회에서 2단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유엔 총회는 정상회의의 개최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유엔 결의안(Resolution 56/183)에 명시된 회의의 개최 목적은 정부·비정부·시민사회가 글로벌정보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며, 정보사회의 효율적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아울러 동 회의는 밀레니엄개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ICT 활용상의 신뢰와 안전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회의의 준비와 조직은 ITU가 주도하며, 개방적 형태의 정부간 준비위원회(PrepCom)를 개최함으로써 각국 정부, 유엔 관련기구, 정부간 기구, 국제 및 지역 기구, 시민사회,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정상회의의 의제 선정 및 선언문과 행동계획 초안 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

22) ITU는 1865년 설립되어 현재 유엔의 특별기구로 있으며 무선통신, 표준화 및 ICT 개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189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업계·학계·국가 및 지역, 국제기구를 포함 600여 부문별 회원이 참가하고 있다.

(2) 참여 주체

WSIS의 참여 주체는 정부와 민간부문, 시민사회, 유엔 기구들로서 이들의 각기 다른 이해를 반영한 가운데 정보사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각 참여 주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보면,

첫째, 각국 정부는 국가의 소득수준이나 인프라 현황에 관계없이 정보사회의 진전과 깊은 이해관계를 지닌다. 즉,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개발과 글로벌 정보사회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경제성장 측면에서 ICT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민간영역은 세계적 의제와 관련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부문은 정보와 부가가치적인 ICT 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물적 여건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새로운 파트너십,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식증진, 지역별 콘텐츠 개발과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는 현재의 정보화가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모든 차원에서 취해진 전략적 선택에 대해 민주적 신뢰성 도입의 필요성에 한 관심을 끌어내는 등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다양하며 실제적인 접근법은 국제적인 파트너십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유엔기구는 국가정부, 민간부문,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등 변화의 촉매자로서 역할한다. 유엔체제와 특별기구들은 ITU의 주도적 역할 하에 정상회의의 조직과 개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3) 준비 과정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ITU 내에 고위급 정상회의준비위원회(HLSOC)가 유엔 사무총장의 후원 하에 결성되어 FAO, IAEA, ILO, ITU, UNCTAD, UNDP, UNEP, UNESCO, UNIDO, WHO 등 많은 유엔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구간 의견조정 및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 WSIS 사무국 역시 ITU 본부 내에 설립되어 실질적 차원의 회의 조직 업무를 담당한다.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WSIS는 전 세계의 이해 주체들이 참가하는 방대한 규모의 회의로서 의사규칙과 다루어질 의제, 선언문 및 행동계획 초안 작성 등을 위한 준비회의가 수년간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의견공유와 이해반영,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고 있다.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1단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준비회의(Preparation Committee: PrepCom)와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었다.

<표 13> WSIS 준비회의 및 비공식회의

분 류		일 정/개최지	주요사항
준비회의 PrepCom	1차	2002. 7. 1~5 스위스 제네바	의사규정(rules of procedure)에 관해 결정함.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자격·범위와 관련하여 ITU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기업, NGO 등 민간기구의 경우 자동적으로 옵저버의 자격으로 WSIS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민간부문의 경우 참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2차	2003.2.17~28 스위스 제네바	5개 지역회의 보고서 청취 및 WSIS 선언(Declaration)과 행동계획(Action Plan) 작성
	3차	2003. 9.15~26 스위스 제네바/ 2003 11.10~14	WSIS 선언과 행동계획 수정 작성 및 의사규정 확정 (9월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여 11월에 속개되었음)
비공식회의		'02.9.16~18 스위스 제네바	WSIS의 원칙과 지침의 초안 작성
WSIS 세션간 회의		'03.7.15~18 프랑스 파리	WSIS 원칙선언 초안(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수정 및 특별행동 예시

또한 세계 각 지역별로 특별한 관심분야와 요구, 우선순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정상회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준비회의가 2003년 2월 제 2차 준비회의 전에 지역별로 개최되었다.

<표 14> WSIS 지역회의

분 류	일 정/개최지	주요사항
아프리카	2002.5.28~ 30 말리 바마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마코 선언(Bamako 2002 Declaration) 채택, 글로벌 정보사회의 발전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최빈국의 이해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함.</li> <li>▪ 준비회의 기간 중 14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그중 '젠더와 ICT' 관련 주제가 포함됨.</li> </ul>
범유럽	2002.11.7-9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카레스트 선언(Bucharest Declaration) 채택</li> <li>▪ 표현과 정보교류의 자유, 보편적 접근, 문화적 다양성 증진, 인간개발, 환경조성, 신뢰와 안정성, 글로벌 이슈에 관한 국제적 협력 등 정보사회의 비전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함.</li> </ul>
아시아·태평양	2003.1.13-15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선언(Tokyo Declaration) 채택</li> <li>▪ 정보사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활동분야(인프라 개발, 인력개발, 공공·민간부문의 협력, 정책기반 수립, 정보보호 보장,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권역 e-전략 수립)를 선정함.</li> <li>▪ 본회의 개최 전에 '젠더 포럼'을 개최,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토론하고 그 결과를 지역회의와 WSIS 관련 기관에 배포함.</li> </ul>
라틴아메리카/카리브	2003.1.27-30 도미니카 바바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바로 선언 발표, 12개 주요 원칙 공표</li> </ul>
서아시아	2003.2.4.-6 레바논베이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루트 선언 채택</li> </ul>
비슈켓·모스코바 지역회의	2002.9.9-11/ 10.2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사회에 대한 비슈켓·모스크바 지역회의 결의안 채택</li> </ul>

그 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각 국의 정보사회로의 진전 단계가 상이함에 따라 정보사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ICT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 선진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등의 이슈와 표준마련 등 제도와 규범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중시하고 있다.

국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심영역도 달라 국가 정부는 ICT의 활용, ICT 인프라의 확충 등 물질적 기반 구축에 주요성을 두고 있는데 비해 시민사회는 인권적 측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 지역적 콘텐츠 및 지역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등을 중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 나. WSIS 에의 성 통합을 위한 노력

##### (1) 배경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와 회의 결과로서 채택될 예정인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따라 ICT와 관련한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정책과 국제관계 및 협력체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성의 관점을 정책협상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목적은 정상회의를 젠더와 ICT 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져 아프리카 지역 회의 중 ECA와 UNIFEM이 공동으로 개최한 ‘젠더와 ICT’ 워크숍을 통해 ‘WSIS 젠더 코커스’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태 지역의 경우 지역적 차원의 준비 역할은 ISIS(Isis International-Manila)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관련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sup>23)</sup>

국제적 차원에서 WSIS 과정에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 단체는 다자의 이해 주체들이 참여하는 ‘WSIS 젠더 코커스(WSIS

23) Asian Social Forum, Global Community Networking Conference, 동경에서 개최된 젠더 포럼 등이 개최되었으며, 아·태지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로는 제 4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전문가 그룹회의(서울)와 ‘ICT와 젠더에 관한 포럼(말레이시아)’가 있다.

Gender Caucus)’와 비정부 주체들의 모임인 ‘NGO 젠더전략 실무그룹(NGO Gender Strategies Working Group)’이 있으며 이 두 단체는 결성배경이 다르지만 WSIS 관련 주요회의에 참가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연대한다. 이외에도 국제통신연맹에서 주도하는 ‘젠더 이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Gender Issues, WGGI)’과 GKP(Global Knowledge Partnership)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주요 활동기구

### (가) WSIS 젠더 코커스(WSIS Gender Caucus)

젠더 코커스는 2002년 말리의 바마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지역 준비회의에서 조직되었으며 국가 정부,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유엔체제 등 다자가 참여하고 있다. 코커스의 목적은 정상회의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여 WSIS가 추구하는 목표에 성 평등 목표를 포함시키는데 있다. 성 평등 이슈가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개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성 평등과 성 관점 통합을 통해 세계정보사회는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젠더 코커스는 정상회의의 기획, 준비과정 및 회의 개최, 후속프로그램에 ① 정책결정자로서 여성 포함, ② 국가, 시민사회, 업계의 대표로서 여성이 최소한 30%참석, ③ ICT 관련 사업 수립 시 농촌여성 등 취약층 여성들의 요구 고려, ④ 성별 통계를 작성하고 보고기제를 개발하여 ICT의 발전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⑤ 성 평등과 ICT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 이를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할 것 등을 이해 주체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http://www.genderwsis.org>)

또한 젠더 코커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WSIS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nationalprogrammes@genderwsis.org](mailto:nationalprogrammes@genderwsis.org)).

- 오스트리아: 외무부 등이 공식국가 준비 기구를 이끌고 있으며 2002년 11월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페미니스트 발전기관이 정보와 여성의 권

한증진에 관한 잡지를 발간하고 비엔나에서 2003년 6월과 10월 회의를 개최하였다.

- 캐나다: 유네스코 캐나다위원회가 준비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캐나다 대표단은 제2차 준비회의에서 인권적 접근법을 주장,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민간부분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여성, 청소년, 원주민,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기술연구부에서 준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개발부가 준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 대통령 산하 여성지위사무국이 WSIS 준비 과정에 젠더 포 함을 위한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기술개발 기회 확대, 관련 콘텐츠 개발, ICT 및 미디어 상의 여성에 관한 폭력 철폐, 여성 과 ICT 부문간의 네트워크 증진, 여성의 경제력 증진을 위한 ICT 접근 기회 증진, ICT 정책과 사업의 중심에 성인지적 인간개발 프로그램 배치 등을 행동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여성단체 대표들이 WSIS 준비위원회 에 참여하고 있다.
- 우간다: 우간다여성네트워크(WOUGNET)에서 우간다의 WSIS 준비상 황에 관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영국: 영국문화원 주최로 2003년 5월 국가적 차원의 공식회의가 제 3차 준비회의에 영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젠더부 문은 영국문화원과 젠더 코커스, NGO 실무위원회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 다.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모든 이해 주체 그룹에 젠더 대표성 확보, 모 든 의제에 젠더 이슈 포함, 소외집단의 의견제시 도구로서 ICT의 활용 등이다. 외무부가 산업통산부 산하 여성평등국(Women Equality Unit)과 함께 젠더 접근법을 국가 대표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 NGO 젠더전략 실무그룹(NGO Gender Strategies Working Group, 이하 GSWG)

NGO 젠더 전략실무그룹은 제네바에서 2002년 7월 개최된 제 1차 WSIS 준 비회의 기간 중에 시민사회조정그룹(Civil Society Coordinating Group) 소위원

회의 하나로 구성되었으며 NGO 단체<sup>24)</sup>들이 참여하고 있다. GSWG는 모든 NGO와 개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목적 및 활동으로는 ① WSIS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공유와 토론공간 제공, ② 여성의 로비활동 개발, ③ 시민사회단체 활동 및 정부·정부간 과정에 NGO 여성의 참여보장, ④ 젠더와 ICT 회의에 여성 참여 조직 및 전략계획 수립 등이 있다(<http://www.genderit.org>).

(다) 젠더이슈에 관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on Gender Issues, 이하 TFGI)

국제정보통신연맹(ITU)은 1998년 말타에서 열린 '세계통신개발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채택한 '결의안 7'항에 따라 '젠더이슈에 관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on Gender Issues, 이하 TFGI)를 통신개발국(ITU-D) 산하에 설치하고 ICT 정책 및 활동에의 성 주류화 등을 통해 정보사회의 혜택을 남성과 여성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ITU의 사업영역 뿐만 아니라 ITU 회원국과 유엔 체제의 ICT 관련 활동에 성 평등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TFGI는 농촌지역여성을 위한 텔레센터 설치지원, 젠더 워크숍 개최, 정보통신정책에 성 관점 통합을 위한 정책입안자 훈련 프로그램 지원, 연구 등을 주요활동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TFGI는『정책입안 및 규제 기구를 위한 성인지적 가이드라인(Gender-Aware Guidelines for Policy-Making and Regulatory Agencies)』을 마련하고 각 국에서 ICT 관련 정책입안시 성 관점의 통합을 위해 참고로 삼기를 권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기구나 정부 부처 내에 젠더부서(Gender Unit) 설치, 정책과정의 일부로서 성 분석 포함, 성별분리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남녀 동등한 고용기회 및 훈련기회 제공, 여성의 기술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 마련,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되어 있다.<sup>25)</sup>

24) '아프리카 여성개발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FEMNET)', 진보커뮤니케이션 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 ISIS-international, 남아프리카 Women's Net, 라틴 아메리카 뉴스 에이전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라) 젠더 이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Gender Issues, WGGI)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를 앞두고 ITU는 TFGI를 통신개발국 산하 상설 실무그룹(WGGI)으로 전환하고 2002년 6월 12-14일 제 1차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03년 7월 7-9일간 제 2차 회의를 가졌다.

제 1차 회의에서는 6개의 실무위원회<sup>26)</sup>를 설립, 위원회 별로 회원들을 임명하고 수행해야 할 활동 등에 관해 제안하였다. 아울러 WSIS 준비회의 및 정상회의에 여성문제를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WGGI/WSIS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ICT 부분의 성별 분리통계를 개발, 남녀간의 정보격차를 구체화하며 이를 위해 정부, NGO, 민간 부문, 학계 등이 협력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ITU: Final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Gender Issues, 2002년 6월 16일).

제 2차 WGGI 회의는 2003년 7월 7-9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48개국의 국가·민간·기업대표와 16개 국제기구 대표 등 120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부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마) ICT와 젠더에 관한 포럼(Forum on ICT and Gender)

말레이시아 정부 주최로 쿠알라룸푸르에서 2003년 8월 20-23일간 개최된 동회의에는 아태텔레코뮤니티(PTA),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APWINC), GKP, 세계개발연구센터(IDRC), ITU, UNESCAP, UNESCO 등이 파트너로 참가하였다. 동회의의 목적은 유엔의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젠더 측면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WSIS회의 과정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시키는데 있다.

회의에서는 ICT 활용시 안정성, 교육, 중소기업, 농촌 및 소외집단 등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WSIS에 참가하는 정부 대표들이 이를 WSIS '원칙선

25) 자세한 내용은 <http://www.itu.int/ITU-D/gender/pdf/GenderAwareness-Guidelines-E.pdf> 참조

26) 제1위원회: 규제개혁, 제 2위원회: 기술 및 통신/ICT 네트워크 개발, 제 3위원회: e-전략 및 e-서비스/응용, 제 4위원회: 가격 및 관세를 포함한 통신 경제·재정, 제 5위원회: 인간능력 함양, 제 6위원회: 파트너십/정보확산 및 커뮤니케이션.

언'과 '행동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www.globalknowledge.org/gender> 2003).

- ICT 활용에 있어 안전성: 사이버 범죄 방지 등 여성의 안정성 문제에 관한 인식 제고 및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ISP 기준 마련, 범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준수 등
- 교육: 교육부문을 포함한 국가 ICT 정책에 성 관점 포함, 소외집단 대상 ICT활용 능력 교육, 여성단체의 ICT 활용능력 배양, ICT활용 교육 확산, 예산배정 등
- 중소기업: 여성 ICT관련 기업 지원, 여성창업 관련 교육 및 창업 지원, 이해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개발을 통해 ICT 관련 중소기업 활동 개발, 남남간의 협력 등
- 농촌 및 소외그룹: 도시 영세민 및 농촌여성의 요구에 맞춘 ICT 활용방안 개발, 공공기관을 통한 저비용의 활용, 여성에게 적합한 콘텐츠 제공 등

(3) WSIS 의제에 성 통합요구 내용

북경행동강령에 제시된 12개 우선 주제와 관련하여 WSIS에 성 통합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WTC 2003: 3-14).

<표 15> WSIS에의 통합 요구항목

12개 우선주제의 목표	WSIS에의 통합요구 항목
<b>A. 여성과 빈곤</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빈곤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의 개발</li> <li>2. 경제적 자원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실질적 변화</li> <li>3. 저축과 대출에서의 동등한 접근기회 제공</li> <li>4. 성에 근거한 방법론 개발 및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수행</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와 사회정의에 기반한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인간중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행위자이자 수혜자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요구됨.</li> <li>▪ ICT와 인터넷을 사회개발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은 널리 확산된 인식으로서, 평등한 사회개발의 매체로서 ICT의 활용이 점진적인 상업화로 인해 손상되고 있음.</li> <li>▪ ICT 자체로는 성 평등과 빈곤근절을 가져올 수 없으나, 사회적 행동과 적극적 사회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함.</li> <li>▪ 여성들의 네트워크와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통적 통신수단 및 ICT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함.</li> </ul>
<b>B. 여성과 교육·훈련</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li> <li>2. 여성의 문맹퇴치</li> <li>3. 직업훈련, 과학기술분야 및 평생교육에서의 접근기회 향상</li> <li>4. 성 평등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li> <li>5. 교육개혁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제공</li> <li>6. 평생교육 및 훈련강화</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차원의 공식·비공식 차원의 훈련 과정에 성 평등, 미디어와 정보 문해 및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ICT 교육을 통합함.</li> <li>▪ 실업전문대학에서 여성의 ICT 기술강화를 위한 교수인력 등을 포함한 자원을 제공함.</li> <li>▪ 생애교육 증진을 위한 ICT 도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함.</li> <li>▪ 공식·비공식 교육프로그램에 ICT 기술 교육을 포함함.</li> <li>▪ 아동, 부모, 교사에게 원격교육, 온라인 강의서 등을 포함한 적합한 ICT 활용교육을 제공함.</li> </ul>

12개 우선주제의 목표	WSIS에의 통합요구 항목
<b>C. 여성과 보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생애주기를 통해 감당이 가능한 양질의 보건의료 및 정보 서비스 등 제공</li> <li>2.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강화</li> <li>3. 성병, HIV/AIDS, 성 및 생식건강 문제에 관한 성인지적 조치 수립</li> <li>4.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 촉진 및 정보 확산</li> <li>5. 여성건강관련 자원 증대 및 후속조치 모니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및 생식보건문제와 성병, HIV/AIDS에 관한 교육, 정보 등 여성의 건강 증진에 방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정보접근 및 확산에 ICT를 활용함.</li> <li>▪ 취약여성(빈곤, 질병, 농민, 노인, 장애, 실직)이 당면한 ICT 정보, 교육·훈련에의 장애요인을 제거함.</li> <li>▪ 여성의 건강권을 방어하기 위한 여성의 네트워크 및 공동체 기반 활동강화를 위해 ICT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함.</li> </ul>
<b>D. 여성과 폭력</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li> <li>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효과적인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li> <li>3. 인신매매 근절과 매춘·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여성 지원</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에 기반한 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배포 및 활동의 효과적 도구로서 ICT 활용을 증진함.</li> <li>▪ 온라인 성 착취와 성폭력 방지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함.</li> <li>▪ 여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여성이슈를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지원함.</li> <li>▪ 라디오, 비디오, 전화, 팩스 등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보완적 역할을 증진시킴.</li> </ul>
<b>E. 여성과 무력분쟁</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력분쟁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 증진 및 무력갈등, 점령지역의 여성보호</li> <li>2. 군비축소 및 무장가능성 통제</li> <li>3. 비폭력적 형태의 갈등해결 증진 및 분쟁상황 시 인권남용 감소</li> <li>4. 평화문화 개발에의 여성의 기여 촉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WSIS 의제는 평화·안보와 정보사회의 역할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li> <li>▪ ICT와 미디어를 통한 평화의 확산과 전쟁의 방지 언급 요구함.</li> </ul>

12개 우선주제의 목표	WSIS에의 통합요구 항목
<b>F. 여성과 경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증진</li> <li>2. 자원, 고용, 시장 및 무역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기회 제공</li> <li>3. 저소득층 여성에게 사업서비스, 훈련, 시장 및 ICT에의 접근기회 제공</li> <li>4.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상업적 연대망 강화</li> <li>5. 직공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 금지</li> <li>6. 남성과 여성을 위한 직장과 가정 책임간의 조화 촉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기반 경제에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배정함.</li> <li>▪ ICT 관련 하위 기술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실시함.</li> <li>▪ 성차별 시정과 성인지적 고용정책을 통해 ICT 사업에의 여성참여를 고무시킴.</li> <li>▪ ICT 관련 사업 경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 체제를 확대함.</li> </ul>
<b>G. 여성과 정책결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권력구조와 의사결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 보장</li> <li>2. 정책결정 및 리더십에 여성의 참여능력 증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WSIS 선언문&gt; 여성의 권한증진과 정책결정 과정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의 동등한 참여가 평등, 발전,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함.</li> <li>▪ &lt;WSIS 행동계획&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부문의 ICT 관련 정책 및 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li> <li>- 정상회의의 계획 및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함.</li> <li>- 국가 대표단, 시민사회·기업 등의 대표에 여성 30% 참여를 보장함.</li> </ul> </li> </ul>
<b>H. 제도적 장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구 설립 및 강화</li> <li>2. 법,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관점 통합</li> <li>3. 기획 및 평가목적을 위한 성별 자료의 수집, 편저, 배포</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담당국가기구의 예산확대, 기술전문가 확충 등을 통해 ICT 관련 정책수립 능력과 타 정부부처와의 협력활동을 촉진함.</li> <li>▪ 성분리 통계 작성 및 ICT의 접근, 활용, 영향에 관한 성인지적 지표를 개발함.</li> <li>▪ 성인지적 e-거버넌스 계획 수립 및 실시.</li> <li>▪ 민간 및 공공영역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통신 네트워크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함.</li> <li>▪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여성과 젠더 이슈에 관한 콘텐츠 포함 및 국가여성기구의 독자적 웹사이트를 운영함.</li> </ul>

12개 우선주제의 목표	WSIS에의 통합요구 항목
<b>I. 인권</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포함한 모든 인권문서의 이행을 통한 여성이 권의 증진 및 보호</li> <li>2. 법률과 관습상의 차별철폐 및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li> <li>3. 법률 문해 달성</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상의 성 착취, 성폭력 등에 대응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함.</li> <li>▪ 온라인상에 여성의 폭력 철폐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촉구함.</li> <li>▪ 콘텐츠 생산 및 활용 시 인권기준을 감시함.</li> <li>▪ ICT 분야의 성 평등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 기제를 개발함.</li> </ul>
<b>J. 여성과 미디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와 신 통신기술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 증진</li> <li>2. 미디어에 여성의 균형적, 비정형적 묘사 보장</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의 자유와 함께 여성의 균형적이며 다양한 묘사를 위한 규제기제를 마련함.</li> <li>▪ 인터넷 접근비용 감소,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함.</li> <li>▪ 여성단체의 ICT 활용을 지원함.</li> <li>▪ 미디어 분야 여성훈련 지원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시킴.</li> </ul>
<b>K. 여성과 환경</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수준의 환경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li> <li>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심사와 관점 포함</li> <li>3.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수립 및 강화</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부문만을 통해서서는 성취될 수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과 젠더 정의에 기반한 평등한 정보사회를 수립함.</li> <li>▪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사회개발·환경 보호·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빈곤근절.</li> <li>▪ 개발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ICT를 도구로 활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li> </ul>
<b>L. 여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li> <li>2.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습 종식</li> <li>3. 여아의 권한 증진</li> <li>4. 교육, 기술개발 및 훈련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 여성의 권한증진 내용을 포함함.</li> <li>▪ 과학기술 분야의 초기 개입정책 개발을 통해 여성의 ICT 관련 직업 활동을 증진 시킴.</li> <li>▪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국제적 차원의 e-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li> <li>▪ 정보통신 관련 교육기회를 여성에게 동등하게 주기위해 일정기간 적극적 조치를 시행함.</li> </ul>

#### 다. WSIS 의제 및 성 관점 반영

WSIS 의제에 대한 논의는 2002년 9월 16일부터 18일 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원칙과 주제에 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져 여기서 기본적인 틀이 작성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2003년간 개최된 준비회의와 세션간 회의, 지역회의, NGO 회의, 국가별 회의 및 기타 전문분야 회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9월에 개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여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속개된 3차 준비회의 결과까지 반영하여 작성된 『원칙선언 초안(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Document WSIS/PC-3/CT/6/Rev 1-E, 2003년 11월 14일자)』과 『행동계획 초안(Draft Plan of Action: Document WSIS/PC-3/DT/5(Rev.1)-E, 2003년 11월 14일자)』을 중심으로 의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성 관점 반영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원칙선언 - 정보사회의 구축: 새천년의 세계적 도전

원칙선언초안은 '정보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 '모든 인류를 위한 정보사회의 주요원칙,' '지식공유에 기반을 둔 정보사회를 향하여'등 3개 분야의 총 64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A. 정보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

1. 인간중심적, 포괄적, 개발지향적 정보사회를 수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의 창출, 접근, 활용,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전제로 개개인과 공동체, 국민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ICT를 밀레니엄목표, 즉 절대빈곤의 퇴치,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증진, 유아사망을 감소, 모성건강 증진, HIV/AIDS·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글로벌 파트너십의 개발** 증진에 활용한다.

3.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민주사회 및 곳 거버넌스, 국가적·국제적 법률 체제,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다.
4.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5. 세계인권선언 29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적 복지를 위해 법이 규정하는 제한을 받는다.
6. 과학이 정보사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많은 성과는 과학기술발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한 결과임을 인식한다.
7. ICT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8. ICT 혁명의 혜택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회계층 간에 불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모든 사람을 위한 디지털 기회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다.
9. 정보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은 우리 자신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청소년이 장래의 인력이자 ICT 부문의 주도적 창조자이며 활용자임을 인식하여 이들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한다.
10. ICT의 발전은 여성에게 지대한 기회를 제공함을 확신하며 여성들은 정보사회의 완전한 일원이자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사회가 여성의 권한증진, 사회 계 영역 및 정책결정 과정에의 평등하고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공언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성 평등 관점을 주류화하고 ICT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해야한다

- 11-13. 정보사회 수립에 있어 소외된 취약집단(이주자, 난민, 실업자, 소수민족, 노인, 장애인 등)과 빈곤계층(도시 및 농촌 지역), 원주민 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14.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등의 특수한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15. 포괄적 정보사회의 수립은 정부간 및 이해 당사자, 즉 민간, 시민, 국제기구간의 새로운 형태의 결속과 파트너십,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평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 주체들의 강력한 공약, 즉 디지털 결속을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필요로 한다.

#### B. 모든 인류를 위한 정보사회의 주요원칙

인류를 위한 정보사회 수립의 핵심원칙이 11개 분야에서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와 모든 이해 주체들의 역할:

17.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는 정보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간중심적인 정보사회의 수립을 위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연대 노력이 필요하다.

##### 2) 정보통신 기반구조: 포괄적 정보사회의 필수 기반

- 18-20. ① 연결성은 정보사회 구축의 핵심적 요건으로서 ICT 인프라 및 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 ②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손쉬운 접근, 적절한 가격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③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창출을 위한 정책마련 ④ 취약지역에 ICT 공공활용기관 마련 등을 통해 정보사회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정보지식에의 접근

- 21-25. ①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지식에의 접근 및 기여능력 부여 ② 정보접

근에의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개발지식 공유 및 강화 ③ 공공 도메인을 통한 풍부한 정보 제공과 무료 접근기회 제공 ④ 과학적 지식 및 과학기술 정보의 창출, 확산을 위한 동등한 기회와 보편적 접근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4) 능력배양

26. 누구나 정보사회와 지식경제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문해와 보편적 초등교육은 포괄적 정보사회 수립의 중요 요소로서, 특히 여성의 특별한 요구에 관심에 기울여야 한다.**

27-31. ①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훈련,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ICT의 활용 ② ICT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적 직업 분야 및 자영업, 신직종 등에 관한 성인교육, 재훈련 등의 필요성 ③ 국가의 ICT 연구개발 역량 향상 및 국가간,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ICT 관련 부문 파트너십 등이 중요하다.

#### 5) ICT 활용상의 신뢰 및 보안 구축

32-34. ① 인증,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신뢰 체제 강화 및 글로벌 사이버 안전문화 증진 ② 범죄 및 테러 목적에 정보자원과 기술 사용의 방지 ③ 스캠과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대처 등이 필요하다.

#### 6) 가능한 환경조성

35-47. ① 국가별 실태를 감안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및 법규 마련 ② 시장실패의 극복과 공정한 경쟁, 투자유치, ICT 인프라 개발 및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

③ 지적소유권 보호의 중요성 ④ 국가적·지역적 개발전략에 ICT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⑤ 국제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가 세계적으로 범용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⑥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ICT 작업환경 마련 ⑦ 인터넷의 국제적 관리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개입 하에 다면적, 투명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7) ICT 적용: 삶의 모든 측면에 혜택

48. ICT는 정부운영, 보건의료, 교육훈련, 고용, 자연자원의 관리, 재해예방, 사업, 문화, 농업, 빈곤완화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응용되어야 한다.

#### 8)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지역 콘텐츠

49-51. 정보사회는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고무시키고 문명간의 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 9) 미디어

52. 세계인권선언(특히 19조와 29조)<sup>27)</sup>에 근거하여, 미디어의 존재는 모든 정보사회의 어떠한 개념에도 중요하다. 모든 형태의 전통적 미디어는 정보사회에서 중요성이 존속되며 ICT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27)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적 복지를 위해 법이 규정하는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12.10일 유엔 총회에서 선포함).

### 10) 정보사회의 윤리적 측면

53-56. ① 정보사회는 평화, 자유, 평등, 결속, 관용, 자연존중, 책임공유, 정의와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양심과 종교의 자유, 타인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② 인종주의, 종교비방,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에 ICT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11) 국제 및 지역간 협력

57-61.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CT가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며, 정보사회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행동계획의 이행을 약속한다.

#### (2) 행동계획

정보사회에 대한 원칙선언을 바탕으로 마련된 행동계획 초안(Draft Plan of Action: Document WSIS/PC-3/DT/5(Rev.1)-E, 2003년 11월 14일자)은 각 이해 주체들의 역할과 정보사회가 목표하는 바를 기술하고, 원칙선언에서 명시된 11개 영역에 대한 행동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A. 서문

정보사회를 “상이한 발전단계가 반영되어 전 세계에 걸쳐 상이한 수준으로 도달한 발전적 개념(evolutionary concept)”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따라서 행동계획은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정보사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적 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미디어, 다자기구 등 각 이해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B. 목적·목표·대상

행동계획의 목적은 밀레니엄선언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성취하고 정보사회의 새로운 도전을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국가적 여건과 e-전략을 고려하여 국가적 목표가 수립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까지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학교, 연구기관, 공공 도서관, 병원, 정부 부처 등의 ICT 연결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C. 행동 지침

원칙선언에서 제시된 11개 부문에서의 행동강령을 내용으로 한다. 여성이 특별히 명시된 항목은,

#### ■ C4. 능력배양 12. g)

ICT 교육상의 젠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녀에게 동등한 훈련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CT 직업 분야의 여성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초기 과학기술 개입 정책을 실시한다. ICT 교육에 있어 성 관점 통합에 관한 모범사례를 장려, 교류한다.

#### ■ C6. 가능한 환경 14. q)

정부는 이해주체들과 협력하여 사업성과 혁신성, 투자도가 높으며, 특히 여성의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ICT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 C7. ICT 응용 19. E-보건 b)

세계의 의료지식과 지역관련 콘텐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 출산보건, 성접촉 감염에 의한 질환 등에 관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질병에 관한 보건연구와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 20. E-고용

a):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노동협약에 부합되도록 공평성과 남녀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e-근로자와 e-고용주를 위한 모범사례의 개발을 촉진한다.

d): 여성의 ICT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조기 과학기술  
개입프로그램을 독려한다.

■ C8.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지역 콘텐츠 24. h)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규·비정규 교육에 성인지적 과정을 강화하며 여  
성의 통신과 미디어 지식을 증진시켜 ICT 콘텐츠를 이해, 개발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 C9. 미디어 25. e)

대중매체에서 균형있는 다양한 여성상 묘사를 증진시킨다.

**D. 디지털 연대를 위한 의제 28항**

‘디지털 연대 의제’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정보사회 참여를 위한 인적, 재정  
적, 기술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음을 밝히고  
모든 이해 주체들의 협력 하에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  
할 것<sup>28)</sup>과 국가발전계획에 국가 e-전략의 통합, 개발원조(ODA)에 ICT 부문을  
충분히 반영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

**E. 후속조치와 평가**

통계지표 개발과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국제적 수행평가와 벤치마킹 등 후  
속조치를 개발할 것을 명시하였다. 여성이 특별히 언급된 항목,

■ 29. d)

ICT의 활용과 요구에 관한 성 특화된 지표와 측정가능한 수행지표가 개발  
되어 여성 관련 ICT 사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28) 기존의 ODA 예산에서 ICT 부문에의 재원 배정과 함께 ‘디지털 연대기금’ 설립의 필요  
성에 합의하였다. 기금은 민간, 시민사회, 정부 등 3자 부문에서 운영되는 안이 제시되  
었으며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2004년 말 완료될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2004년 튀니지 정  
상회의 준비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 F. WSIS 2단계 - 튀니지를 향해

행동계획은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인 WSIS 제 2단계에서는 ‘디지털 연대를 위한 헌장’ 마련, ‘정보사회 측정 및 분석을 위한 보고서’ 개발, 1 단계 기간 중의 행동계획 이행 측정, 지역행동 계획 수립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 라. 성과와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각계 여성들의 연대활동의 결과, 성관점이 상당부분 WSIS 의제에 포함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요구 수준에 비해 그 반영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젠더 코커스와 GSWG를 위시한 젠더 옹호론자들은 원칙선언에 “ICT의 젠더 측면에 대한 강조는 디지털 혁명이 성 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나 현존하는 불평등과 차별의 영속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ICT의 혜택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증진시키고, ICT가 여성의 권한과 성 평등 증진의 중심적 도구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문구를 삽입시키기 위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준비회의 때마다 어구가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원칙선언 A.10 항에 현재의 문구가 삽입되었으며 여성들이 중시한 개념인 ‘ICT의 젠더 측면’과 ‘도구로서의 활용’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행동계획 초안에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은 교육, 보건, 고용, 문화적 다양성과 콘텐츠 개발, 미디어, 성 특화된 지표개발에 한정되어 있으며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우선주제 분야 중 빈곤, 여성폭력, 무력분쟁, 환경,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증대 등 여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WSIS 의제는 2002년 9월 기본적인 틀이 작성된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따라서 젠더와 관련한 문구 역시 수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으며 12월 정상회의가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수정의 여지가 남아있다.

WSIS의 원칙선언과 행동계획에 제시된 기본적 이념과 전략이 남녀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여성에 대해 특별한 언급과 고려를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생산·정책 결정과정 참여 등 모든 부문에서 양적, 질적 차원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근본적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이 성에 근거한 구조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남녀의 격차를 유발하는 ICT의 젠더 측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다면 성에 의한 양적, 질적 측면의 디지털 격차의 극복은 불가능한 일이며 정보사회 역시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 1단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상된 ICT와 여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여성들의 요구를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4.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 가. 주제채택 배경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1/4에 따라 2003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미디어와 ICT에의 여성참여와 여성의 권한증진을 위한 도구로서의 활용과 영향력’을 주제로 다루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개발도구로서 ICT의 역할에 대해 유엔의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미디어 분야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던 ICT 분야를 별도로 독립시켜 ICT와 성 평등 및 여성의 권한증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첫 번째 유엔 회의라는 점에서 제47차 위원회의 의미가 크다.

또한 글로벌 정보사회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 SIS)를 2003년 12월과 200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젠더와 ICT와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W SIS 회의 과정 및 결과에 성 관점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정보사회에 관한 공동의 비전과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에 여성이 필히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인 디지털 격

차와 정보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ICT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에의 효과적 통합,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핵심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ICT와 성 평등 간의 관계, 접근과 활용에 있어 젠더 측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가 부족하였음을 인식하고 ICT 분야에 성관점 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 나. 전문가 그룹회의

### (1) 개요

여성지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지위향상국은 국제전기통신연맹(ITU)과 유엔 ICT 태스크포스 사무국과 함께 'ICT에의 여성참여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활용과 영향력'을 주제로 전문가그룹회의를 조직하였다. 회의는 2002년 11월 11-14일 간 한국정부의 주최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되었으며 ICT와 관련한 각 영역의 전문가, 유엔기구 및 시민사회 옵저버, 자문가 등이 참가하였다. 특히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ICT의 젠더 측면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회의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는 장이 되었다.

회의에서는 ①ICT에 관한 국가 정책과 성 평등, ② 참여의 도구로서 ICT의 활용, ③ 여성의 능력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ICT의 활용, ④여성의 경제력 증진 도구로서 ICT 활용 등 네 가지 의제를 다루었으며, 회의 결과로서 최종보고서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였다(EGM/ICT/2002/Report; 7).

### (2) 토론요지

첫 번째 주제인 'ICT에 관한 국가정책과 성 평등'에서 참가자들은 정보통신기술부문이 일반적으로 성 중립적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ICT 정책과 사업

에 성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보편적인 접근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 평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공약이 ICT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영역에의 성 주류화라는 전환적 전략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ICT 부문의 성분석시 당면하는 문제점은 성별분리 통계의 부족과 성 분석에 대한 대다수 정책입안자들의 이해 부족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모든 분야의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정확한 통계와 자료가 없는 정책의 우선순위로서 젠더 이슈를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회의에서 제시된 모범 정책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기니의 'ICT 인프라 개발 계획': 기니는 젠더 이슈를 국가의 ICT 정책에 종합적으로 포함시킨 유일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로서 국가여성기구와 기니 시민사회가 계획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도록 위임되었다.
- 한국 정부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 관한 법률: 2001년 한국 정보통신부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채택된 동 법률은 가정주부 등을 포함해서 ICT 분야의 성 평등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 정부의 여성정보화 계획: 한국의 여성부는 여성의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2002-2006)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위민넷과 자원활동 네트워크, IT 직업분야 여성 훈련, 여성단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관 부처 들이 여성의 IT 교육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참여의 도구로서 ICT의 활용'에 관해서는 현재의 인프라 설치현황과 접근비용으로 인해 여성들이 활용상의 장애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과 시민사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접근도와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여성의 능력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ICT의 활용'에 관해서는 교육도구로서의 활용과 ICT 관련분야 교육을 통한 직업기회의 창출 등 두 가지 측면에

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정책으로 가정주부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두 가지 측면의 교육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과 창업기회를 확대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논의와 관련한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스쿨넷([www.schoolnet africa.net](http://www.schoolnet africa.net)):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메일 협력 프로젝트로서 여학생들이 참여하여 여성들의 실태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 성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여성 웹사이트: 2001년 아프가니스탄 분쟁 시 회교 법률치하의 여성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정보창구로 활용하였다.  
([www.wluml.org](http://www.wluml.org), [www.rawa.fancymarketing.net](http://www.rawa.fancymarketing.net)):
- EU 가입과 성평등·경제정의에 관한 웹사이트([www.newww.org.pl](http://www.newww.org.pl)): EU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중동 유럽국가 여성들이 UNIFEM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3개년 프로젝트로서 웹사이트 운영과 전자저널을 통해 EU 통합과정에서 여성의 권리와 성 평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 아태 여성정보네트워크(<http://www.women.or.kr>): 숙명여대에서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젝트로서 ICT에 관한 훈련, 출판, 지역간·국제간 네트워킹 등의 사업을 통해 여성의 ICT 활용능력 증진과 아태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 주제인 여성의 경제력 증진도구로서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ICT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를 부족한 인프라와 접근비용, 언어, 문해 수준,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거론되었다. 회의에서 제시된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우간다와 세네갈의 농촌여성 소득증대 사업: 농촌여성의 소기업 운영에 관한 CD-rom을 제작, 소기업운영에 관해 훈련을 시키고, 지역 텔레센터

를 통해 농산물 생산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 아프리카 여성 인터넷 네트워킹 기술 훈련: 시스코 시스템과 유엔 아프리카경제사회이사회의 협력사업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에게 장학금으로 아디스아바바에서 인터넷 네트워킹 기술을 훈련하고 자격증을 부여, 여성의 정보통신분야 진출에 기여하였다.
- 캐나다: 대학의 후원으로 중소기업 여성경영자에 대한 정보기술 훈련 제공.
- 미국: 뉴욕 주에서 여성들에게 직업기회를 주기 위한 맞춤 컴퓨터 훈련 실시
- 말레이시아의 여성 ICT 분야 기업가에 대한 투자: 정부부처에서 정보기술분야 여성기업가에게 대출 및 보조금 지급
- 인도의 여성 소 기업가를 위한 도시 간 판매 네트워크: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100개 마을의 지역공동체가 이동전화로 연결되어 있어 농산물의 공급과 가격 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소득을 증대함.
- 라틴 아메리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 시민의식, 리더십 훈련을 실시, 600여명의 청소년이 기술, 성인지, 시민 참여, 작업, 사회적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받았음.
- APEC의 IT를 활용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계획: APEC의 제 2차 여성 장관 회의(2002년 멕시코에서 개최됨)에서 여성의 IT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고려함.
- 한국: 정보통신부는 2000-2001년간 가정주부 백만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노동부는 실직여성에 대한 컴퓨터 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에 대한 IT 기술 교육 사업을 실시함. 여성부는 12개 대학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나 소호 사업 교육을 실시함. 농림부는 농촌여성의 IT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의 시장가격 정보를 웹에 게시함.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는 실직여성, 여성가구주,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10-12개월 과정의 취업 및 창업 훈련을 600여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 2/3 가량이 창업함.

### (3) 행동건의문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ICT활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 단체, 국제기구, 각 개인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건의하였다.

#### <국가 ICT 정책 및 전략의 개발 및 이행과정에 성 관점의 통합>

- 국가 정부 및 ICT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역할:
  - ICT 분야에서 성 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마련, 이행능력 강화 및 발전 사항 모니터를 위한 기제 마련
  - 성인지적인 기술 및 규제도구 개발
  - ITU가 마련한 “정책입안 및 규제 기구를 위한 성인지적 가이드라인”<sup>29)</sup>의 이행
- 여성담당국가기구의 역할:
  - 성 평등과 ICT를 선도하기 위해 예산과 전문지식 등 능력의 강화
  - ICT 유관 타 정부부처와의 협력활동 강화
  -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ICT 활용 증진
  - WSIS에서 다룰 모든 영역에 성 관점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WSIS 및 준비회의에 국가 대표단의 일환으로 참가하기 위한 사전활동 및 국가적 차원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활동에 협력

#### <우호적 환경마련>

- 국가 정부 및 ICT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역할:
  - ICT 관련 모든 차원의 정책 과정에 모든 이해 주체 및 남성과 여성의 대표성 보장
  - ICT 정책이슈에 관한 성 전문가 교육 및 정책과정의 참여
  -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에 자원제공을 통해 ICT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 확대

29) <http://www.itu.int/itudoc/gspromo/bdt/80186.pdf>.

- ICT 상의 프라이버시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 시 성매매등 여성의 특별한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 정부의 모든 공식 웹사이트에 여성과 젠더 이슈에 관한 콘텐츠 포함

■ 정부, 학계, 연구기관의 역할:

-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증진에 미치는 ICT의 영향에 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특히 지표 및 개념틀, 질적평가 방법론 등 개발
- 빈곤 여성, 특히 문맹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ICT 인프라 및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지원 및 강화
- 과학기술 및 ICT분야에의 여학생 수 증가를 위한 조치마련을 통해 여성 ICT 종사자 수 확대

<ICT의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 증진>

■ 민간부문의 역할:

- 사업지원계획 및 역할모델 개발, 네트워크 수립 지원 등 ICT 분야의 여성기업 증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여성기업인들이 급속한 기술변화를 따라가고 경제적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ICT 분야에 성 평등을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동원
-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교육, 보건기관의 ICT 관련 활동에 가격 특혜 제공

■ 정부의 역할:

- ICT 활용에 관한 성별 분리통계 개발 및 ICT 활용요구에 관한 성 특화된 지표 개발
- 여성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ICT 관련 분야의 정부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체제 개발 등

### <여성의 경제적 참여 증진>

- 정부 및 노동조합, 기업가 단체, ILO, UNCTAD 등 국제기구의 역할:
  - 여성들의 경제적 기회제공과 기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 여성의 경제적 문해 및 경제적 역량강화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ICT의 활용 방안 모색
  - ICT 분야에서 여성의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및 글로벌 ICT 산업에서 여성의 불리한 작업환경 개선
  - 농촌여성 등을 대상으로 ICT 기반 경제적 기회 개발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지원
  - 여성 중소기업가에게 전자상거래 기회제공을 위한 조치 마련

### <이해 주체간의 파트너십 증진>

- 모든 이해 주체들의 역할:
  -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세계 정보사회의 비전과 공동의 이해를 개발하고 여성의 인권과 통신의 권리 등이 포함된 합의원칙을 근거로 인간 개발에 기여
  - 글로벌 차원의 ICT 거버넌스에 성 관점 통합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여성의 ICT 접근·활용·참여를 위한 특화된 사업 수행, 여성을 위한 ICT 지원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 규명

### <ICT 분야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자원 동원>

- 모든 이해 주체들은 ICT가 여성의 권한증진과 성 평등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 현재의 기금 체제 내에서 ICT와 성 평등 부문의 예산 증액과 아울러 새로운 자금원 규명

- UNDP와 UNIFEM, EU 기금을 포함한 기부자들의 기여 확대
- ICT와 성 평등 부문에 국가 정부 예산의 증액 및 NGO 지원
-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 <정보사회에의 여성참여>

##### ■ 시민사회의 역할:

- 국가적·세계적 차원의 ICT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젠더 이슈 제기
- 정부와 시민 간의 중간역할을 담당
- 여성 관련 콘텐츠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개발 및 성 평등 증진 도구로서 ICT의 활용도에 대한 의식고양 및 지지 확보

##### ■ WSIS 계획에 참여하는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역할:

- 정상회의에서 다룰 정책, 행동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의 모든 과정에 성 관점 포함 및 여성참가 목표율 제시
- WSIS 준비과정 및 본회의에 성 평등 옹호론자의 참여 보장
- 준비과정의 정책결정자에 여성 포함
- 정부대표단과 시민사회 및 기업의 대표단에 젠더와 ICT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한 30%의 여성참여 할당
-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여성의 권한증진 도구로서 ICT의 활용에 관한 홍보 촉구
- 개념적 도구·성 평등과 ICT에 관한 분석·지표개발·사례연구 등 성 평등과 ICT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상회의에 제공
- UN ICT 태스크 포스는 WSIS 과정에서 젠더 관점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켜야 함.

#### 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유엔사무국은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에의 여성참여와 접근 및 여성지위향상과 권한 증진 도구로서 ICT의 영향과 활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 회의의 결과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미디어와 ICT의 발전이 여성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 유엔 체제의 노력 등에 관해 언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권한이 증진되도록 하기 위한 건의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한증진 수단으로서 ICT의 활용 영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는 여성생산자와 여성상인에게 지역 및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교육훈련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직업적 영역에서는 재택근무 등 고용의 유연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및 데이터 처리와 같은 새롭게 등장한 IT 분야 직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보건, 교육, 정치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권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넷째, 인터넷이 민주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차별철폐 및 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공공영역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여성이 생산한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젠더 측면에 대하여 ICT가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성 중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활용, 생산에 있어 남녀간의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여성이 사용자,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 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권한을 증진하고 성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CT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최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타 다른 개발 분야로부터의 경험과 교훈에 따라 성관점이 정책구상, 이행 및 후속조치 등 모든 단계에서 기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장벽은 여성들이 정보사회의 혜택을 향유하고 정보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ICT 관련 정책에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성 특화된 구조적 불평등 및 차별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이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ICT 정책에 양성평등을 기술한 몇 개 예외국의 사례로 한국을 제시하며 ICT 정책입안자와 여성정책 입안자 간의 시각차를 좁히는 일이 남은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에의 보편적 접근 정책, ICT 훈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분배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ICT와 미디어 분야 정책결정에의 여성의 낮은 참여율이 문제로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ICT 정책결정은 대개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 문제로 고려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에 ICT 개발에 있어 성 평등 지지자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 문맹률, 성별 역할 구분, 남성 위주의 정보제공 등이 여성들의 ICT 접근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ICT 활용기회와 여성의 권리, 성폭력 방지 등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CT 산업에서의 노동 분리현상, 전자정부의 성인지적 관점 결여 등에 관해 지적하고 정보사회의 혜택이 여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천방안은 ① 성인지적 환경조성과 국가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있어 성 관점의 통합, ②정보사회에서 여성의 참여 및 고용기회 증진, ③ ICT 분야에서 성 평등을 위한 자원동원 ④정보사회에서 성 평등 증진활동에의 참여 ⑤ 정보사회 정상회의 등 5개 부문에서 제시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전문가 그룹회의의 건의문과 거의 유사하다.

## 라. 지위위원회 회의 결과

### (1) 패널토의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간 중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패널 토의가 5명의 발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패널의 참가자들은 전문가 그룹회의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신정보통신기술의 등장이 여성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ICT를 도구로 삼아 여성의 지위향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기타 패널토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들은 인권적 접근법으로 정보사회를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 접근 권리에 기반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권의 행사 및 모든 개발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ICT 활용시 성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제 2차 WSIS 준비회의(2003년 2월 17-18일)에서 작성된 선언문 초안에 성 관점과 여성들의 요구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나 행동계획 초안에는 이의 실행을 위한 계획이 누락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아울러 WSIS를 비롯한 ICT관련 유엔 활동에서 국가간·국가 내, 도시와 농촌,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의 정보격차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나 성에 근거한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여성담당기구는 자국의 정상회의 대표단과 협력하여 회의 준비과정과 결과문서에 성 관점을 강조하고 정상회의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여성과 젠더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위원회의 합의 결론과 관련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포르노그래피 등 여성의 왜곡된 성적 이미지가 뉴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인터넷이 여성매매에 활용됨에 따라 북경행동강령에 명시된 대로 미디어 상의 성차별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과 법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정보요구를 반영한 콘텐츠의 개발과 지역 언어로의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 ICT 분야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 정책, 규제에 틀 마련 시 성 관점을 통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 분리 통계 및 정성적 지표의 개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 예산의 중요성을 거론하였다.
- 모든 이해 주체들이 성 평등을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할 것과 이들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 (2) 합의결론

전문가 그룹회의 보고서, 사무총장 보고서, 패널 등 일련의 회의 준비과정 및 토론을 거쳐 위원회는 합의결론을 도출하였다. 합의결론은 ICT의 젠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를 여성의 권한 증진과 성 평등 향상의 도구로 활용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2003년과 2005년에 예정된 WSIS에 여성대표가 다수 참가하여 성 관점을 통합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합의결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이해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정책측면:
  - ICT 관련 국가 정책과 법률, 사업의 개발 및 이행 과정에 성 관점의 통합과 여성의 완전한 참여에 우선순위를 둔다.
  - 성인지적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 기제를 수립하고 여성 정보기술 전문가, 여성단체, 운동가 등과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 ICT 인프라:
  - ICT 관련 인프라에 의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여성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IC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구지원:
  - 미디어와 ICT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정보요구도 조사, 기존 정책의 점검 및 소외 계층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ICT의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한다.

- ICT 활용에 관한 성별, 연령별 분리 통계의 작성, 성 특화된 지표의 개발, 미디어 및 ICT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 및 교육 패턴에 관한 자료를 조사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 교육분야:

- 여성의 ICT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규, 비정규 교육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미디어 및 ICT 관련 전공 여학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여성 및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ICT 관련 기술 훈련, 직업 훈련, 능력함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교사 대상 ICT 훈련 및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성 관점을 통합시킨다.
- 여성들이 미디어와 ICT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및 리더쉽 훈련과 멘토 시스템 및 기타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 경제활동: ICT 기반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이해 주체간의 파트너십:

- 모든 이해 주체들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여성들이 정보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지:

- 포르노그래피 등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상품화, 성착취, 성매매 등에 ICT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 지역문화 존중:

- 지역 언어, 지식 체계, 지역에게 개발된 콘텐츠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러한 목적의 ICT기반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한다.

■ 자원의 할당:

- 여성의 정보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 분야의 자원할당에 우선순위를 둔다.

■ 국제협력:

- 남남간의 협력을 통해 저비용의 기술과 여성에게 적절한 ICT 콘텐츠를 교류한다.

-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여건을 창출하고 개발도상국에 ICT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우호적 조건으로 이전한다.
- 국가 여성담당기구의 역할 강화:
  - 적절한 자원할당과 전문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국가 여성담당기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 여성담당기구는 미디어와 ICT 분야의 성 평등 노력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ICT 이슈에 참여하며 ICT 관련 정부부처, 국가여성기구, 민간부문, NGO 여성단체 간의 조정권을 강화한다.

# IV



## 정책제언

---

1. 여성인권 보장 및 폭력 근절	149
2. 정보통신기술	158



## 1.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

그 동안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인권 보장과 폭력철폐를 위한 유엔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북경여성회의와 제23차 특별총회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유엔의 핵심의제로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성인권문제에 대한 각국의 시각은 경제적 차이나 전통적 관습, 기본적인 사회단위에 대한 정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였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지위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기존의 유엔 조치가 지니는 의미마저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여성인권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인신매매를 비롯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여성지위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회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기존 조치의 한계가 지적되고 새로운 양상을 띠어가는 인신매매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여성인권과 폭력에 대한 접근방향을 분명히 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중요한 성과로서 그 의미마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를 중심으로 각국에서는 자국의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기존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가. 기존의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왔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가운데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분야는 성매매문제로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1962년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대한 착취 금지협약 가입 등을 통해 정책적 조치의 물꼬를 텃으며 이후 지속적인 법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켜 왔다. 특히, 북경여성회의를 계기로 초기의 윤락 개념 대신 성매매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성매매를 윤락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사자 쌍방의 상호행위로 규정하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과 상담소, 직업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왔다.

성매매문제에 대한 정책이 일찍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데 비해, 그 외의 여성의 인권침해와 폭력문제는 1980년대까지도 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통합되지 못했다. 다만 NGO 차원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려는 활동을 전개했다. NGO의 노력이 계속되고 폭력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면서 드디어 1990년대 들어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1992년 당시 정무장관(제2)실과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해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의무는 강화되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도 개정되었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상담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도 착수했다.

&lt;표 16&gt;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을 위한 유엔과 국내 정책의 주요 성과

	유엔	국내정책
유엔설립~ 50년대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설치 -세계인권선언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대한 착취금지 협약	
60년대	-국제인권규약 -여성차별철폐선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에 대 한 착취금지 협약 비준
70년대	-유엔여성 10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 세계행동계획 -여성차별철폐협약	
80년대	-제2차 세계여성회의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행동계획 -제3차 세계여성회의 여성지위향상 을 위한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 략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90년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북경 행동강령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인권규약 비준, 아동권리규 약 비준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제하 일본국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2000년~	-제23차 특별총회 -초국가적 조직범죄 철폐 유엔협약 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금지,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안) -성매매방지법(국회 계류중) -성매매방지 대책기획단 구성

특히 무력분쟁 시에는 각종 폭력으로 인한 여성 인권유린이 빈번히 자행되고 피해 양상이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자행되기도 한다. 우리 역사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것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지 반세기 가량이 문제

는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공식화되지 못하다가, 1992년 실태조사를 계기로 비로소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일제하일본국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책이 마련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군위안부 증언 자료집을 발간하고 역사교과서에 관련부분을 보장하는 등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침해와 폭력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북경여성회의를 계기로 한층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의 폭도 현저히 확대되었다. 이전까지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던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규정되었고, 1996년에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은 계속 추진되어 2001년에는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안)이 마련되었다. 이외에 경찰청과 법무부에서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정무장관(제2)실 1990; 여성특별위원회 1994, 1998b; 여성부 2001).

이처럼 정부에서는 일련의 법 제정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있으며 여성인권 유린이 일상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1년 미 국무성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3등국으로 분류했으며, 국내 주요 여성단체에서도 2000년 9월 발생한 군산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감금, 채무 등에 의한 강제매춘, 인신매매 등의 여성인권 침상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가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전혀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2001년부터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면서 종래의 ‘윤락’ 내지 ‘매매춘’개념을 ‘성매매’개념으로 전환하고,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성을 사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내외적 차원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외에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법조항에 포함시키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할 것도 촉구하였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현재 성매매 방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연합에서는 2003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으며, 결과적으로 2003년 7월 정부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민간전문가가 참가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기획단이 구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나. 향후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발달시켜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폭력문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1) 여성인권침해에 관한 근본적 접근

그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도입,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기존 정책이 즉각적인 차원의 사후 조치에 초점을 둔 데 비해, 그 근본원인 차원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 준비과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와 함께 예방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유린과 폭력문제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성인지적 인권 관점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구조와 여성을 인권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습적 분위기 등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고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인 성 불평등과 빈곤의 여성화 등 여성을 인권유린 상황으로 내모는 배출요인(push factor)과 성 상품화를 비롯한 유인요인(pull factor)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재생산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광범위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문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 있어 기존 정책이 지니는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인 만큼, 폭력에 대한 대책이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전반과 연계성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각종 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인권 관점 강화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폭력은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흔히 주변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심지어 무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희생자인 여성 자신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들이 인권 유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보다는 개인의 행실을 문제삼아 피해자에게 오히려 원인을 돌리고 낙인찍는 경향까지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 일부의 시각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 여성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피해여성들이 범법자라는 점으로 문제의 본질이 오도되는 경향이 현저하다.

이러한 태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수반하는 인권유린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근본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종합적

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성매매 여성 개인의 범죄 차원에서 처리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준비과정과 회의진행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여성인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대한 장애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 문제의 원인 분석과 현황 파악, 피해여성의 인지와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성인지적 인권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도 인신매매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 문제, 피해 여성이 오히려 범법자로 취급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문제를 파악하여 여성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3)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성매매 이외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수립

이러한 점에서 우리정부의 여성인권 보장 정책 가운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최근의 접근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는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진전이 있는데 비해 성매매 이외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많은 인신매매 피해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만큼 성매매는 여성인신매매의 핵심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성매매와 여성인신매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성매매 유형을 띠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성매매 대책이 여성 인신매매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신매매와 성매매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현실적으로도 성매매 이외에 다른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가 존재한다. 최근 들어 성행하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신부 매매( bride trade)라는 여성 인신매매의 성격을

떠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역시 인신매매되어 감금과 폭력, 임금체불 등의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sup>30)</sup>.

성매매 문제와 비교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구체적인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채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여성단체와 정부에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활동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는 인신매매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4) 국제 인신매매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인신매매는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특히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기존의 인권침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여성의 인권침해와 폭력 문제 가운데 인신매매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면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형법상 인신매매를 개인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관련 법조항이 여러 관련법에 산재해 있고 종합적인 방지대책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인신매매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송출국에서 경유국, 수입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만큼 국제 인신매매를 통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지역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1년 미 국무성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3등급 국가로 분류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국제인신매매 현황과 피해 실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0) 한국일보 (2003.9.3.) “월남 처녀와의 결혼, 장애인도 가능하다고?”(<http://www.women21.or.kr/news/W-GPDS/>); 저널 일다 (2003.12.1.)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편주문신부”; 이금연(2003),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 여성의 눈으로 39호: 18-21.

이와 함께 인신매매는 국경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본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를 단위로 한 기존의 대부분의 정책과 달리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은 국제적, 전 지구적 차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003년 9월 여성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공공의식 캠페인 증진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도 국제적 차원의 반-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의 정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인신매매의 원인을 해결하고 또 피해자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먼저 주요 관련국 정부 여성정책기구와 반-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형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피해자 집단 내지 잠재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신매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며, 해외개발사업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문제와 그 근본원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 인신매매는 빈곤지역의 빈곤층 여성들이 보다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개도국 여성들의 경제적 빈곤과 환경 재앙, 폭력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관해 지역공동체 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tion: CBO)을 중심으로 풀뿌리 차원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국제 인신매매

문제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여성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정보통신기술

### 가. 정보통신 관련 정책에의 성 관점 통합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라는 국가 정보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들어 정보화 추진노력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2001년 OECD에 발표에 의하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로서 개발도상국 중 가장 성공적으로 정보사회로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 그 간의 주요 정보화 정책 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4 - 정보화 전담부서로서 정보통신부 발족  
19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공보처 등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및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 함.
- 1995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을 정비, 체계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를 통해 정보화 추진체계와 정보화 재원 조달을 위한 근거 마련.
- 1996 -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발족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사회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사업 등을 종합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로 발족 됨.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각 부처 장관 등 24명으로 구성됨.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실시.
- 1997 - 공공정보화 사업평가제도 도입
- 1999 -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수립

정보화 기반구축과 이를 이용한 행정 및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비즈니스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자거래 기본법 제정
- 2000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2001 -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 세부시행안 발표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와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 정보화가 급진전하면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교육과 보편적 활용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됨.
- 2002 - 제3차 정보화추진기본계획(e-Korea Vision 2006) 확정
  - 인터넷 이용률 90%이상, 1,400만 가구에 초고속망 보급 등 정보화 보편화·고도화, 글로벌 정보사회의 리더로서 역할 등이 목표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한국전산원 2002; 정보통신부 2002)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의 특징은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려는 목적 하에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전 전략은 그 전 시대의 국가주도적 산업화 전략과도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어 빠른 기간에 급속한 정보화를 이룩하는 업적을 이루어내었다. 2002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IT 산업의 비중도 1997년도 GDP의 8.6%에서 2001년도에는 12.9%로 크게 증가하였다 (정보통신부 2002: 25).

우리나라는 정보격차 완화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2001년 디지털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정보 소외 계층이 능력배양과 정보접근도 향상 측면에서 혜택을 받았으며, 주부를 포함한 여성 대상의 정보교육이 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지방 자치단체, 여성부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여성정보화 정책 마련 측면에서도 한국은 성공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의 인정

을 받고 있다.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 여성정보화촉진의 필요성이 명시되고 이를 근거로 여성부는 ‘여성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을 수립하여 위민넷과 자원활동 네트워크, IT 직업분야 여성훈련, 여성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아제까지의 정보화추진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위로부터 수립되어 적용되었으며, 정치·사회·문화 등 통합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위주의 정책이었다는데서 야기된다.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효율성 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에서 비롯되었으며 전자정부의 수립 역시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작용, 정부의 투명성, 신뢰성 등 굿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신속한 행정, 생산성 있는 행정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강내희: 33-36).

우리나라는 현재 WSIS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정보사회를 위한 비전으로 논의되고 있는 참여적·인간중심적 정보사회, 균형성과 포괄적인 정치·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개발지향적 정보사회의 수립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였으며, 특히 정책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ICT의 젠더 측면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족하다.

여성부에서 마련한 ‘여성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① 디지털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질 향상, ② 디지털 사회통합에 기여, ③ 21세기 여성발전을 하위목표로 하여 ‘디지털 평등사회 실현’에 비전을 두고 있으나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여성분야 정보화에 한정되어 있고 사업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인터넷 등 ICT의 활용도 측면에서 아직까지 남녀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ICT 분야는 남성이 주도하는 기술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분야와 정부의 정책결정직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참여에서 남녀간의 격차가 심각함을 감안할 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WID(Women in Development) 개발 전략이 당분간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ICT 관련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책전반에 성 관점을 통합

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보화 정책은 여성들의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여 질적 차원의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을 제언한다.

- ITU가 마련한 ‘성인지적 가이드라인’은 ICT 관련 정부 부처에 여성담당 부서(Gender Unit)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3년 5월 정부 중앙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 제도가 도입되고 정보통신 부도 기획관리실장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부처내 양성평등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서는 ITU가 권고한 바와 같이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정책입안시 성관점을 통합시키고, 정책과정의 일부로서 성분석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제시된 행동건의문과 합의 결론에 따라 ICT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ICT 관련 각종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차원의 정책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정책 수립시 여성의 특별한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 여성부는
  - 향후 여성정보화전략계획(ISP)시 GAD관점에 기반을 두고 ICT 관련 정책 전반에 성 관점의 통합을 위한 전략을 포함시켜야 하며,
  - 성 평등과 ICT를 선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적·제도적·규제적 측면 등 ICT 부문 정책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등 능력을 증진하고,
  - ICT 유관 타 정부부처와의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 또한 성인지적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제를 수립하

고 여성정보기술 전문가, 여성단체, 운동가 등과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 나. 여성의 정보화 통계 및 지표 생산

ICT 관련 정책에 성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정확한 통계와 자료 없이는 정책의 우선 순위에 여성을 놓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ICT 부문의 성별 분리통계는 컴퓨터 보유, 인터넷 가입, 이용률 등 정보격차의 측정 측면에서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주부의 경우 정보취약 집단으로 분리되어 정보화 인식·요구 등에 대한 질적 측면의 조사도 수행되었다.

여성부도 여성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여성정보화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을 통해 정책을 평가한다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각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여 여성정보화정책 수립에 반영하다”고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2001년부터 격년 간격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여성부에서 2001년도에 실시한 여성정보화실태 조사를 보면, 남녀간의 정보격차를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접근, 능력, 효과 측면에서 지표를 마련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정보에의 접근 및 단순 활용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의 지표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남녀를 포함 2600명에 불과해 다양한 유형의 여성의 정보화 격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한 정보격차 통계가 유용할 수 있으나 정보사회의 진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ICT가 정치·사회·경제·문화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영역에서 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ITU는 정보통신기술영역에서의 성인지 통계를 작성할 계획에 있으며 그 일

환으로 2003년에 개최된 WGGI 2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 ICT 분야 성인지 통계항목 예시: 접근도 및 활용도, 콘텐츠, 교육, 정보통신정책결정에의 대표성, ICT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 고용부문: ICT 관련 기업 종사자 수, 고용상 직위, 종사 분야에서의 남녀 분리 통계, 기술분야 연구소 등 민간영역의 여성종사자 수 및 직위 등에 관한 통계
- 교육부문: ICT 관련 정규 및 비정규 교육 분야의 여성교육생 수 및 변화 추이
- 정보통신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도: 정부정책결정기구, 국가 ICT 관련 위원회, 기술표준을 마련하는 기관, 민간기구 등에의 여성참여도
- ICT가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음. 이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Document WGGI-2/7-E, 2003).

이상의 논의와 제47차 여성지위위원회 등의 권고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 여성부는 여성정보화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사업의 목적으로서 “각 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기 위함” 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ITU에서 논의된 위의 사항을 참조하여 ICT 부문의 성인지 통계 작성으로 전략을 바꾸고 조사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한다.
- 정부는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증진에 미치는 ICT의 영향에 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특히 지표 및 개념 틀, 질적 평가방법론 등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다. 국제사회에의 참여 확대

북경 세계여성회의를 전후로 고조되기 시작한 ICT와 여성발전에 관한 주제는 WSIS를 계기로 유엔기구 및 지역적 차원, 정부, 민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여성과 ICT와 관련하여 강조하는 분야는 동등한 정보 접근권,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정의 참여 등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화를 빠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국가로서, 여성의 정보화 측면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립·실시한 모범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도 비교적 활발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여성부는 2002년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준비의 일환인 ICT 주제 관련 전문가그룹회의의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APEC의 2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IT 교육훈련사업을 실시, APEC 지역 여성의 경제적 권한 증진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IT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동 훈련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APWINC)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아태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사업과 지역여성 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모범사례로 제시되었다. ITU는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002년 ICT의 여성정책에 관한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은 동북아 지역 3개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성 평등 사업 (GEST)'을 UNDP와 협력으로 1999년부터 4년간 수행, 여성과학기술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간의 국제활동에 비해, 현재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WSIS 준비과정에 여성부를 비롯하여 여성문제 전문가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이 정보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2003.5.23-24)에서도 젠더 이슈는 인적개발, 정보접근 부문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지는데 그쳤다.

국제적 차원의 WSIS 준비과정에서 여성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하지만 캐나다 대표단의 경우 ICT의 젠더측면과 여성의 권한 증진도구로서 활용, 성 평등 등을 WSIS 준비회의에서 제안하여, 원칙선언(초안)에 삽입되도록 하였다. 또한 WSIS 젠더 코커스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WSIS에 젠더 이슈를 반영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여성정책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ICT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글로벌 정보사회의 비전은 기술적·물질적 차원의 정보통신 기반 확보와 인권적 차원에서 평등, 표현의 자유, 개발의 측면에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ICT의 활용 등에 이르기 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있어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각 국의 정보사회로의 진전 단계가 상이함에 따라 국가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며, 이에 따라 각 국의 관심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부터 자국의 경제적 우위 선점을 위한 제도와 규제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 우리나라 여성정보화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WSIS를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전략도 한국의 장점을 통한 세계 정보화에 기여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 두고 있다.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합의 결론은 국가적 차원의 WSIS 준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슈에 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공식대표단이 출발하기 전에 수립되고, 따라서 성관점을 포함시키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은 국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2003년과 2005년 2단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WSIS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 정부는 WSIS 국가대표단에 여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여성부는 WSIS를 준비하는 관련 부처의 활동에 참여와 협력을 통해 회의 준비과정과 결과문서에 성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관련 의제 개발 및 문서작성, 예산배정, 정부 책임자에게 성관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설명, 정부유관 부처와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국가적 차원의 워크숍 개최, 국가적 차원의 여성선언문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 여성부는 WSIS 본회의 외에도 젠더코커스, ITU WGGI 회의 등 여성 관련 활동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을 홍보하고 여성정책 의제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 여성부는 정상회의와 여성과의 관련성에 관해 웹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 홍보하고, WSIS 개최 후 결정사항에서 여성관련 부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을 주시하여 2005년 개최될 WSIS를 대비해야 한다.

## 참고문헌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근절 분야-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편역(1983), 『유엔과 인권』, 분도출판사.
- 김양희 외(2000), 『유엔여성특별총회 적극적 참여를 통한 여성지위 향상 방안』, 여성특별위원회·한국여성개발원.
- 김엘림·윤덕경·박현미(2000),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엘림(2000),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 한국인권재단 편(2000),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pp.641-673.
- 박홍규 편저(1991), 『UN』, 형성사.
- 반보벤, 테오돌 C.(1986), “인권의 분류기준“, 카렐바삭 편(박홍규 역), 『인권론』, 실천문학사.
- 변화순·김은경(1997), 『한국여성지위위원회 50년과 한국활동 10년』, 한국여성개발원.
- 신혜수(1999), “여성관련 국제인권협약과 여성운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pp.452-502.
- 여성부(2000),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아·태지역 세미나 참가보고서.
- \_\_\_\_\_(2001), 제5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1998-2001).
- \_\_\_\_\_(2003),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보고서.
- 여성특별위원회(199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3차이행보고서(1990-1993).
- \_\_\_\_\_(1998a), 제4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가보고서.
- \_\_\_\_\_(1998b),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이행보고서(1994-199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 이정혜(2002), 『대한민국내로의 국제인신매매에 관한 자료검토』, IOM 국제이주기구.
- 정무장관(제2)실(1990), UN여성차별철폐협약-우리나라 제1·2차 보고서-.
- 한국여성개발원(1986), 『유엔여성10년 관련자료집』.

\_\_\_\_\_ (1991), 『국제연합의 여성관련 사업』 .

\_\_\_\_\_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95 NGO 포럼』 .

\_\_\_\_\_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배경선언·행동강령』 .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2001. 10.23)'.  
한국여성NGO네트워크(2000), 'Beijing+5 UN특별총회 NGO 보고회'.

Chun, Chaesung(2003), "Human Security and Women's Insecurity: Debating Women's Security in East Asia" submit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Security in East Asia(UNESCO, 2003. 6. 16-17, Seoul)]

Chunakara, George M. (ed. 2000),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Hong Kong: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http://www.daga.org/press/ia/glob>).

D'Cunha, Jean(2002), "Trafficking in persons: a gender and rights perspective", Paper submitted to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Expert Group Meeting.

Giammarinaro, Maria G.(2002),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Paper submitted to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Expert Group Meeting.

Manohar, Sujata(2002),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Background Paper submitted to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Expert Group Meeting.

Matsui, Yayori(2000), "Globalization and Asian Women", in G. M. Chunakara(ed.),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Hong Kong: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Shahinian, Gulnara(2002),"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Paper submitted to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Expert Group Meeting.

Symonides, J. and V. Volodin(1999), *Human Rights of Women: A Collection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Normative Instruments*, UNESCO.

- Taylor, Ernest (2002).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Paper submitted to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Expert Group Meeting.
- Zapata, Tammy Q.(2002), "Journey to a "developed" country to be exploited", Paper submitted to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Expert Group Meeting.
- UN(1995), *Women: Looking Beyond 2000*.
- \_\_\_\_\_(1996), *The United N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6*.
- \_\_\_\_\_(2000),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
-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DAW)(2002), "The United Nations response to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Expert Group Meeting.
-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DAW) and UN Office on Drugs and Crime(ODC)(2002),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Glen Cove, New York, USA, 18-22 Nov. 2002.
- UNDP(1997), *Human Development Report*.
- \_\_\_\_\_(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1998),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Report on the Forty-Second Session(2-13 March 1998).
- \_\_\_\_\_(2003),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Report on the forty-seventh session(3-14 and 25 March 2003)
-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http://www.un.org/WCAR/e-kit/background1.htm>).

-정보통신분야-

강내희(2003), “정보화와 정보인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주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 발표문 (2003.5-24, 서울 교육문화회관).

강정인(1998),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여성특별위원회(2000), 『유엔여성특별총회 적극적 참여를 통한 여성지위향상 방안』 .

\_\_\_\_\_ (2000), 『유엔여성특별총회 결과문서』 .

여성부(2002), 여성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_\_\_\_\_ (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_\_\_\_\_ (2003),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보고서.

\_\_\_\_\_ (2003), 여성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U-WGGI 회의 참가보고서.

웹스터, 프랭크. 조동기 옮김(1998), 『정보사회이론』, 나남.

조정문(2001), “정보격차 현황 및 정책의 발전 방향,” 정보화정책 제 8권 제 2호: 74-90.

정무장관(제2)실(1995),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보고서.

정보통신부(2002), 2002 정보통신 백서.

\_\_\_\_\_ (2002),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3),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 대응방안 연구』 .

정순영·방혜영·김영혜(2000), 『2002 유엔여성발전 주제 및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86), 『유엔여성10년 관련자료집』 .

\_\_\_\_\_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배경선언 행동강령』 .

\_\_\_\_\_ (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보고서』 .

한국전산원(2002), 2002 국가정보화 백서.

Bell, Daniel(1976),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Harmondsworth: Peregrine Books.

Compaine, Benjamin M.(2001),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 a Myth?*, Mass: MIT Press Sourcebooks.
- Gantz, John(2002), "Information societies showing olympic stride, if mortal limits", *The WorldPaper* February 2002.
- GKP Workspace for ICT and Gender Conference(2003),
-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Secretariat (2002), *GKP Recommendations*.
- Hafkin, Nancy(2002), "Gender issues in ICT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an overview", paper submitted to the EGM. (EGM/ICT/2002/EP.1)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03),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Reinventing Telecoms*, Geneva: ITU.
- \_\_\_\_\_ (2003),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Geneva: ITU.(Document WSIS/PC-3/DT/6 Rev 1-E)
- \_\_\_\_\_ (2003), Draft Plan of Action, Geneva: ITU.(Document WSIS/ PC-3/DT/5 Rev. 1-E)
-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2003), *Women and WSIS*, NY: IWTC.
- Khan, Sarbuland(2003), "ICT as an instrument to leverag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ww.unicttaskforce.org](http://www.unicttaskforce.org).)
- Magpantay, Esperanza(2003), "Gender ICT Statistics", Paper submitted to [the Second Meeting of the WGGI], Geneva, 7-8 June 2003.
- Marcelle, Gillian(2002), "From Conceptual Ambiguity to Transformation Incorporat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the ICTs Arena", paper submitted to the EGM.(EGM/ICT/2002/BP.1)
- Martinez, Julia and Katherine Reilly(2002), "Empowering Women for Public Policy Advocacy: looking Behind the Internet to Enable Citizen Information Systems.", Background paper submitted for [the INSTRAW Virtual Seminar Series on Gender and ICTs].
- Mclaughlin, Janice et al. (1999), *Valuing Technology: Organisations, Culture and Chan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OECD(2002), *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 Paris: OECD Publications.

UN(2000), 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E/CN.6/2000/PC/2)

\_\_\_\_\_(2003), Report of the 47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E/2003/27).

\_\_\_\_\_(2003), Participation in and access of women to the media,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and use as an instrument for the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E/CN.6/2003/6)

\_\_\_\_\_(1996), Women,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Beijing Conference, New York : UNDAW.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2002),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and use as an instrument for the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Seoul, Republic of Korea, 11-14 November 2002, New York : UNDAW.(EGM/ICT/2002/ REPORT)

UNDP(1999),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Globalization with a Human Face*.

\_\_\_\_\_(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_\_\_\_\_(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UN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INSTRAW)(2003), "Overcoming the Gender Digital Divide: Understanding ICTs and their Potential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Synthesis Paper, Virtual Seminar Series on Gender and ICTs.

Vig, Norman (1988), "Technology, Philosophy, and the State," Kraft, Michael E. and Norman J. Vig, (eds.), *Technology and Politic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Webster, Frank (1995),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 World Bank(2002), "Gender and e-Government," Gender and the Digital Divide Seminar Series #19. (<http://www.worldbank.org/gender/digitaldivide>)
- WSIS Gender Caucus(2003),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Creating your own National Gender Programme - A Practical Guide.* (<http://www.genderwsis.org/sourcebook>)

부 록

유엔 인권관련 위원회

1)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위원회

- ▷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 ▷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 조약에 기초한 위원회

- ▷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 ▷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 ▷ 아동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HRC)
- ▷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 이외에 인권고등판무관실, 난민고등판무관실 등에서도 인권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2003 연구보고서 260-5

2003 유엔여성발전 주제 및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

2003년 12월 27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대)

---

ISBN 89-8491-069-4 93330

<정가 5,500원>